

# 신앙 고백서

컴벌랜드 장로교  
2010 년 8 월

# 신앙 고백서 와 조직

컴벌랜드 장로교회  
미국 내 컴벌랜드 장로교회

## 1984

1984년 6월  
총회 승인

2010 인쇄

저작권 1984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총회 서기

**2010 년판**  
**8 차 수정본**

**신앙 고백의 편집 판에는**  
**2010 년에 이루어진 신앙 고백과 조직에 대한**  
**모든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쇄: 미연방 공화국  
Cumberland Presbyterian Resource Center  
8207 Traditional Place  
Cordova, TN 38016  
1-901-276-4572(Ext 252)

## 신앙고백서의 서문 (1883 년)

컴벌랜드(Cumberland) 장로 교회는 1810 년 2 월 4 일 테네시 딕슨 카운티(Tennessee Dickson County)에서 설립되었다. 컴벌랜드 교회의 설립은 1800 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Great Revival)의 결과다. 컴벌랜드 교회의 설립자는 피니스 이윅(Finis Ewing), 사무엘 킹(Samuel King) 과 사무엘 맥아두(Samuel McAdow)이다. 이들은 장로교 목회자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서 가르치던 예정설과 정죄의 교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다. 컴벌랜드 교회의 설립 동기는 그 당시에 발간되었던 출판물과 그 후에 발간된 책자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독자들은 그 주제가 나와 있는 책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교회 설립 당시 세 명의 목회자로 구성된 컴벌랜드 노회는, 3 년 만에 3 개의 노회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이들 노회는 1813 년 10 월, 테네시 섬머 카운티(Summer County)에 위치한 비치(Beech) 교회에서 만나 대회(Synod)를 구성했다. 대회가 결성되고, 컴벌랜드 장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반대되는 부분을 담은 “짧은 성명서”를 출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원한 정죄는 없다.
2. 예수 그리스도는 몇 명의 소수가 아닌 전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
3. 유아기에 죽은 아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구원 받는다.
4.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을 운영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널리 구속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는 어떤 사람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회를 결성했던 모임에서 신앙 고백서(Confession of Faith)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또한 결성되었다. 다음 해인 A.D.1814 년에 위원회는 테네시 윌슨 카운티(Wilson County)에 위치한 서그 크릭(Sugg's Creek)교회에서 열린 대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수정 안은 만장일치로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되었다. 그 이후 총회가 구성되었다. 1829 년 켄터키 주 프린스톤(Kentucky, Princeton)에서 있었던 첫 번째 모임에서 치리회라는 새로운 사법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교회 구성 형태에 변화가 생겼다.

신앙고백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조상들은 그들 앞에 선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웨스터민스터(Wsterminster)신앙 고백서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예정설과 이를 통한 결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정죄, 제한된 속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영향에 관한 교리를 삭제한 것이었다. 담대하게 정의된 교리는 정리하여 수정본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사용된 단어, 문구, 문자 또는 단원을 단순히 정리하거나, 수정된 문자의 빈 곳을 채우거나 다른 선언문을 넣어서 책에 제시된 전체적인 신학 구조를 설득력 있고, 객관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하이퍼-칼빈주의(hyper-calvinism)의 모든 특징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를 알고 있기에, 초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백서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이퍼-칼빈주의에서 가장 불편한 특징을 모순없이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고백서를 만들었다고 확신했고, 진리를 탐구하는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교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컴벌랜드 장로교회에서 가르치고 믿고있는 신학 체계가 보다 분명하고, 논리정연한 교리서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때가 오지 않는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 때가 왔다. 교회 전반적으로 신앙고백서를 개정하고자 원했고, 1881년 텍사스주 오스틴 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개정안을 위한 보고서가 제시되었으며, 만장 일치로 채택되었다.

일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두 개의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첫 번째 위원회는 신앙 고백서와 조직(Government)을 개정하는 일을 맡았고, 두 번째 위원회는 첫 번째 위원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위원회는 테네시주 레바논(Lebanon)에 위치한 컴벌랜드 대학에서 모임을 가지고, 수정 작업기간내에 대학 내의 모든 편의 시설과 훌륭한 신학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많은 노력과 진지하고 기도와 관심 속에서 위원회는 임무를 완수 했으며,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우선 팜플릿 형태로 발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 수정안에 대한 비평을 접수한 후에, 위원회는 다시 만나 제기된 제안들을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심했다. 회의는 하나의 반대 의견이 없이 진행되었고, 1882년 알라바마주 헌츠빌시(Huntsville)에서 열린 총회에 그 결과물이 제출되었다. "전체 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에서 총회는 많은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책에 나오는 모든 항목에 대해 하나씩 투표했다.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장 전체의 내용을 또 다시 투표하는 방식으로, 신앙 고백서 전체의 모든 항목을 숙고했다. 이런 방법으로 신앙 고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살폈으며, 필요한 부분을 수정했다. 투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투표가 끝난 후에, 총회는 신앙 고백서를 노회에 보내 승인 여부를 확인했다. 1883년 테네시주 네슈빌시(Nashville)에서 열린, 다음 총회에서 노회가 보내온 보고서가 만장

일치로 채택되었다. 총회는 노회가 보낸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공식적으로 책 이름을 “신앙 고백서와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조직”이라는 공식 선언했다.

이 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일치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 전통이 아닌, 믿음과 행위의 전대적인 규칙인 성경에 의해 이 고백서를 시험해 보자.

---

1888년 알칸소주 벤틀빌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노회들에게 참고하지 않고, 이와 같은 서문을 추가하도록 결정했다.

## 1883년 고백서의 전문

1.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사람의 교리와 계명으로 부터 자유로우시며 구속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종교에 관한 사적 판단의 권리는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다. 어떤 종교단체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세상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원칙은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복되신 주님은, 보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복음 전파와 성례전을 집행할 뿐 아니라 훈계하도록 직분자를 임명하셨다. 이 직분자들과 그들이 일하는 교회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법을 준수하면서 이단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질서한 교회의 특권을 검토하고, 중지시킬 임무가 있다.
3. 개인의 의견을 사소한 결과로 치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모순적인 잘못은 없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 진리와 거룩함은 떼어질수 없는 결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나쁜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4. 선생으로 인정되는 모든 자들은 깊은 신앙이 필요하지만 한편 사람의 선한 인격과 신념에 관한 형식과 원칙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 그리스도인과 종교단체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임무가 있다.
5. 교회 지도자들의 성격, 자격과 권위와 이들의 임직식에 대한 적절한 방법도 성경에 적혀 있으며, 이 권한을 행사할 사람의 선출은 특정 기관에 속해 있어야 한다.

6. 그러나 수행된 모든 교회 권력은 목회적이고, 선언적인 목적이다. 즉 성경만이 믿음과 행위의 절대적이고, 오류없는 지침서이다. 모든 교회 또는 치리회가 부여받은 권한으로 양심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되며,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집중해야 한다. 신학적인 징계(규율)는 시민의 권위와 완전히 다르며 구별되어야 하며, 교회-치리회들은 어떤 민사 관할권도 없으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정치적 시민생활에 대한 어떤 사업권도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것에 국한된다. 교회-치리회들은 그리스도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규약에 틀을 잡고 실천에서 교리와 비도덕적인 잘못에 대해 증언하며, 교회 특권에서 불순종과 무질서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회-치리회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견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교회-치리회들은 교회의 질서와 정부에 반하는 범죄자들을 호출할 수 있다. 교회 또는 치리회들은 기관 내의 회원에게 증인이 되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증인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는 반항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의 성례와 친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7. 모든 그리스도 교회 또는 개교회들의 연합이나 연합회는 성찬식 자격 조건, 내부 조직의 전체 시스템 뿐만 아니라 목회자, 직분자, 회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조건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행하는 전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컴벌랜드 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앙 고백과 내부 조직 시스템으로 채택한다.

1. 신앙고백서 (Confession of Faith) 2. 교리문답서 (Catechism) 3. 헌법 (Constitution) 4. 징계 규칙 (Rules of Discipline) 5. 일반 규정 (General Regulations) 6. 예배 지침서 (Directory of Worship) 7. 회의 규칙 (Rules of Order)

---

## 1984 고백서의 서문

1977년 컴벌랜드 장로교회 147회 총회는 1883년 신앙고백서를 수정하기로 투표했다. 그 다음 해, 제 148회 총회는 수정안 작업을 위한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했다. 위원회는 이 작업에 관한 지침을 받았다. 신앙고백서 개정을 위한 위원회와 별도로, 총회는 위원회의 이 작업을 검토할 20명으로 구성된 검토자들을 임명하고, 제안된 개정 안이 각 교회에 제출되기 전에 필요한 제안을 하도록 했다.

신앙고백서가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제 2의 컴벌랜드 장로 교회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컴벌랜드 장로교회는 제 2의 컴벌랜드 장로 교회에게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제 104 회의 제 2 의 컴벌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위원회에 5 명의 사람과 검토자를 임명했다. 이때부터, 개정안 작업은 두 교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각 교단은 각각의 위원회에서 공동 회장을 임명했다.

제 149 회 컴벌랜드 장로교회 총회와 제 105 회 제 2 의 컴벌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는, 제안된 개정안이, 각 노회가 승인 또는 불승인 투표를 하기 전에, 각 교단의 총회에서 먼저 채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신앙고백서의 교리 부분을 공부하고 개정하는 일에 착수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보았던 세 가지 중요하고 객관적인 참고서는 다음과 같다. (1)성경 (2) 교단의 창시자들이 '하이퍼 칼빈주의'에서 떠날 때 만들었던 4 가지 요점이 담은 1810 년에 작성된 '간략한 성명문' (3) 신앙고백서의 조항. 1883 년 신앙 고백서의 조항들이 예외없이 개정안 설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총회가 아주 새로운 교리 작성을 명령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안 작업의 출발점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었다. 1883 년 고백서의 각 조항은 성경, 1883 년 교회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 1810 년 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의 교회 발전사, 특히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발전과 1883 년에 씌었던 언어와 현재 사용되는 언어를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1980 년 7 월 위원회는 신앙고백서의 최초 개정안을 만들어서, 비평과 제안점을 듣기 위해, 선정된 검토자들에게 보냈다. 그 후, 검토자의 의견이 최초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헌법과 징계 법칙에 대해서도 1980 년 12 월에 검토자들에게 보내졌다. 위원회는 1981 년 총회에 고백서, 헌법, 징계법칙을 총회로 보내 각 교회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성경공부그룹, 당회, 노회, 개인들이 참여하였다. 그 후, 위원회는 신앙고백서가 위원회 단독의 일이 아닌 전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전 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다. 위원회는 예배 지침서, 예배순서, 규칙 개정안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은 1982 년 총회에 상정되고, 고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전교회에 전달되었다.

1982 년 가을 위원회는 신앙고백서, 헌법, 징계 규칙을 완성했다. 1983 년초 위원회는 예배 지침서, 예배 순서 규칙을 완성하고, 1983 년 알라바마주 버밍햄 시에서 동시에 열린 두 개의 총회에 상정했다. 두 총회는 공동회의에서 만나서, 개정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개정안 제안서에 대해 발표를 경청했다. 그 후, 두 총회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개정안에 대해서 숙고했다. 컴벌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개정 서문, 소개, 헌법, 징계법칙, 예배지침서, 회의 규칙을 표결에 부쳐 112 찬성표, 9 반대표를 승인하여 비준을 받기 위해 각 노회로 보내졌다.



제 2 의 컴벌랜드 총회는 개정안의 서문, 소개, 헌법, 징계 규칙, 예배지침서, 예배 순서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비준을 받기 위해 각 노회로 보냈다.

1984 년 채터누가(Chattanooga) 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노회로부터 받은 의견이 검토되었고, 이 총회에서 개정 신앙고백서가 필요한 3/4 투표를 얻어서 공표했다. 제 2 의 컴벌랜드 교회 노회에서부터 받은 의견 또한 채타누가 총회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3/4 투표를 얻어서 공표했다.

각 총회는 공식적으로 개정안을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세컨드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신앙고백서로 공표하였다. 서문은 1984 년 신앙고백서 선정에 따라 공식서기가 갱신했다.

---

설명: 1992 년 제 2 의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이름이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로 바뀌었다. 바뀐 이름은 이후에 나오는 단원부터 반영된다.

## 차례

1883 년 신앙 고백서 서문 .....	iii
1883 년 신앙 고백에 대한 서론 .....	vi
1884 년도 신앙 고백서 서문 .....	viii
1884 년도 신앙고백서 서론 ION.....	xv

## 신앙고백

## 신앙고백

1.00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다 .....	1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	1
성경 The Holy Scriptures.....	1
하나님의 뜻 God's Will.....	2
창조 Creation .....	3
섭리하심 Providence.....	3
하나님의 율법 The Law of God .....	4
2.00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다 .....	4
인간의 자유 Human Freedom.....	4
자유 남용 The Abuse of Freedom .....	5
3.00 하나님은 이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5
하나님의 언약 God's Covenant .....	5
구세주 그리스도 Christ the Savior.....	6
4.00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	7
성령의 부르심과 일하심 The Call and Work of the Holy Spirit .....	7
회개와 고백 Repentance and Confession.....	7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	8
칭의 Justification.....	8
중생(거듭남)과 양자됨 Regeneration and Adoption.....	9
성화와 은혜 안에서 성장 Sanctification and Growth in Grace .....	10
신자의 보존 Preservation of Believers.....	10
그리스도인의 확신 Christian Assurance.....	11
5.00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 .....	11

교회 The Church.....	11
성도의 교제 Christian Communion .....	12
기독교인의 예배 Christian Worship.....	13
성례전 Sacraments.....	13
세례 Baptism.....	14
주님의 만찬 The Lord's Supper .....	14
선교 속에서의 교회 The Church in Mission.....	15
교회 조직 Church Government .....	15
교회 치리회 Church Judicatories.....	16
6.00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증인이 된다 .....	16
그리스도인의 자유 Christian Freedom.....	16
선행 Good Works.....	17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 .....	17
결혼과 가족 Marriage and the Family .....	18
주의 날 The Lord's Day.....	
맹세와 서약 Lawful Oaths and Vows.....	19
시민 정부 Civil Government.....	19
7.00 하나님은 모든 삶과 역사를 완성하신다 .....	20
죽음과 부활 Death and Resurrection .....	20
심판과 완성 Judgment and Consummation .....	21
헌법 전문 .....	22
헌법	
1.0 교회 The Church .....	24
2.00 개교회 Particular Church.....	24
개교회의 회원 Members of a Particular Church .....	24
개교회의 회원에 대한 치리권 Jurisdiction Over Members of a Particular Church....	25
개교회의 재직자들 Officers of a Particular Church.....	25
개교회의 조직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26
개교회의 정부 Government of a Particular Church.....	27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	28
장로 Elders.....	30
집사 Deacons.....	31
장로, 집사의 선거, 안수 및 취임 Election,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Elders and Deacons ..	31
3.00 교회의 법체제 .....	34
치리회 위원회와 위임회.....	35
조례 References.....	36
재산권 Of Property.....	36
4.0 당회 .....	36
5.0 노회 .....	38
6.0 목사, 강도사, 목회 후보자(전도사)에 대한 노회의 권한 The Authority of Presbytery Over Ministers, Licentiate, and Candidates.....	41
목회 후보자(전도사)의 등록 .....	41
강도사 .....	43
목회자의 안수 .....	45
안수의 인정 Recognition of Ordination.....	48
목회자에 대한 치리권 Jurisdiction over Ministers.....	49
7.00 목회자, 강도사, 목회 후보자(전도사)와 교회간의 관계 Relations Between Ministers, Licentiate, or Candidates and Churches.....	49
담임 목사 및 협동 목사, 부 목사의 취임 Installation of Pastors and Associate/Assistant Pastors.....	51
8.0 대회 Synod .....	52
9.0 총회 General Assembly.....	54
10.0 교회들간의 관계 Relations Between Churches.....	56
11.0 수정안 Amendments.....	58
교회 헌법 부록 APPENDICES TO THE CONSTITUTION.....	60

교인 이명 청원서 Letter of Dismission For Church Members.....	60
교인 전입 확인서 Certificate of Reception for Church Members .....	60
새교회 설립 청원서 Admission of New Churches.....	61
담임목사, 협동/부목사 청빙서 Selecting Pastors and Associate/Assistant Pastors.....	62
목사,강도사,전도사의 이명 청원서 Letter of Dismission for Ministers or Probationers.....	62
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전입 접수서 Certificate of Reception for Ministers or Probationers.....	63
치리에 관한 규칙 RULES OF DISCIPLINE	
1.0 치리의 목적 Purpose of Discipline .....	64
2.0 치리에 있어서의 권위 Authority in Discipline .....	64
3.00 회원의 징계.....	66
징계 청문회가 없는 경우 Cases Without Disciplinary Hearings.....	66
당회를 하기 전의 징계 청문회 Disciplinary Hearings Before Sessions.....	67
장로들과 집사를위한 구체적인 절차들 Specific Procedures for Elders and Deacons.....	72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 Discipline of Ministers.....	72
회원 징계에 관한 항소 Appeals Regarding the Discipline of Persons.....	78
4.00 치리회의 징계 Discipline of Judicatories.....	81
일반 검토와 통제 General Review and Control.....	
81 항소 Appeals.....	82
반대와 항의 Dissents and Protests.....	83
예배 지침서 DIRECTORY FOR WORSHIP	
서문 Preface .....	86

I.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예배.....	87
가. 공동 예배의 순서.....	87
나. 공동예배의 보통(일반) 행위.....	89
다. 공동예배의 기초 자료.....	90
라. 공동예배의 추천 순서.....	92 1.
성찬을 포함한 공동예배.....	
92 서문.....	92
예배 시작을 알리는 말.....	93
찬송가.....	93
경배의 기도.....	93
죄의 고백과 용서 선포, 확인의 말씀.....	93
찬양에 대한 답변.....	94
하나님의 말씀 듣기.....	94
신앙의 확신 또는 신경.....	94
회중의 기도들.....	95
헌금 또는 예물 봉헌.....	95
성찬 기념.....	95
후주곡.....	97
광 고.....	97
2. 성찬이 없는 공동예배의 순서.....	98
3. 성찬 없는 공동 예배의 두번째 예.....	98
4. 성찬식 없는 공동예배 세번째 예.....	99
E. 행사가 있을때 예배의 순서.....	99
순서 1.....	100
순서 2.....	100
순서 3.....	100
순서 4.....	100
F. 공동 예배의 리서십.....	101
일반 지침.....	101
상징과 제의.....	101
G. 성가대, 음악가와 공예배.....	102
H. 기독교 연례와 공동 예배.....	102
II. 성례전.....	103
A. 세례의 성례식과 공예배.....	103

B. 세례 축하.....	104
C. 성찬과 공동예배.....	106
성찬 예식.....	107
III. 종교의식과 특별 예배.....	108
A. 신앙의 공적 고백.....	108
회원의 전출 또는 신앙의 재확인.....	111
B. 그리스도인의 결혼.....	111
C. 기독교 장례.....	113
D. 개인 및 가정 예배.....	115
회의 순서	
1.0 의 장.....	116
2.0 부의장.....	117
3.0 서기.....	118
4.0 회계.....	119
5.0 치리회 모임의 개폐.....	119
6.0 정족수.....	120
7.0 프로그램 채택: 의사 일정.....	120
8.00 동의안.....	121
8.10 치리회 전에 있었던 동의안.....	121
8.20 동의 안의 고려.....	121
8.30 동의안 형태.....	121
주요 동의.....	121
보조 동의.....	121
특권 동의안.....	122
우발적인 동의 안들.....	123
치리회로 다시 의제를 가져오는 동의안들 ..	125
8.40 동의에 관한 기타 규칙들.....	126
9.00 수정 조항 (개정).....	126
형태를 위한 분류.....	126
대체에 의한 수정을 위해서.....	126
처음과 두 번째 수정항.....	127
부적절한 개정안들.....	127
10.00 발언권의 지정 및 논의.....	127
11.0 후보 추천과 선거.....	128

12.0 투표.....	128
13.00 이사, 위원회와 위임.....	129
14.0 회의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131



## 1984 년 고백서의 전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을 요약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이다. 또한 이 말씀은 컴벌랜드 장로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품고 있는 증거이며, 신앙고백과 설립 원칙의 목적을 잘 설명해준다.

신앙고백서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고, 확신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위해, 신앙고백서는 예부터 있었던 진리를 현대 언어로 바꿔 쓴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보편적 표현에서의 이전 교회들의 신앙고백서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들은 기독교 신앙, 성장, 실천을 위한 유일하게 권위있고 완전한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들은 세계적 교회의 맥락에서 만들어지므로 편파적, 종파적인 방법 또는 정신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신앙고백서는 목적과 그 정신에서 복음주의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 그 자체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최고의 예이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원칙은 성경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후에 나온 1883 년, 1884 년 신앙고백서에 많은 빛을 졌다. 우리는 이 고백서들을 존경하며, 그 내용에서 현재의 신앙 고백서의 글이 나왔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의 전체 윤곽은 성경에서부터 나왔고, 요한 3 장 16 절에 나온 성경의 윤곽을 참조했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전 인류가족에게 말씀하신다. (2) 전 인류가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3)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하기위해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신다. (4)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 (5)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교회를

만드셨다. (6)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살며 중인이 된다. (7)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역사를 완성하신다.

교회의 신앙고백과 생명과 하나님과 서로에게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의 증인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교회 신앙은 하나님 백성의 삶과, 선교, 조직, 예배, 교회 문제의 질서있는 행동을 지시하고 만든다. 이것을 믿고,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내부 조직 시스템으로 (1) 신앙고백서 (2) 헌법 (3)징계규칙 (4) 예배지침서 (5) 회의 규칙을 채택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고백서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 **1984 년 신앙 고백서의 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 **1.00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신다.**

-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뜻, 창조, 섭리, 하나님의 법

##### **2.00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다**

-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 남용

##### **3.00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해 하신다.**

- 하나님의 언약, 구세주 그리스도.

##### **4.00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 성령의 부르심과 역사하심, 회개와 고백, 구원하는 믿음, 칭의, 거듭남과 양자됨. 성화와 은혜 안에서 성장, 신자의 보존, 기독교 보증.

##### **5.00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교회를 만드신다.**

- 교회, 기독교 성찬식, 기독교 예배, 성례전, 세례, 성만찬, 선교 교회, 교회 정부, 교회 치리회.

##### **6.00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살며 증거한다.**

- 기독교인 자유, 선한 일,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결혼과 가족, 주님의 날,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 시민 정부

**7.00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역사를 완성하신다.**

- 죽음과 부활, 심판과 완성.

## 신앙고백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 1.00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 살아계신 하나님

**1.01** 우리는 오직 참 되시며 살아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며, 영원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권능이 있으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리이시다.<sup>1</sup>

**1.02**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과 자연과 역사의 사건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 말씀하신다.<sup>2</sup>

**1.03**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언약 관계로 초대 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이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초대에 신뢰와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을 기뻐한다.<sup>3</sup>

#### 성경

**1.04** 창조와 섭리, 심판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은 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공동체가 목격한 것이다.<sup>4</sup>

**1.05** 하나님은 성경을 쓰도록 언약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죄와 심판과 구원과 믿는 자의 성장에 대해 말씀하신다. 성경의 믿음과 훈련의 절대 규범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 절대 권위가 있는 지침서이다.<sup>5</sup>

**1.06** 성경 예서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의 탄생과 일생,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 되어야만 한다. 성경의 권위는 이 사건들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이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하고 있다.<sup>6</sup>

**1.07**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시대 배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하며, 수 백년 동안 이루어진 교회의 증언을 들으며,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깨달은 것을 나눠야 한다.<sup>7</sup>

## 구 약

창세기	열왕기상	전도서	오바댜
출애굽기	열왕기하	아가	요나
레위기	역대상	이사야	미가
민수기	역대하	예레미야	나훔
신명기	에스라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스겔	스바냐
사사기	에스더	다니엘	학개
룻기	욥기	호세아	스가랴
사무엘상	시편	요엘	말라기
사무엘하	잠언	아모스	

## 신 약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요한일서
누가복음	에베소서	디도서	요한이서
요한복음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한삼서
사도행전	골로새서	히브리서	유다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전서	

## 하나님의 뜻

**1.08**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선하시며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자연과 역사적 사건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다.<sup>8</sup>

**1.09**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예배와 사랑과 봉사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지만,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9</sup>

## 창조

**1.10**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낸다.<sup>10</sup>

**1.11**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서로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sup>11</sup>

**1.12**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연의 자원과 아름다움과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 속에서 주어지며, 이를 돌보고, 보존하며, 향유하며,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sup>12</sup>

## 섭리하심

**1.13**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민족과 나라와 모든 만물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심을 행사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성경에 드러나 있다.<sup>13</sup>

**1.14**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법과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자연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것들과 같이 일하실지 또는 그것들 위에 일하실지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셨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에 열려있다.<sup>14</sup>

**1.15**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sup>15</sup>

**1.16**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 진리를 발견한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르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불신자들을 인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는데 있다.<sup>16</sup>

**1.17**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온 세상을 품는 것이지만,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창조로 더욱 분명하다.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 받은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과 봉사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신다.<sup>17</sup>

**1.18**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깨닫고, 경험되어지도록 충분히 드러나지만, 그와 동시에 신적인 신비를 취하여, 경이로움과 찬양과 감사의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질병과 고통과 슬픔, 비극과 사회적인 격변이나 자연 재난을 당했을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18</sup>

## 하나님의 율법

**1.19**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관계를 다스리시기 위해 도덕법을 주셨다. 이 도덕법은 우주 만상을 구성하고,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공의의 원리이다.<sup>19</sup>

**1.20**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비록 도덕법은 성경에 계시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의의 기본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완전하게 기술해 내지는 못한다. 도덕법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구속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sup>20</sup>

**1.21** 도덕법은 복음 안에 성취된다. 따라서,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것이어야 한다.<sup>21</sup>

1.22 도덕법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서 영적, 지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완전함 또는 건강함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법의 취지는 모든 측면에서 삶의 온전함을 창조하는 인격의 힘이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사용되게 하려는데 있다.<sup>22</sup>

## 2.00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다.

### 인간의 자유

2.01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sup>23</sup>

2.02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 개인과 세상을 향한 선택과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sup>24</sup>

### 자유 의 남용

2.03 인간의 첫 조상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사람이 창조된 이유인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깨뜨렸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죄를 짓으려는 경향이 있다.<sup>25</sup>

2.04 아담과 이브가 그러했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으면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상태가 사람의 모든 사악한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었다.<sup>26</sup>

2.05 모든 인간은 고의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된다.<sup>27</sup>

2.06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단절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다.<sup>28</sup>

## 3.00 하나님은 이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 하나님의 언약

**3.0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해를 통해 죄로 인한 깨어짐과 단절된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인류가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신다.<sup>29</sup>

**3.02** 하나님의 역사는 죄 많은 사람들을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약 관계는 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30</sup>

**3.03**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관계이다. 이 언약은 성경에서 여러 형태와 징후로 나타나지만 항상 은혜의 한 형태로써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표현이다.<sup>31</sup>

**3.04**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은혜의 언약에 대한 본질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약속과 예언과 희생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다른 표적과 법률에 의해 은혜의 언약이 효력을 나타냈으며, 이런 언약의 다른 형태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구원되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끄시기에 충분했다.<sup>32</sup>

**3.05**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들과 함께 다른 형태의 예배 행위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은혜의 언약의 복음은 단순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며 충만하다. <sup>33</sup>

**3.06**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은혜의 언약 안에 언제나 속해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적절한 표식과 증표가 할례였지만, 그리스도의 오신 후로는 세례가 은혜의 언약에 대한 표식과 증표이다.<sup>34</sup>

## 구세주 그리스도

**3.07** 화해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도구로 오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sup>35</sup>

**3.08**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처럼 유혹은 받으셨지만, 결코 범되지 않으셨다.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셨지만,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기록하셨고 죄가 없으시고, 신성이 더럽히지 않으셨으며, 죄 많은 인간들과 하나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는 유일한 세상의 구세주로서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시다.<sup>36</sup>

**3.09**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죄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삼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께 오르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신다.<sup>37</sup>

**3.10**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따른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일치하는 방식들로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다.<sup>38</sup>

**3.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하게 하시는 역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과 유익함은 태초로부터 모든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로 확장된다.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는 성령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여러가지 도구들을 통해 전달된다.<sup>39</sup>

## 4.00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 성령의 부르심과 일하심

**4.01**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적으로 역사하셨고, 성령 안에서 같은 의도로 모든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sup>40</sup>

**4.02** 성령은 성경, 성례전, 언약 공동체의 공동 예배, 믿는 자들의 말과 행위에 대한 증거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들로 일하신다.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sup>41</sup>

**4.03** 성령의 부르심과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죄인의 모든 소망과 목적과 의도보다 선행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감화에서 떨어져서는 구원 받을 수는 없다.<sup>42</sup>

**4.04** 사람들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sup>43</sup>

#### 회개와 고백

**4.05** 회개는 자기의 죄를 버릴 것을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죄인들의 태도를 말한다.<sup>44</sup>

**4.06**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나 다른 인간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래도,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sup>45</sup>

**4.07** 관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그들의 형제 자매와 모든 피조물에게 범한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가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야 한다.<sup>46</sup>

**4.08**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포함한다.<sup>47</sup>

**4.09**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은 선한 일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과 화해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신다.<sup>48</sup>

**4.10**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드릴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sup>49</sup>

**4.11** 신앙 생활 중, 믿는 자들은 시험을 받거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장한 약속이다. 성경과 수 세기에 걸친 언약 공동체 사람들의 경험 모두가 이 약속에 대한 증거이다.<sup>50</sup>

#### 칭의

**4.12**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신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sup>51</sup>

**4.13**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비록 믿는 이들이 때때로 죄를 범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신한다. 믿는 자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sup>52</sup>

**4.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된다. 그들은 옛 자아와 새 자아, 선과 악,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삶과 죽음 사이의 내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sup>53</sup>

### **중생(거듭남)과 양자됨**

**4.15** 중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즉 거듭난 것이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sup>54</sup>

**4.16**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단절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sup>55</sup>

**4.17** 중생(거듭남)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시며,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 완성된다.<sup>56</sup>

**4.18** 믿는 자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돌릴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sup>57</sup>

**4.19** 갓난 아이 때 죽거나 그리스도에게 응답할 능력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 받는다.<sup>58</sup>

**4.20** 양자 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언약의 가족으로 포함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히 구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형제 및 자매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sup>59</sup>

### 성화와 은혜 안에서의 성장

**4.21** 성화란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구별짓는 것이다.<sup>60</sup>

**4.22** 믿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며, 언약 공동체 안에 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이 살면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다른 은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차적으로 닮아갈 수 있다.<sup>61</sup>

**4.23** 믿는 자들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지식과 힘이 여전히 불완전해서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는 자의 자유는 때때로 불신, 미움, 이기주의와 타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 더욱 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한다.<sup>62</sup>

### 신자의 보존

**4.24** 믿는 자들의 변화는 중생을 통하여 시작되며, 칭의로 완성된다. 믿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언약 관계는 유지되며, 믿는 자들을 영생에 보존해 주신다.<sup>63</sup>

**4.25** 신자의 보존은 은혜 언약의 본질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변호와 중재하심,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존과 사역에 의존한다.<sup>64</sup>

**4.26** 유혹과 은혜의 수단을 무시한 결과는 신자들이 죄에 빠지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화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나 쉼이 없을 것이다.<sup>65</sup>

### 그리스도인의 확신

**4.27**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sup>66</sup>

**4.28** 이 위로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자각과 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의 영광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다. 이런 확신은 믿는 자들의 완전한 상속에 대한 약속이다.<sup>67</sup>

**4.29** 이러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믿음과 동시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결코 저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배와 성례전과 사역, 간증 및 언약 공동체의 삶에 신실하게 참여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확신은 증가된다.<sup>68</sup>

## **5.00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

### **교회**

**5.01**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만민의 것인 사도적 교회이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sup>69</sup>

**5.02** 교회가 하나인 것은 교회의 머리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 아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언약식, 조직 또는 교리의 체계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과 성례식의 한 사역에서 분명해진다.<sup>70</sup>

**5.03**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 되어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증인의 사역 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은, 교인들 각자의 거룩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기초한 것이다.<sup>71</sup>

**5.04** 교회는 모든 만민의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만민을 위한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게 하시려는 전 인류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교회의 세계성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교회의 지상 명령으로 표현된다.<sup>72</sup>

**5.05**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복음 선포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발자국을 따르는 전달자에 의해 신실하게 선포된 사도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다.<sup>73</sup>

**5.06** 교회는 구원 받은 신자의 언약 공동체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 연령을 초월하여 하나님 은혜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과 복음에 반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sup>74</sup>

**5.07** 세상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식 언약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믿는 자의 자녀들이 포함되며, 자녀들은 교회와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아래 놓이게 된다.<sup>75</sup>

**5.08** 세상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지식과 힘이 불안정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구속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린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 예배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시며, 성령을 통해 교회 생활과 성장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sup>76</sup>

**5.09** 세상 속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례전을 주셨다.<sup>77</sup>

## 성도의 교제

**5.10**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모든 자들은 또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된다.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sup>78</sup>

**5.11** 믿는 자들의 교제는 같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특정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믿는 자들은 언약 공동체의 형태, 유사한 신념, 역사적 유산, 형태를 가진 다른 조직체의 구성원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sup>79</sup>

## 기독교인의 예배

**5.12** 기독교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지 전능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모든 믿는 자들의 응답이다.<sup>80</sup>

**5.13**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인격을 요구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인도와 구속의 확신을 주신다. 믿는 자들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사랑과 봉사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sup>81</sup>

**5.14** 기독교인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기념하며, 성경을 봉독하며,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로의 헌신과 헌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공통적 예배 요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가 의미가 있다고 발견한 다른 형태의 예배 모습을 검증하고 지속하게 한다.<sup>82</sup>

**5.15**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공동 또는 개인으로 할 수 있다. 공예배는 회중에서, 교회 내 소모임에서, 믿는 자들의 큰 집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이다. 개인 예배는 명상, 기도, 성경 공부 등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집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드리는 것이다.<sup>83</sup>

## 성례전

**5.16** 성례식은 하나님 은혜의 언약에 대한 증거와 증표이다. 할례와 유월절은 구약 시대의 성례식이고, 세례와 주의 만찬은 신약 시대의 성례식이다. 이들 성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뜻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sup>84</sup>

**5.17**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성찬과 세례의 성례식을 제정하셨다. 이런 의식은 교회 치리회의 권위 하에 정식으로 안수 받은 목사에게 위탁된 것으로, 교회 공동 예배의 일부로 교회에 의해 교회를 통해 시행된다.<sup>85</sup>

## 세례

**5.18** 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며, 믿음 공동체에서 일원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외적 표시이다. 이 성례식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모양과 질서가 생기며, 섬김을 위해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것이다.<sup>86</sup>

**5.19** 세례식은 부모나 보호자 중에서 한 명 또는 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대한 확인이 있고,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유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에 확신은 있지만 세례식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sup>87</sup>

**5.20** 물은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요소다.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sup>88</sup>

**5.21** 사역자가 사람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성례 의식은 성령의 세례를 적절하게 상징한다. 그러나 세례 의식의 정당성은 그 의식의 방법에 있지 않다.<sup>89</sup>

**5.22** 모든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갈망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그들의 특권이며 의무이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떠나서는 유효하지도 않다.<sup>90</sup>

## 주의 만찬

**5.23**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가 배신 당하시던 날 밤에 이루어졌다. 주의 만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드러내고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성 만찬은 부활하신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재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려온 예식이다.<sup>91</sup>

**5.24** 주의 만찬식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예수님의 몸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다. 이 성례식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 자체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성례식이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경배, 겸손,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없이 빵과 잔을 받아서는 안된다.<sup>92</sup>

**5.25** 성찬식은 영적인 양식과 성장을 위한 수단이며, 그리스도께 감사로 드리는 순종의 행위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회의 사역과 섬김에 대한 헌신이다.<sup>93</sup>

**5.26**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고,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되며, 독려된다.<sup>94</sup>

**5.27** 각 교회의 회중은 정기적으로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기념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인은 자주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sup>95</sup>

### 선교 속에서의 교회

**5.28** 교회는 예배와 말씀 연구와 선포, 성례식의 기념에 의해 양육되고 유지되며,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96</sup>

**5.29** 교회 생활에서 성장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시키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sup>97</sup>

**5.30** 사도적 사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언약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야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다.<sup>98</sup>

**5.31** 언약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한 역사를 증거할 책임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증언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권한이 아니다.<sup>99</sup>

### 교회의 정치

**5.32** 교회의 머리되시고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공동체의 삶과 선교를 결정하는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교회의 정치를 위탁하셨다.<sup>100</sup>

**5.33** 이러한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교인을 점검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며,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교회법과 복음을 위법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책임이 있다.<sup>101</sup>

## 교회의 치리회

**5.34**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컴벌랜드 장로 교회는 특정 대표 기관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런 교회의 각 기관들은 입법, 사법, 집행의 특정 분야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모든 기관들은 기독교인들의 사명과 각 기관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일해야만 한다.<sup>102</sup>

**5.35** 각 대표의 기관들은 교회 헌법에 따라 믿음의 문제, 실천, 정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예배와 증언의 형태를 제안하며, 징계를 내리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들에게 제시된 항소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sup>103</sup>

## 6.00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증인이 된다.

### 그리스도인의 자유

**6.0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의 세력의 굴레, 압박, 수치와 죄로 인한 죄책감과 형벌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자유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해 주는 것이다.<sup>104</sup>

**6.0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신앙과 예배 문제에 있어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계명으로부터 믿는자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지도하고 징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sup>105</sup>

**6.0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삼아 죄를 범한다면, 신자는 그리스도인 자유의 목적과 본질을 어기는 것이다. 신자는 악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 자유로운 것이다.<sup>106</sup>

**6.04**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삼아 공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의와 법적인 권위의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은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sup>107</sup>

**6.05** 기독교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칠 의무가 있으며, 그 충성을 어떤 정부와 나라에도 양보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형태의 불의에도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항거해야 한다.<sup>108</sup>

## 선행

**6.06**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는다.<sup>109</sup>

**6.07** 선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많은 약점과 불완전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자비롭게 받으신다.<sup>110</sup>

**6.08**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은 아니다.<sup>111</sup>

**6.09**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자비와 섬김의 행위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 안에 기독교 가치와 원리를 반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선택을 포함한다.<sup>112</sup>

**6.10** 기독교인의 청지기 직분은 모든 피조물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봉사에 사용됨을 인정하는데 있다. 이것은 천연 자원의 보존과 책임감있는 사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술과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선물은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113

**6.11**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의 동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동반한다.<sup>114</sup>

**6.12.**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는데, 각 개인에게 주신 선물들은 그것에 해당되는 책임이 또한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선물을 서로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sup>115</sup>

**6.13**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겨주신 것을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헌신의 행위이며, 은혜의 수단이다.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드리는 일은 모든 신자의 특권이다. 성경에서 드림의 지침이 되는 십일조는 신앙의 체험이며 풍요로운 보상을

주는 실천이다.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뿐 아니라 나눔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sup>116</sup>

**6.14**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의 책임이 있다.<sup>117</sup>

### 결혼과 가족

**6.15**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사랑, 동지애, 부양, 보호, 훈계, 격려와 다른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기초 집단으로 가족을 창조하셨다. 결혼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정상적인 관계이다.<sup>118</sup>

**6.16** 교회는 환경으로 인해 또는 자원해서 독신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식하고 목회한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의 가족 생활 안에서 각 개인과 집단을 포용하고자 노력한다.<sup>119</sup>

**6.17** 결혼은 당사자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사회의 상호 이익을 위한 남녀 간의 관계이다. 결혼은 적절한 시민법을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 아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은 가장 잘 알려진 사랑과 신뢰의 인간 관계이다.<sup>120</sup>

**6.18** 하나님 아래 언약 관계로서의 결혼은 평생 지켜야 할 서약이며, 따라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것이다.<sup>121</sup>

**6.19**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남자와 여자의 언약 관계이므로 한 명 이상의 살아 있는 상대자를 취하는 일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sup>122</sup>

**6.20**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결혼 관계를 위협할 때, 언약 공동체는 그 결혼의 신성함을 지속시키고 각 배우자의 관계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게 되면, 언약 공동체는 아이들을 포함한 이혼 피해자들을 목양하고,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이혼자들을 상담할 책임이 있다.<sup>123</sup>

**6.21**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에서 결혼과 부모로서의 책임과 가정 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sup>124</sup>

**6.22** 교회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 경제적 곤란, 자연 재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죽음을 포함한 모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사역해야 할 책임이 있다.<sup>125</sup>

## 주일

**6.23**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역사하심에 대한 특별한 성찰을 위해 칠일 중 하루를 주셨다. 세상의 시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주일의 일곱번째 날은, 안식일로 알려져 있는 주일이다. 그리스도 부활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의 첫번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sup>126</sup>

**6.24** 주일에 적합한 활동으로는 예배와 성경 공부, 선행과 거듭나게 하는 다른 활동이 있다. 주님의 날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들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한다.<sup>127</sup>

## 법적인 맹세와 서약

**6.25**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선한 약속에만 맹세하고 서약해야 한다.<sup>128</sup>

**6.26** 서약은 맹세와 비슷하지만, 서약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해서 신실함으로 수행되고 성실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것만 서약해야 합니다.<sup>129</sup>

## 시민정부

**6.27** 시민 정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정의와 질서의 원칙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창조의 복지를 충실히 지킴으로,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놓여있고,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써 기능한다.<sup>130</sup>

**6.28** 투표권 행사와 같은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 정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의무이다. 정의, 평화 및 공공 복지를 위한 임무의 목적을 위해 자격이 되는 공공 직책을 맡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sup>131</sup>

**6.29** 시민정부와 그 관료들은 믿음과 신앙 생활에 관한 문제나 업무에 대한 교회의 행정을 통제하거나 관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 정부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어떤 간섭 없이 종교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sup>132</sup>

**6.30**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 행위 안에서 사람에게 의도하신 기본적인 존엄함을 거부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인 억압 상태의 모든 환경 조건들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33</sup>

**6.31** 언약 공동체는 가난한 자, 억압 당한 자, 병든 자, 소망 없는 자들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확신한다. 공동 생활과 성도 각 개인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인 인간들을 하찮게 다루는 사회 또는 법의 구성원과 폭력의 희생자를 옹호한다. 이러한 옹호는 여하의 불법과 불의에 항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위를 지지하는 일을 포함한다.<sup>134</sup>

**6.32** 하나님은 교회에 화해의 메세지와 사역을 주셨다. 교회는 공동으로 그리고 각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계층, 인종, 민족 사이에 화해, 사랑, 정의를 증진시키도록 추구한다.<sup>135</sup>

**7.00** 하나님은 모든 삶과 역사를 완성하신다.

## 사망과 부활

**7.01** 사망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려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sup>136</sup>

**7.02**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 후에 육체의 부활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하면서 벅찬 기대로 살아갑니다.<sup>137</sup>

**7.03** 전 인격체인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으로 부활되는 중생의 과정처럼, 전 인격적인 인간은 죽음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현존하심 안에서 영원히 즐겁게 산다.<sup>138</sup>

**7.04** 믿는 자는 죄의 사망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신한다. 믿는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sup>139</sup>

## 심판과 완성

**7.05**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와 미래 모두 존재한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단절, 죄책감과 자신의 행위의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생의 목적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다.<sup>140</sup>

**7.06**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상 전쟁이나 내란, 노예제도, 억압, 천연 자원의 파괴, 정치적, 경제적 착취 등과 같은 악을 자유롭게 행한 나라나 사람에게서 내려진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없는 고통과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들을 미워하신다.<sup>141</sup>

**7.07**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회개와 믿음과 사랑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에 반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죄와 죽음 즉 지옥에 희망없이 속박 당한채 있다.<sup>142</sup>

**7.08**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역사가 완성되는 때, 세계 모든 왕국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 그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sup>143</sup>



## 인용 성경 구절

- <sup>1</sup>**1.01** Dt. 6:4-5, 32:3-4; 1 Ch. 29:10-12; 시 33:4-5, 89:5-18, 99, 102:25-27, 103, 111,145:8-21; 사 6:1-3; 말 3:6; 요 3:16; 고전 8:4-6; 딤편 2:5-6; 1 요 4:7-10; 계 1:8, 15:3-4.
- 1.02** 출 3:1-6; 시 19:1-6; 마 28:18-20; 요 1:1-18, 3:16-17; 행 7; 롬 1:18-20; 고전 1:30-31; 고후 13:14; 엡 4:11-13; 빌 2:5-11; 골 1:13-20, 2:8-10; 딤후 3:14-17; 히 1, 2, 5:5-10; 2 P. 1:19-21.
- 1.03** 창 9:8-17, 17; Dt. 7:9; 시 36:5, 89:1-5; Jet. 31:31-34; 고전 1:4-9; 고후 3:4-18; 히 8, 9:11-28, 10:19-25.
- 1.04** 창 1-3, 6-8, 11:1-9, 19:1-29, 37, 39-50; 출 1:19; 1 K. 17:1-6, 19:4-8; 2 K. 22; 사 53, 55; Am. 2; 행 7; 롬 4; 갈 3:6-14; 엡 1:3-14.
- 1.05** 창 1-3; 출 24:3-4; Dr. 31:9-13; 수 8:30-35; 요 3:16-17, 20:30-31; 행 1:16; 고전 2:11-13; 엡 4:11-16; 딤후 3:14-17; 2 P. 1:19-21, 3:18.
- 1.06** 시 119:142, 151-152; 마 5:21-48, 17:4-8; 요 16:12-15, 17:7-8; 히 1; 1 요 5:9
- 1.07** 요 14:25-27, 16:12-15; 행 15:15-18; I Co. 2:9-13.
- 1.08** Dt. 18:15-19; 시 33:4-5, 34:8; Mr. 26:36-46; 요 5:30-47, 10:11-18; 롬 1:18- 23, 2:4; 엡 1:3-14, 3:1-12; 히 5:7-10.
- 1.09** 사 40:12-18, 45:9-11; 롬 1:18-23, 2:12-16, 11:33-36.
- 1.10** 창 1-2; 출 20:11; Neh. 9:6; 시 19:1-6, 24:1-2, 95:3-7, 104; 요 1:1-3; 행 14:14-17.
- 1.11** 창 1:26-27, 2:7, 5:1-2; 욥 33:4; 시 8:3-8, 100:3; 갈 3:27-28.
- 1.12** 창 1:26; 시 24:1, 50:10-11; Hag. 2:8; I Co. 4:7.
- 1.13** 창 4, 6-9, 12-22, 27-33, 35, 37, 39-50; 출 1-20, 33; 욥 38-41; 시 23, 27, 34, 37, 90-91,105, 107, 121; 사 25:1-5, 40-45; 마 5:45, 6:25-34, 7:7-12, 10:29-31; 롬 8:28-39; 딤후 1:11-12, 4:14-18; I P. 5:6-11.
- 1.14** 출 9:13-16; 수 1:5-9; 시 135:5-7; Jer. 1:4-10; 마 19:26; 눅 3:8; 행 22:12-15, 27:22-25; 롬 4:18-21.
- 1.15** 롬 8:18-23; 엡 1:9-10; 골 1:17-20.
- 1.16** 시 94:14-19, 139:7-12; Pr. 15:3; Jet. 23:23-24; 롬 2:1-16; 고후 12:7-10.

- 1.17** 말 3:16-18; 마 16:18; 행 20:28; 롬 8:28-39; 엡 5:26-27.
- 1.18** 욥 11:7-10; 사 40:28-31, 55:8-9; 롬 11:33-36; 고후 12:7-10.
- 1.19** 출 20-23; Lv. 19:18; Dt. 6:49; 시 19:7-11; Mic. 6:6-8; 마 22:34-40; 로 2:12-16, 12:9-10; 갈 6:7-10; 딤펢전 1:8-11.
- 1.20** 출 31:18; 시 40:8, ], 03:8-14; Jer. 31:33; 롬 2:14-16.
- 1.21** 마 5:17-19, 12:1-8; 롬 3:21-31, 12:9-13, 13:8-10; 갈 3:21-26; 히 8:8-13.
- 1.22** 눅 10:25-28.
- 2.01** 창 1:26-31; Dt. 30:19-20; 사 55:1-3; 롬 10:8-13; 계 22:17.
- 2.02** 창 3:1-7; 수 24:14-15; Jer. 31:29-30; 겔 18:1-4, 26-28; 롬 1:18-32.
- 2.03** 창 3:1-13, 6:5.
- 2.04** 창 6:5; 시 58:3-5, 106:6; Pr. 5:22-23; 사 59:1-15; Jer. 17:9; Mic. 7:2-4; 요 8:34; 로 3:9-19, 5:12-14, 6:16, 7:14-20; 딤펢후 2:24-26; 2 P. 2:17-19.
- 2.05** 요 3:18-19, 36; 로 1:18-32, 2:1-9, 3:9-19; 갈 6:7-8; 엡 5:5-6.
- 2.06** 창 3:17-18; 로 8:18-23; 엡 1:9-10; 골 1:19-20.
- 3.01** 요 3:16, 10:7-18, 17:20-23; 고후 5:17-21; 엡 1:3-10, 2:11-22; 골 1:15- 22.
- 3.02** 창 17:1-7; 출 19:3-6, 24:3-8, 34:6-10; 사 64:8-9; Jer. 31:31-34; 롬 4:13- 25, 8:14-17; 갈 3:6-9, 26, 4:4-7; 히 11:8-12.
- 3.03** 창 3:15; 시 105:7-10, 111:2-9; Mr. 26:26-29; 고후 3:12-18; 갈 3:13-18, 21-22; 히 8:6-13, 9:11-15, 23-28, 10:1-18.
- 3.04** 창 3:15; Mic. 5:2; 요 8:56-58, 17:24; 고전 10:1-4; 엡 1:3-10.
- 3.05** Mr. 28:18-20; 고전 1:17-25, 11:23-26; 골 2:9-15; 딤펢후 4:1-2.
- 3.06** 창 17:7-14; 행 2:39, 16:15, 33; 고전 1:16; 골 2:11-12.
- 3.07** 마 1:18-23; 눅 1:26-38, 67-75, 2:8-13; 요 1:14-18, 3:16; 로 5:6-11, 8:1-4; 고후 5:17-21; 엡 1:3-10, 2:4-10; 빌 2:5-11; 골 1:15-20; 벧전 1:3-9, 18-21, 2:21-25; 1 요 4:9-10.
- 3.08** Mr. 4:1-11; 요 1:1-4, 14, 3:13-19, 36, 17:1-5; 행 4:12; 로 1:1-6; 골 2:9- 10; 딤펢전 3:16; 히 2:17-18, 4:15, 7:26-28; 벧전 2:22-25; 1 요 3:5.
- 3.09** 사 53, 61:1-3; 마 26:36-46; 요 10:11-18; 행 1:3; 롬 4:23-25, 8:31-34; 고전 15:3-8; 히 2:9, 9:24.

- 3.10** 요 16:8-15; 행 13:1-3; 롬 8:26-27; 벰전 1:3-9.
- 3.11** Mk. 15:24-37; 요 3:5-8, 6:63; 롬 8:11; 고전 10:1-4, 12:4-11; 고후 3:4-6; 갈 3:8; 딛 3:4-7.
- 4.01** 요 16:7-11; 행 7:51; 롬 3:23-26; 고전 15:3-4; 1 요 2:1-2, 4:9-10; 계 22:17.
- 4.02** 요 16:7-11; 행 8:29-39, 13:1-3.
- 4.03** 고전 2:14; 엡 2:1-10; 딛 3:4-5; 계 22:17.
- 4.04** 사 63:10; 요 3:14-15, 36, 5:24; 행 5:3-4, 7:51; 롬 10:8-13.
- 4.05** 막 14:72; 눅 15:18-20, 19:8-10.
- 4.06** 시 34:18, 51:17; 겔 18:21, 30-32; Jr. 2:12-13; Mr. 3:2; 눅 13:2-5, 17:10; 행 3:19, 17:30-31; 엡 2:8-9; 딛 3:3-7.
- 4.07** 시 32:5, 51:3-17; 눅 15:18-20, 19:8-10; 엡 4:25-31.
- 4.08** 요 6:28-29; 롬 10:17.
- 4.09** 요 3:14-28, 36; 행 16:29-31; 롬 4:16; 갈 3:21-22; 엡 1:13-14; 빌 3:8-9.
- 4.10** 요 1:11-13, 5:24, 6:28-29, 40; 롬 1:16-17, 10:8-13; 1 요 5:12.
- 4.11** 눅 22:31-32; 요 16:33; 로 3:3-4, 4:19-21, 8:28-39; I Co. 1:4-9, 10:13; 살전 5:23-24; 딤후. 3:3-5; 딤후 2:11-13; 히 11, 12; 1 요 5:4-5.
- 4.12** 창 15:6; 시 32:1-2, 103:8-13, 130:3-8; 눅 18:9-14; 행 13:38-39; 로 3:19-31, 4, 5:1-2; 고전 1:30-31; 빌 3:7-11; I P. 1:8-9.
- 4.13** 시 32:1-2, 103:8-14, 17-18; 예 31:34; 요 10:27-30; 롬 8:1-4; 히 13:5-6; 벰후 1:3-11.
- 4.14** 롬 7:7-25, 8:5-8, 12-13; 갈 5:16-17; I 요 1:5-10, 2:15-17.
- 4.15** 겔 36:25-27; 요 1:11-13; 고후 5:16-21; 엡 2:4-10; 딛 3:3-7; 벰전 1:23-
- 4.16** 시 14:1-3; Mr. 15:18-20; 요 3:3-8; 롬 8:6-7; 갈 6:15; 엡 2:1-3.
- 4.17** 요 1:12-13, 3:3-8, 14:25-26, 16:13-15; 딛 3:4-6.
- 4.18** 고전 12:3; 갈 5:22-24; 벰전 1:22-25, 4:8-11.
- 4.19** 눅 18:15-16; 요 3:3; 행 2:38-39.
- 4.20** 로 8:14-17; 갈 4:3-7; 엡 1:5-6.
- 4.21** 시 4:3; 롬 6:6-14, 20-22; I Co. 6:9-11; 고후 6:14-18; 7:1; 엡 4:17-24, 5:25-27; 살전 5:23-24; 2 Th. 2:13-14; 히 9:13-14; 벰전. 1:1-2

- 4.22** 시 14:1-3; Ecc. 7:20; 롬 3:23-24; 고후 3:18, 9:10-11; 엡 3:14-21; 빌 2:12-16; 골 3:5-17; 살전 3:12-13; 딤후 2:20-21; 벤티전 2:2-3; 2 P. 1:3-11.
- 4.23** 롬 7:7-25; 갈 5:16-17; I 요 2:9-11.
- 4.24** 시 37:27-28; Lam. 3:22-24, 31-33; 요 5:24, 10:27-29; 롬 8:38-39; 고후 4:13-18; 빌 1:6; 딤후 1:11-12.
- 4.25** 시 23, 34, 91,121; Jet. 32:40; 요 14:16-17; 롬 5:10; 고후 5:5; 딤후 2:19; 히 7:23-25; I 요 2:1-2; Jd. 24-25.
- 4.26** 시 32:3-5, 51:1-12; 사 59:1-2
- 4.27** 롬 5:1-5; 딤후 1:11-12; 1 요 2:3-6, 5:13.
- 4.28** 마 28:19-20; 롬 5:1-2, 8:15-17; 엡 1:13-14; 히 6:17-20, 13:5; 2 P. 1:3- 4, 10-11; 1 요 3:2-3, 14-15, 19-24, 4:13.
- 4.29** 롬 15:13; 히 6:11-12; 2 P. 1:10-11.
- 5.01** Mr. 16:18; 요 10:16, 17:20-23; 롬 12:4-5; 고전 10:17, 12:12-27; 엡 1:22-23, 2:14-22, 3:4-6.
- 5.02** 마 28:18-20; 고전 3:11; 엡 4:15-16, 5:23; 골 1:18-20.
- 5.03** 요 17:17-23.
- 5.04** 창 12:1-3; 마 8:11, 28:18-20; 요 3:16; 갈 3:28; 히 2:9; 계 7:9-10.
- 5.05** 마 28:18-20; 요 20:21-23; 행 10:42-43; 롬 10:14-18; 고전 1:21-25, 15:1- 11; 고후 5:18-21; 벤티전 1:10-12.
- 5.06** 창 12:1-3, 17:1-7; 마 8:11; 갈 3:26-29; 히 12:18-24; 계 7:9-10.
- 5.07** 창 17:7; Dr. 6:4-9; 사 40:11; 마 19:13-15; 행 2:39; 고전 7:13-14; 엡 6:1-4.
- 5.08** 마 5:14-16, 13:24-30, 47-50, 28:18-20; 행 1:6-8; 고전 12:4-11.
- 5.09** 사 49:6; Mr. 5:14-16, 28:19-20; 요 15:1-11; 고후 5:14-21.
- 5.10** 로 12:9-21; 갈 5:13-14, 6:1-2; 빌 2:1-7; 살전 3:12-13, 5:11-15; 히 13:1-3; 벤티전 4:8-11.
- 5.11** 시 133; 행 2:42-47.
- 5.12** 시 29:1-2, 95:1-7, 96:1-9,145:4-7; 마 4:10; Ja. 4:22-24.
- 5.13** 시 89:1-2, 100,150; 엡 5:18-20; 히 13:15; 벤티전 2:9-10.
- 5.14** 행 2:44-47, 10:34-48, 20:7-11; 딤후 2:1-10; 히 10:19-25.

- 5.15 수 24:15; 마 6:6-13; 고전 14:26-33; 엡 5:18-20.
- 5.16 창 17:9-14; 출 12:21-27; Mr. 26:26-29, 28:19-20; 로 4:11.
- 5.17 마 28:19-20; Mk. 14:22-25; 고전 10:16-17, 11:23-26.
- 5.18 마 3:11-12; 행 2:38-41, 10:44-48.
- 5.19 행 16:14-15, 32-33; 고전 1:16.
- 5.20 마 28:19; 행 8:36-39, 10:47-48.
- 5.21 행 2:33, 10:45; 딤후 3:4-7.
- 5.22 행 8:36-38, 16:15, 33; 고전 1:16.
- 5.23 마 26:26-29; 고전 10:16-17, 11:23-26.
- 5.24 Mr. 26:26-29; 고전 5:7-8, 11:27-34.
- 5.25 행 2:42, 46-47; 고전 11:23-26.
- 5.26 마 26:26-28; 고전 11:28-32.
- 5.27 고전 14:40.
- 5.28 사 43:10, 49:6; 마 28:19-20; 눅 24:45-49; 행 1:6-8, 5:30-32, 10:39-42, 22:14-15; 벧전 2:9.
- 5.29 마 13:33, 28:19-20; 요 21:15-17; 행 2:41, 4:4, 6:7, 9:31; 엡 4:10-16.
- 5.30 Ae. 8:26-40, 10:34-48, 13:16-48, 14:1-3, 14-17, 17:22-31.
- 5.31 마 28:19-20; Ae. 10:34-35; 14:16-17, 17:22-31; 로 2:12-16.
- 5.32 행 1:21-26, 6:1-6, 14:23, 15:6-22; 빌 1:1; 딤후 3:1-13, 5:17-22.
- 5.33 마 18:15-20; 행 20:28-31; 고전 5:1-5; 살전 5:12-14; 딤후 5:17-22; 딤후 1:5-9; 벧전 5:1-5.
- 5.34 행 14:23, 15:6-29, 16:4; 딤후 4:13-16, 5:17-22; 딤후 1:5-9.
- 5.35 마 18:15-17; 행 15:6-29.
- 6.01 요 8:31-36; 행 5:29-32, 40-42; 로 6:12-23, 7:24-25, 8:1-17, 14:4; 고전 8-9, 10:23-33; 갈 3:1-14, 5; 엡 2:18, 3:11-12; 1 요 4:18.
- 6.02 고전 8, 12:12-27.
- 6.03 고전 8; 벧전 2:16.
- 6.04 마 18:17; 로 13:1-2; 고전 5; 딤후 3:1; 히 13:17; 벧전 2:13-16.
- 6.05 마 6:24; 행 4:5-31, 5:27-32; 계 19:10.

- 6.06 시 116:12-14; 롬 11:5-6; 엡 2:4-10; 딛 3:4-7.
- 6.07 Mk. 5:18-20; 눅 7:47-50, 19:8-9.
- 6.08 눅 6:43-45; 갈 5:22-25.
- 6.09 사 58:6-7; 마 25:31-46; 눅 10:29-37; 히 6:9-12, 13:1-5; Ja. 1:19-27, 2:8- 26; 벵전 2:11-25.
- 6.10 창 1:26-31; 시 8:3-8, 24:1, 50:10-12; 행 4:32-27, 20:33-35; 1 Co, 4:7; 갈 2:9-10; Ja. 1:17, 2:1-7.
- 6.11 눅 21:1-4; 행 4:34-37, 9:36-41; 고후 8:1-15.
- 6.12 마 25:14-30; 고전 12:4-26, 13, 16:1-2; 엡 4:1-16; 벵전 4:10-11.
- 6.13 창 28:22; Dr. 14-22; 말 3:8-11; 마 23:23; 고전 16:1-2.
- 6.14 마 12:36-37; 눅 12:16-21, 47-48; 로 14:10-12; I Co. 4:1-2; 고후 5:9-10.
- 6.15 창 1:26-31, 2:8~24; Pr. 31:10-31; S. Sol. 8:7; 마 19:3-12; 고전 13; 엡 6:1-4; 골 3:18-21.
- 6.16 행 4:34-35; 고전 7, 12:14-26; 1 요 2:12-14.
- 6.17 창 2:18-24; 사 54:5-6; 엡 5:21-33; 계 19:7-8, 21:2-3,9.
- 6.18 창 2:21-24; 로 7:2.
- 6.19 창 2:24; 고전 7:2.
- 6.20 마 5:31-32; 고전 12:12-27.
- 6.21 엡 5:21-33, 6:1-4.
- 6.22 행 2:44-45, 4:32-37, 6:1-3; 로 12:4-21; 고전 12:14-27; 갈 6:1-2; 골 3:12-14; I Th. 5:14-15.
- 6.23 창 2:2-3; 출 20:8-11, 23:12; 요 20:19; 행 20:7.
- 6.24 사 58:13-14; 마 12:1-14; 요 7:23-24; 고전 16:1-2.
- 6.25 Lv. 19:12; 시 116:12-14; Ecc. 5:2.
- 6.26 Nu. 30:2; Dt. 23:21-23; Eec. 5:4-5; 마 5:33-37.
- 6.27 2 S. 23:3-4; 2 Ch. 19:5-7; 시 72:1-4, 82:1-4; 로 13:1-7; 딤펢전 2:1-2; 벵전 2:13-17.
- 6.28 마 17:27, 22:15-21; To. 13:1-7; 딤펢전 2:1-3; 딛 3:1; 벵전 2:13-17.
- 6.29 2 Ch. 26:16-18.
- 6.30 Dr. 15:7-11; 시 41:1-3, 82:3-4; Pr. 21:13, 29:4, 14.
- 6.31 마 9:35-38, 14:14, 15:32-39; 로 12:19-21.
- 6.32 마 28:18-20; 고후 5:18-20.

**7.01** 창 2:17, 3:19; 욥 14:1-2, 10-12, 30:23; 시 103:15-16; 요 5:24, 11:25-26; 행 4:1-2, 17:17-18, 30-31, 24:14-15; 롬 5:12; 고전 15:12-57; 엡 2:1-8; 딤후 1:8-10; 히 2:14-15; Ja. 1:15; 벤티전 1:3-5; 1 요 3:14; 계 1:17-18.

**7.02** 롬 8:11; 고전 15:12-57; 고후 5:1-10; 빌 3:20-21; 살전 4:13-18; 벤티전 1:3-9; 1 요 3:1-2.

**7.03** 살전 4:13-19, 5:9-10.

**7.04** 요 3:14-18, 36; 고전 15:51-57; 고후 5:1-5; 1 요 3:1-2, 5:12.

**7.05** Etc. 12:13-14; 마 25:31-46; 요 3:16-21, 5:25-29; 행 17:29-31; 롬 14:7- 12; 고후 5:9-10; 히 9:27-28; 2 P. 2:4-10, 3:5-10; 계 20:11-15, 21:8.

**7.06** 말 3:5; 롬 2:1-3; 갈 6:7-8.

**7.07** 눅 16:19-31; 요 3:18-21, 36; 히 9:27-28; 계 20:11-15.

**7.08** 고전 15:22-28; 계 11:15-18, 12:10-12.

## 헌법 전문

교회 조직의 형태는 교회 활동이 집행되는 구조이다. 교회 조직의 목적은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있어 교회를 돕는 것이다. 이 헌법은 장로교 형태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은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가 교회의 사역 방법을 관리하는데 쓰기 위함이다.

교회 조직의 자세한 형태는 성경에 씌여져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연결성은 분명하다. 장로교에서는 성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교회와의 연결성을 구체화 한다. 구약성경에서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주 시대 동안 교회조직은 시민조직과 합병이 되기도 하고, 가끔 통치를 받기도 한다.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 후 바벨론의 포로시대 동안 유대 교회당은 언약 공동체의 조직 형태를 띄기 시작한다. 그 당시의 조직이 장로교회 형태의 원형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쳤다. 도시에서의 바울의 선교 활동도 주로 회당에서부터 시작했다.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지고, 유대교와 점점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조직은 교회당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발전되어갔다.

유대 회당에서부터 전수된 교회조직의 형태는 교회당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던 장로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적인 체계이다. 그리스어로 장로는 프레지뷰테로(프레지비터)라고 해석이 된다. 장로의 모임을 프레지비테리안라 불리기 때문에 장로교의 이름이 프레지비테리안(Prebyterian)이 되었다.

비록 예수님의 추종자들중 첫번째 지도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지만, 사도라는 이 용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사용된 듯 하다. 사도들의 죽음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장로라는 용어가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을 지명하는 칭호로 사용되게 되었다.

신약성경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들을 인정한다.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다른 하나는 목회자를 도와주는 평신도들이 선출한 장로들이다. 모든 장로들은 교회 정치 활동을 공동으로 주관한다. 감독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장로와 동의어로 해석한다.



장로의 직책과 더불어, 신약성경은 집사라는 일련의 평신도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스어의 신하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diakonos) 이란 말에서 유래하여,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들을 말한다. 교회 조직에서 장로들은 대표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인정하는 교회조직의 단계는 개교회 (당회), 지역(노회), 전체 교회(대회 또는 총회)이다.

# 헌 법

## 1.0 교회

**1.1**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맺은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믿음의 가족인, 즉 보편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부르심에 제자로 응답한 모든 민족과 전세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2** 보편적 교회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 동시에 모일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는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증인의 삶을 살며,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개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

## 2.00 개교회

**2.01** 개교회는 세례 받은 어린이를 포함한, 신앙 고백을 한 기독교도들의 회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복음에 대해 공동 증인이 되며, 특정 교회 조직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 2.10 개교회의 회원

**2.11** 교회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있는 개교회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와 언약관계를 맺으며, 세례의 성례전을 받는자로 구성된다.

**2.12** 당회는 개교회에 속한 회원을 감독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

**2.13** 신자의 자녀들은 언약을 통해 성례전을 받고 신앙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신자의 자녀는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고백하고, 교회 회원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목회자의 감독과 지도 그리고, 교회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

**2.14**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지 않고 세례 받은 자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교회의 주의 깊은 보살핌과 지도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2.15**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로 교회의 목회적 관심 안에 있다.

## **2.20 개교회 회원에 대한 처리권**

**2.21** 교인은 그들이 소속한 개교회 당회의 관할 하에 있다.

**2.22.** 이명청원서는 개교회 회원에게 주지 않고,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컴벌랜드 장로교회 소속이나 다른 교단의 다른 교회로 직접 보내야 한다.

**2.23** 개교회의 당회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다른 개교회의 회원을 전입서를 받고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입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개교회는 해당인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해당인의 이전 교회에 이를 통지한 후에 그를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명 청원서 송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는 교회에서 전입한 회원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24**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이명청원서에 의해 전출한 교인은 이명청원서를 받은 교회의 당회가 접수했다는 신뢰할 만한 확인서 또는 이명 수리통지서를 받을때까지는 이명청원서를 낸 교회 당회의 권한에 속하게 된다 (이명 청원서 및 이명수리통지서의 서식은 교회 헌법 부록 1.2 참조하라).

**2.25** 교회 회원이 소속한 개교회의 영역을 벗어나 이주하고, 이명청원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실제 활동하는 교인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비활동 명부에 그들을 포함시킨다. 이 모든 과정은 당회의 서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당회의 이런 조치에 대한 기록은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2.26**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그 회원이 징계를 받고 있지 않거나, 고발내용이 없을 경우, 그 회원의 이름은 교인명부에서 삭제될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삭제하기 전에, 해당인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2.30 개교회의 재직자들

2.31 개교회의 재직자들은 복음의 전파와 성례전을 집행하도록 안수 받은 목회자, 회중의 대표와 지도자로 선출된 안수 받은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도록 선출되고 안수받은 집사회의 일원인 집사들이다.

### 2.40 개교회의 조직

2.41 개교회는 노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교회 계획 과정에 노회를 포함시켜야 한다. 노회가 교회의 설립을 승인 한 후에는 노회에 의해 지명된 위임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회 회원인 어느 목회자도 교회 설립에 필요한 모든 책임의 수행과 조직을 주재할 수 있다. 개교회는 노회의 승인이 없는 한, 컴벌랜드 장로교회 또는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다른 개교회에서 3 마일 이내에 위치할 수 없다.

2.42 개교회의 조직 체계화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입서 또는 현재 교인이라는 증언이 교인들에 의해 제시되어야 한다. 신앙의 재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고백, 교회와의 언약관계, 세례 (혹은 세례의 확인), 그리고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교인이 될 수 있다.

나. 교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언약 관계에 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여, (미국)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조직에 따라 조직된 교회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서로에게 언약관계에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풍성케하신 것처럼 복음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께 주어진 은사뿐 아니라 노력과 기도로 교회 사역을 지원하며 교회에 협력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아가 목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친교를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몸된 교회의 조화와 순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다. 다음 단계로, 사회를 보는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컴벌랜드 장로 교회 (또는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 조직에 따라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라. 교인들은 사회를 보는 담임 목회자와 함께, 당회를 구성할 장로의 수와 임기를 정하고 장로를 선출해야 한다. 장로의 안수와 취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 회원의 선택에 의해, 장로가 선출될 당시나 또는 그 이후에 있을 공동 의회에서 집사를 선출, 안수, 취임할 수도 있거나 집사를 뽑지 않을 수도 있다.

마. 사회를 보는 목회자 또는 노회의 의해 임명된 위원회는, 설립 예비에 대한 보고서와 새로 설립된 교회가 노회의 구성원으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추천서를 다음 노회 정기 총회에 첨부할 책임이 있다. 보고서에는 설립일자, 장소, 교회 설립에서 노회를 대신하여 회중을 정리할 사람의 이름과, 설립시 교인 수, 그리고 선출된 재직자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 가입 승인서 서식은 교회 헌법 부록 3 참조)

## 2.50 개교회의 조직

**2.51** 개교회 조직의 책임은 당회에게 있으며, 당회는 회중의 선거에 의해 당회의 구성원으로 취임한 장로와 담임 목회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설립된 당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에서 교회 회원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 기도, 찬양, 성경봉독, 십일조와 헌금, 말씀 설교와 성례전을 포함하는 공예배.

나. 기독교인의 성장을 위한 성경 연구를 포함하는 기독교 교육.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적절한 친교활동.

라. 비신자들과 교회의 친교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인적 증언.

마. 병자 방문

바. 가정, 특히 문제가 있고 깨어진 가정에 대한 목회적 관심

사. 시간, 재능, 금전과 교회 재산의 보관과 운용의 청지기 역할.

아. 권징의 행사

자. 지역 회중의 범위 밖에 있는 교회 사역에 참여;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선교에도 참여; 이러한 선교활동 중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서로 다른 영역의 선교를 대표하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장로들과 같이 활동하도록 사람들을 임명하고, 교회 생활에서의 개인적인 지도.

**2.52** 목사가 없는 개교회는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가 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 교회에 맡겨진 모든 선교를 수행함에서 교인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2.53** 개교회의 공동 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소집된다:

가. 장로와 집사의 임기 결정

나. 장로와 집사의 추천, 선거 혹은 사직서의 수리

다. 당회 혹은 집사회의 정족 수를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의 숫자로 제정할 때

라. 더 이상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장로 혹은 집사를 다시 불러 들일 때;

마. 교회 자산의 매각 및 구입 승인을 위해 국가의 법이나 노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2.54** 공동의회는 그외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 당회와 교회 구성원과의 대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표결 과정은 거치지 않는다.

**2.55** 공동 의회는 당회의 승인 또는, 총 교인수의 15%가 요청하거나 또는 노회가 직접 지시했을 때 개최한다. 공동의회는 고지는 적어도 개회 1 주일 전에 전교인들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개회일 전 3 주간 주일에 광고하거나, 혹은 당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 알린다. 담임 목회자 혹은 담임목회자가 없을 경우에는 노회가 임명한 목회자가 공동의회 의장을 맡는다. 당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며, 회의록은 다음 당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회 기록의 일부로 편입되어 보관한다. 공동의회 정족수는 개회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교인 수가 된다.

## 2.60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2.61** 말씀과 성례전의 직분은 그 책임과 유용성에 있어 교회 생활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른 이들과 구분하신다. 이 직분에 맞는 자는 신앙이 건전하고, 행실이 모범적이며, 이 사역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가 된 자들은 그 직무에 맞는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의 직무가 다른 기독교인들 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같은 사명을 나눈다. 단지, 목회자들은, 그들의 부름을 받은 직분, 즉 그들의 인생에서의 임무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른 것 뿐이다.

**2.62** 성경에서 사역을 맡은 자는 다양한 임무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려졌다.

*목사*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영적 양식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로 성례전을 집행한다.

*사역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역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와 정치를 공유한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호소한다.

선지자는 사람들과 나라들에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도록 열심히 강권한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중재한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공히 선포한다.

교사는 기독교인의 성장에서 필수인 교훈들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설명한다.

이러한 명칭들은 교회 내에서 특권을 주거나, 직분의 종류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역에 포함되는 의무의 범위를 보여준다.

**2.63** 개교회의 목사로 초빙된 목회자는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가. 공예배에서 사람들을 이끔;

나. 회중의 입으로써, 회중을 위해,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

다. 회중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라. 성례전을 집행함

마.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축복함

바.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 성경을 가르침

사. 사람들을,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그리고 위급하고 곤란한 자를 방문하고 돌봄

아. 결혼을 준비하는 자에 대해 조언을 함.

자. 비신자 및 친교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과 교회의 개인 간증을 함께 나눔.

차. 성경에 비추어 사람들의 개인적인 필요와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조언함.

타. 문제가 있는 가정과 깨어진 가정을 상담함.

파.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들과 함께 모든 사역에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림.

**2.64** 비록 목사가 교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형태이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회자에게 다른 재능도 주셨고,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인정한다. 노회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재능들을 단지 개교회의 목사로뿐만 아니라, 여러형태 학교의 종교 선생님, 선교사, 전도사, 상담자, 교회 행사와 조직의 행정 담당자, 개교회의 기독교 교육담당자, 교회에 직접 연관된 다른 분야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노회는 목회자가 위임받은 사역을 뒤에 언급되는 여러 형태로 예배의 봉사를 통해 그 사역을 시행하도록 승인한다. 여러 형태의 사역을 행하는데 있어, 목회자는 목사, 목회자, 장로, 전도사, 선지자, 제사장, 설교자와 교사로서의 의무를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 2.70 장로

**2.71** 장로는 회중의 직접적인 대표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정치와 지도를 하도록 회중의 선거로 선출된다.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는 당임 목회자와 함께 개교회의 목회를 감독한다.

**2.72** 장로는 그가 봉사하는 교인들을 돌보고 지도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치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신앙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병든 자, 슬픔에 빠진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기도한다. 장로는 시간, 재능, 금전의 충실한 관리자로 사람들에게 예배, 학습, 증거, 교회 봉사에 함께 참가하도록 말과 행위로 격려한다. 그들은 목사가 알아야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목사에게 알려야 한다.

**2.73** 장로의 직은 남자, 여자, 노인이거나 젊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 장로는 모든 기독교인이 갖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함께 사람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장로는 선량한 인격, 건전한 신앙, 지혜, 성숙한 판단, 분별, 대화, 교리와 교회 정치에 대한 지식, 직무 수행의 능력에 의해 복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2.74** 장로의 직을 맡는 자는 그 직에 맞는 학습과 준비를 해야 하며, 당회 구성원의 임기 동안 그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학습을 계속하여야 한다.

## 2.80 집사

**2.81** 집사는 회중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교회의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며, 이런 목적을 위해 교회가 준비한 기금을 운영하도록 안수 받는다. 이 일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사역이다. 가난한 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돌봄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증거한다. 집사는 가난한 자, 노약자, 병든자, 고아, 난민, 감옥에 갇힌 자와 다른 곤란에 빠진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과 위원회와 그룹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집사의 일은 교회 전체와 관계가 있으므로, 집사는 정기적으로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2.82** 원하는 교회에 한해서 당회는 집사에게 예산 편성권과 다른 재정적인 책임을 맡길 수 있다.



**2.83** 집사의 직은 남녀 노소의 구별이 없이 할 수 있다. 집사는 건전한 판단력, 선량한 성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사역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집사의 책임을 맡은 자는 그에 맞는 공부와 준비를 해야 하며, 임기 중에도 자기의 직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2.84** 집사회의 유무는 개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집사회의 설치가 비효율적인 교회에서는 장로가 집사의 의무를 맡게 됩니다. 만약 집사회가 만들어지면, 누구도 예외없이 당회와 집사회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 **2.90 장로, 집사의 선거, 안수 및 취임.**

**2.91** 특정 교회의 설립 시에, 장로와 집사는 교회 조직에 참가한 회원들의 추천과 선거에 의해 임명된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당회 또는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회중의 위원회에서 장로, 집사 또는 그 직을 대행할 후보를 선택해서 회중에게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 다른 임직은 교회의 다른 회원이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투표는 추천을 받은 자의 이름이 발표된 공동의회, 또는 다음 공동 의회에서 하게 된다. 구두로 표결이 아닐 경우,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투표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다. 추천을 받은 자가 임직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

**2.92** 장로, 집사에 선출되면, 당회는 그들의 안수와 취임일을 정한다. 이미 안수 받은 자는 취임식만 한다. 정해진 날에, 당회는 예배로 모인 회중과 함께 안수식을 소집한다. 담임 목회자는 장로와 집사직의 성격과 책임,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하여 간결하게 말한다. 이후 담임 목회자는 다음의 질문을 후보자에게 하고, 긍정적인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I.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신앙과 실천의 규범이라고 믿으십니까?

II. 당신은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 교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십니까?

III. 당신은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교회 정치를 인정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IV. 당신은 교회의 화평, 일치, 성결을 증진키 위해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V. (장로에게) 당신은 교회 회의에 장로로 참가함에 있어서, 회의 결정의 책임을 함께 하며, 결정을 따르며 교회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VI. 당신은 이 교회 장로(집사)의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전에 안수 받은 장로, 집사의 취임은 VI 번 질문에 동의해야 한다.

이 질문들에 긍정의 답을 받은 후, 사회자는 회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이 교회의 회원 여러분은 이들을 장로(또는 집사)로 승인하고, 받아들이며, 이직에 취임한 자에게 격려와 도움과 존경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 질문에 긍정의 답을 얻은 후, 후보자들은 무릎을 꿇는다. 당회 회원들은 그들 주위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적절한 기도를 할 때, 장로들은 후보자들에게 안수함으로 이들이 장로/집사의 직으로 구별되게 한다.

다음으로, 모두 기립하고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에 따라, 선거에 의해 안수 받고, 장로(집사)로 취임되었음을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당회원은 새로 취임한 자들의 손을 잡고 다음을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이 직분에 참여토록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손을 내밉니다.*

이 다음, 사회자는 새로 취임한 자와 회중을 향하여 적절한 권고의 말씀을 하게 된다.

**2.93** 당회/재직회의 구성원은 임기를 정하지 않거나 혹은 윤번제에 기초하여 임기를 정하여 선출된다. 교회의 설립 당시에는 당회, 재직회에 대하여, 한 가지 형태의 임기를 채택한다. 기존 교회에서 임기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재직회의를 해산하고, 새로운 임기 형태를 설정하고, 새롭게 정한 임기 형태에 맞는 당회/재직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결의는 공동 의회에서 회중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약 개교회가 윤번제에 기초한 임기의 장로/집사의 선출 방법을 택한다면, 이 경우 임기는

윤번제 관례에서 조항들이 확립되었을 때, 또는 임기 잔여 기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 년이어야 한다.

**2.94** 만일 당회/재직회의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간 정례 회의의 1/2 이상 결석시, 혹은 훈련 규정 이외의 이유로 그의 직책 수행을 교회가 수용할 수 없을 때, 당회는 그의 해직을 심의하기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취하기 전에, 관련된 자에게 회중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95** 장로/집사가 그의 직책을 수행할 교회의 예배, 학습, 복음 증거, 봉사에 참가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으로 이사 갔을 때, 당회는 그 사람의 임기 종결을 회중에 제안할 수 있다. 장로/집사가 이명 청원에 의해 전출하였을 경우, 그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종결되며, 당회는 이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96** 장로/집사가 이명 청원서에 의해 다른 교회의 회원이 됐다면, 그들은 선거와 취임식을 한 후에만 그 교회의 당회/재직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3.00 교회의 법체제

**3.01** 교회 조직은 질서있고 효과적이어야 하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형태일 필요가 있다. 입법, 행정, 혹은 치리회라 불리는 사법 기관들의 단계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순이다.

**3.02** 교회의 연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교회 조직의 구조로 표현된다. 당회는 특정 개교회에 대해 목회적 감독과 권위를 행사한다. 노회는 정해진 지역내의 목회자, 당회, 교회를 감독한다. 대회는 정해진 지역내에서의 노회, 목회자, 당회, 교회를 감독한다. 그리고, 총회는 대회, 노회, 목회자, 당회, 교회에 대해 목회 감독과 치리를 행사한다.

**3.03** 교회조직의 각 권한은 교회 헌법의 조항에 의해 한정된다. 비록 각 치리회는 그들에 속한 고유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사법 권한을 행사하나, 하위 치리회는 조직 계보에서 상위 치리회의 감사와 지도를 받는다.

**3.04** 정상적으로 구성된 모든 수준 단계의 교회 조직은 올바르게 진지하게 제기된 교리와 규율에 관한 의문점을 해결한 권리가 있고,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고, 교회의 평화, 성결, 발전에 해가 될 잘못된 의견이나 행위들을 바로 잡을 권리가 있다.

**3.05** 모든 회의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3.06** 노회, 대회, 총회의 임시회의는 치리회가 다른자로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 한 그 전에 개최된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 혹은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당회의 임기가 만료된 장로는 치리회의 임시 회의에 대표로 일할 수 없다. 치리회의 임시회의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총회를 요청한 회원들의 다수가 회의 사회자에게 또는 사회자가 없거나 아플 경우에는 의장에게 임시 총회를 취소하고 싶다는 문서를 써 보내면 취소할 수 있다.

**3.07** 노회 또는 대회 회의에 출석한 다른 목회자(다른 교단)는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특권을 가진 조연자로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의장이 노회 혹은 대회에 소개해야 한다.

**3.08**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회의록과 모든 다른 공식 기록은 이들 회의 조직 혹은 그들의 치리회 후임자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개교회, 노회, 대회가 해산할 때, 그들의 기록은 해산 전 소속하였던 상위 치리회가 보관하게 된다. 현존하거나 혹은 해산한 당회, 노회, 대회의 회의록과 다른 공식 기록 혹은 사본은 보전을 위해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컴벌랜드 장로교회의 교회 역사 자료관에 보관된다. 각 치리회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치리회에 권고하는 일은 각 치리회의 서기 책임이다.

### **3.10 치리회의 위임회와 위원회**

**3.11** 각 치리회는 적절한 감독과 권위를 수행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상임 그리고,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 의원을 선출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설치된 위원회는 치리회의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 숙고하고 치리회에 추천하는 일을 맡게 된다.

**3.12** 각 치리회는 제출된 일을 심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면서, 치리회의 감사를 받는 위임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위임회는 활동의 전 기록을 그들을 임명한 치리회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치리회의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다. 위원회의 과반수가 의사 정족수가 된다. 위임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가. 목회자의 안수, 이럴 경우 위임회는 2 명의 목회자를 포함한, 노회의 정족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 나. 담임목사 그리고 협동목사/부목사의 취임
- 다. 새 교회의 설립
- 라. 증언의 청취 혹은 징계청문회 실시
- 마. 문제있는 교회 방문
- 바. 항소의 청취
- 사. 교회 내에서 발생한 특정 문제의 조사

### 3.20 조례

**3.21** 최고의 치리회를 제외한 각 처리회는 바로 위의 치리회에게, 조례를 통해 공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조례는 하위 처리회의 미결정 사항을 상위 처리회에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다. 조례를 만든 처리회는 상위 처리회의 처리 혹은 조언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증언과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조례는 치리회의 표결에 의해 준비해야 한다.

**3.22** 조례는 전례가 없고, 어려우며, 미묘하여, 하위 처리회가 결정하지 못하거나 의견이 나뉘워지는 경우 적절하다.

**3.23** 조례는 하위 처리회가 결정을 위한 준비로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경우의 조례는 하위 처리회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연기시키거나, 혹은 최종 결정을 위한 사례 전체를 상위 처리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3.24** 조례를 접수한 처리회는 조언 혹은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조례를 요구한 처리회에 제기된 문제를 보낼 수 있다.

**3.25** 어떤 경우에는 조례가 적절하지만, 각각의 처리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유익하다.

### 3.30 교회 재산

이 부분은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그 이전의 교회가 교회 조직의 장로제도의 창시에서부터 지켜왔던 원리들입니다.

**3.31** 교회 내에서 결정을 하고, 검토되고, 개정되는 방법을 기술한 헌법, 징계 규정, 회의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교회 정부의 조항은 자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3.32** 컴벌랜드 장로 교회는 연결된 교회이며 모든 교회의 하위 치리회 즉 대회, 노회, 개교회가 몸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개교회, 노회, 대회, 총회 혹은 컴벌랜드 장로 교회가 소유한 자산은 법적권리가 법인 대표 혹은 책임 위원회, 비영리 법인 단체 어디에 있든, 이 자산이 개교회 혹은 포괄적인 치리회, 혹은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되었든, 자산의 부동산 권리 증서가 씌어져 있다하더라도,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사용과 유익을 위하여 신탁하여 보관된다.

**3.33**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 내의 개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사용을 중지하려고 할 때마다, 헌법을 따르는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특정 교회로써, 그 자산은 해당하는 개교회가 위치한 노회에 의해 보유, 사용, 충당, 이전 혹은 매각되어야 한다.

**3.34** 개교회가 노회에 의해 정식으로 성도의 해산, 분산, 교회 활동의 포기 이유로 교회가 없어질 때, 개교회의 자산은 개교회가 위치한 지역 노회가 지도하고, 제한하고, 위탁하거나, 또는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교회 헌법에 의하여 노회의 지도하에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3.35** 개교회는 예배, 교육 또는 사역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교회의 부동산은 개교회 당회를 거쳐, 개교회가 속한 노회의 문서 승인 없이는 매각이나 임대할 수 없다.

## 4.0 당회

**4.1** 개교회의 당회는 담임 목회자와 공동 의회에서 선출된 장로로 구성된다. 장로는 최소한 2 인 이상이지만, 총 당회원의 숫자는 각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회중에 의해서 결정된다.

**4.2** 목사가 없는 교회이거나, 책임을 맡은 목회자가 없거나, 노회에서 지명한 의장이 없는 교회인 경우에는, 당회가 회의를 열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4.3** 당회는 당회 구성원 2 인 이상의 요구시 모일 수 있다. 담임 목회자는 공동 예배 중 혹은 예배 후 또는 당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한 시간에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4.4** 공동 의회에서 특별히 정족수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당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정족수가 된다. 하지만 교인의 등록과 전출의 허가는 목회자와 2인의 장로가 함께 할 수 있다.

**4.5** 당회는 개교회의 목회에 관한 감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가.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목사(협동/부목사)의 청빙. (청빙 서식은 교회 헌법 부록 4 참조)
- 나. 새 회원의 접수
- 다. 교회 내 교리와 훈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
- 라. 노회에 항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징계 청문회에서 유죄로 판단된 교인에 대한 경고 혹은 자격 정지의 선고.
- 마. 부모들에게 자녀의 세례의 중요함을 전하고 장려함.
- 바. 이명청원서를 발행할 때는 서류에 부모와 세례를 받은 자녀의 이름을 항상 포함시킴.
- 사. 장로와 집사가 선출되었을 때 안수와 취임식을 하고, 이 직분자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함.
- 아. 회의록의 심사와 집사의 사역을 감독함.
- 차. 어린이 양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교회 내의 학교, 성경 연구반, 친교, 그리고 다른 조직의 설립 및 감독을 함.
- 차. 교인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것을 장려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모금에 대한 조직과 감독, 전반적 교회 재정을 감독함.
- 카. 목사의 부재시 회중을 모으고 예배 진행함.
- 타. 교회 사역의 진전과 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세우고 조정함.
- 파. 상위 치리회에 파송할 대표자의 선출하고 대표자들에게 활동내용과 회의의 결정 사항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함.
- 하. 상위 치리회의 명령 준수 및 수행.

**4.6** 노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당회는 회중에게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두 명의 장로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컴벌랜드 장로교회에만 해당된다.)

**4.7** 목회자를 제외한 당회의 구성원은 교회의 재무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교회 자산의 명의인이 될 수 있으며, 민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당회는 소수의 사람들을 재무 담당자로 선출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재무 담당자들은 당회에 특별히 권한이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하게 된다. 이런 재무 담당자의 임기는 무기한 혹은 일정기간 윤번제로 운영될 수 있다.

**4.8** 각 당회는 당회의 진행과정에 관한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최소한 1 년에 한 번씩은 노회에 제출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당회는 공동 회의, 교인의 결혼, 세례, 전입, 사망, 전출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5.0 노회

**5.1** 노회는 규정된 지역 내에 있는 개교회의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당회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지리적 경계의 기반이나, 혹은 교회의 번영과 확대의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여겨질 때 또는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설립할 수 있다. 대개, 지리적 요건에 근거한 노회가 아닌 경우, 지리적 요건의 노회와 중복될 수 있다.

**5.2** 여러 개의 교파로 구성된 적어도 1 개 이상의 다른 교회와 연합한 (미국)컴벌랜드 교회의 사역자, 연합 교회의 목회자, 일정 기간 타 교파의 교회에서 사역한 자, 다른 교회의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는, 노회의 승인이 있다면, 다른 교단의 교역 회원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이 부가적인 자격이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목회자 자격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안수시 노회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함으로 맡게 된 엄숙한 책임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5.3** 총회가 교단적인 관계로 상호 인정하는 다른 교회의 목회자가 회중의 목회자가 되거나, 여러 개의 교파로 이루어진 넓은 지역의 목회자가 된 경우, 적어도 협동 목회자 혹은 미국 바깥에서 총회와 상호 협정을 맺은 교회의 목회자로 교역 능력이 가능하거나, 컴벌랜드 교회의 대학과 신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는 자는 그의 사역 기간 중 노회의 구성원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일시적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질 수 있다.

**5.4** 개교회의 당회는 노회에 1 인 이상의 대표자를 파송할 자격이 있다. 활동 교인이 1 명-300 명인 교회의 당회는 노회에 1 명의 장로를, 활동 회원이 301 명-600 명인 교회의 당회는 노회 회의에 2 명의 대표 장로를 보낼 수 있다. 이하의 대의원 수는 같은 비율로 결정된다. 장로 대의원은 그들이 대표하는 당회의 선거에 의해 임명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다.



5.5 지정된 일시와 장소가 정해져서 모인 노회는 적어도 1 명의 목회자와 1 명의 장로를 포함하는 4 인 정족수 (목회자와 당회의 대표자)가 채워지면,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5.6 노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감독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역 지원자의 등록, 심사, 해임 및 강도사의 임직 및 안수.
- 나. 목회자의 등록, 해임, 취임, 이동과 징계 (목회자의 접수, 해임의 서식은 교회 헌법 부록 5,6 참조)
- 다. 사역자가 교회 목사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승인.
- 라. 목회자에게 성스러운 소명을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태만한 자에게 대한 질책과 징계
- 마. 당회의 기록을 점검하고, 질서에 위반되게 행하는 당회의 활동에 대해 훈육하며, 당회가 교회 정치를 준수하도록 지도
- 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출한 상소, 이의 신청, 조례를 심사하고 결정
- 사. 일방 또는 양자 요구시 혹은 종교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될때 교회와 목회자 간의 목회관계를 체결 혹은 해산
- 아. 상위 치리회의 권고가 준수되는지 관찰
- 자. 교회의 순수성과 평화를 해치는 의견을 정죄하며, 교리와 훈련에 관한 질문을 적절히 해결하며 심도있게 제안한다.
- 차. 개교회에 방문하여 개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며, 그들 내에서 발생한 악한 것들을 교정한다.
- 카. 교회 재산의 사용에 관한 차이를 조정한다.
- 타. 새 교회의 장소와 기존 교회 이전 승인
- 파. 교회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의 제안과 계획을 승인
- 하. 교회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처해있거나 활동이 없는 교회들을 분할 혹은 합병하고, 교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다른 교회와 합병 혹은 분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회를 해산하고 그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합병시킨다.
- 가. 새 교회를 설립하고, 접수하여 노회 지역 내 교회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나.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특별 감독하여, 당회를 이끌 목회자를 지명하고, 필요하다면 성례전의 의미와 집행 과정을 목회 위원회를 통해 교육받는 조건하에 회중에게 주의 만찬을 진행할 수 있는 장로 2 인을 지정, 승인할 수

있다. 그 장로는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안수 목회자의 승인 하에 봉사하며 각 승인 기간은 1 년이다.

- 다. 예산 책정과 노회의 교회 분담금을 지정한다.
- 라. 노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고 감독한다
- 마.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교회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한다.
- 바. 상위 치리회에 파송할 대의원 선출한다.
- 사. 대회나 총회에 교회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안을 제출한다.

**5.7** 노회는 회의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며, 대회의 정기 회의에 심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정기적으로 모든 전도사, 강도사, 목회자, 당회 서기와 교회를 포함한 명부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덧붙여서 노회는 전도사의 인허가와 안수, 목회자의 접수와 해직, 사망, 교회의 합병, 분할, 설립과 노회 전체 교회의 실정을 알리는데 필요한 통계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5.8** 노회는 독자적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연 1 회 이상 개최합니다. 예정된 다음 회의 일정 이전에, 긴급 회의를 열어야 할 경우, 2 인의 다른 교회의 목회자와 2 인의 다른 교회의 당회원이 문서로 요청을 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의 부재, 사망,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서기가 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회의 지정일에서 적어도 10 일 전에, 노회의 명부에 기재된 모든 목회자와 당회에, 개최 예정 회의에서 다루게될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는 회의를 소집한 특정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5.9** 어떤 이유로든 예정된 일시에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면, 의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의장의 부재, 사망, 업무 불능시에는 서기가, 서기가 부재, 사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 정족수 상당의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통지는 회의 개최 예정일보다 적어도 10 일 전에 보내야 한다.

## **6.00 목사, 강도사, 목회 후보자(전도사) 에 대한 노회의 권한**

### **6.10 목회 후보자(전도사)의 등록**

**6.11** 각 노회는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도 육성할 수 있는 목회자 위원회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6.12** 목회 후보자(전도사)의 자격 요건은 등록된 노회에 속한 개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어야 한다. 목회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목회 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강도사의 자격을 얻으려 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직분에 적격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훈련과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사역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노회는 목회 지원자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강도사의 자격을 준다. 강도사는 안수 받기 전에 목회 자격을 만족할 만한 증거가 요구될 것이다.

**6.14** 목회 위원회는 전도사의 신앙 경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동기와 소명 의식과 교육에 대한 계획들을 심사한다. 목회 위원회의 사전 심사가 등록시 노회 심사를 배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도사가 노회에 등록될 때에 소속 교회의 당회로부터 그의 자격에 관한 문서와 함께, 다른 이로부터 목회후보자(전도사)를 추천하는 구두 또는 문서의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6.15** 목회 후보자(전도사)의 등록은 노회의 정식 회의에서 받아들여진다. 지원자에 대한 심사와 다양한 증언들 들은 후에, 목회 위원회의 위원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 지명된 사람은 목회 후보자(전도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_\_\_\_\_노회는 귀하에 관한 간증을 들었고, 심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I.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를 위해 당신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II.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당신은 기독교인의 성품과 행실을 유지하며, 근면하고 신실하게 목회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III. 귀하는 목회 준비 과정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목회 위원회를 통해 노회와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IV. 귀하는 이제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목회 후보자로서 이 노회에 등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노회에 전도사로서 정식으로 등록된 후, 사회자는 적절한 기도를 할 것이다. 기도 후 회중은 기립하며 사회자는 전도사에게 다음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당신이 (미국)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강도사 목회자의 후보자로 인정되고 등록되었음을 노회의 권위에 의해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귀하의 이름을 목회자 후보(전도사) 명부에 등록될 것을 명합니다.

그런 후에 사회자는 후보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손을 내밀며 말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등록 결과를 노회의 회의록에 적절히 기록한다.

**6.16** 노회는 후보자의 이름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으나,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는 언제라도 스스로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 노회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6.17** 노회에 의해 등록이 되면, 교회의 당회의 일원인 목사 후보생은 목회 위원회와 교회 당회의 상호 동의에 의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 후보자는 상위 치리회에서 회의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

**6.18** 후보자가 다른 노회로의 이명 청원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노회가 접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접수 받은 노회는 전도사에 대한 위에 적힌 일반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 전도사가 다른 노회로 이직할 때는, 그 노회에 속한 개교회에서 봉사하여야 한다.

## **6.200** 강도사

**6.201** 목회후보자(전도사)가 목회의 전도 활동에서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보여지고, 이런 활동을 위한 준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노회가 판단하였을 때, 노회는 전도사에게 강도사를 인허가 한다. 이런 결정은 영적인 성장, 교회와 교역의 본질에 대한 이해, 성경, 신학, 교회사, 선교에 대한 지식, 자국어 사용 능력 또한 이런 수준의

준비에 필수적인 다른 과목의 지식에 관해 교직 위원회가 전도사에 대해 진행한 사전 심사에 기초한다. 심사 과정의 일부로 전문가에 의한 직업 적성 검사 및 심리 검사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목회 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노회에 의한 심사의 생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202** 전도사는 노회에서 인정한 대학의 졸업 자격을 갖춰야 강도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풍성한 목회를 위한 적절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지만, 노회의 판단에 의해 대학교 졸업을 끝낼수 없는 자에게 한한다. 이런 경우, 전도사는 목회 위원회의 지도하에 총회 인가의 3년 과정의 대체 신학 교육을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마쳐야만 강도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6.203** 전도사가 강도사가 인허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 노회 또는 미리 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노회의 위임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임 위원회는 노회의 정족수로 구성되지만, 2인의 안수 받은 목회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자는 강도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간결히 설명한 후, 전도사에게 다음의 질문을 한다.

I. 귀하는 친구와 성경들이 신앙과 실천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믿습니까?

II. 귀하는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의 신앙 고백서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적 교리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III. 귀하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 그리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IV. 귀하는 안수 받을 준비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강도사에게 부여된 목회의 기능을 실행하며, 목회 위원회를 통해 노회와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사회자는 질문에 긍정의 답을 들은 후에, 사회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한다. 기도 후에는, 회중이 일어났을 때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후보자에게 말한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교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써, 노회는 이제 귀하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교회 헌법이 정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강도사의 권한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강도사 인허의 정식 기록을 노회의 회의록에 기재한다.

**6.204** 강도사는 노회의 범위 내에서 혹은 관계된 노회의 승인 하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

**6.205** 강도사는 노회의 목회 위원회와 노회의 승인 하에, 노회 소속의 하나 또는 복수의 교회를 임시 목회자 (Stated Supply)로 섬길 수 있다.

**6.206** 강도사는 다른 노회 소속의 교회에서 대리 임무자로서 섬길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양쪽 노회 또는 연관된 모든 노회의 목회 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쪽 노회의 목회 위원회가 상호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노회가 부여한 강도사의 목회 활동은 노회가 직접 감독을 하게 된다.

**6.207** 대리 임무자로 봉사하도록 승인된 강도사라도 안수에 대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 요구된다.

**6.208** 강도사는 노회나 대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고, 역시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6.209** 강도사는 다른 노회로의 이명 청원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노회가 이를 접수할 의무는 없다. 접수를 받은 노회는, 강도사에 대한 위에 상기한 통상의 심사를 할 수 있다. 강도사는 이적한 노회의 개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6.210** 강도사는 개교회의 일원으로 회원권이 유지된다. 강도사는 노회의 승인 하에서 선교의 특정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노회의 징계 결정을 따라야 한다.

**6.211** 노회는 언제라도 강도사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삭제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강도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6.30** 목회자의 안수

**6.31** 안수는 강도사로 하여금 복음 선교의 전 부분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수 받은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장 상위의 관계 직분이므로, 노회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어떤 누구도 안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도사는 교회 혹은 노회에 의해 승인된 성직에 청빙 받을 때만 안수 받을 수

있다. 노회는 강도사의 기간이 길어졌다고 안수를 줄 책임이 없으며, 유익한 약속보다 길게 강도사의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32** 강도사는 안수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목회 위원회와 노회가 함께 신중하고 충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험 종교, 지속적인 영적 성장, 성직에 대한 내적 소명,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사, 조직 신학, 목회적 돌봄과 상담, 교회 행정, 교회에서의 교육 사역, 설교 준비와 전달, 공동 예배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의 교리와 교회 정치. 심사의 일부로 노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의 사항에 관해 구술과 필기로 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강도사의 설교를 포함한 예배의 실연과 예배 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목회 위원회의 사전 심사가 노회의 심사를 생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6.33** 위에 언급된 학습사항 이외로 노회는 강도사에게 안수를 위한 준비의 일부로써, 성경의 이해에 유용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실제 쓸수 있는 정도로 습득하도록 장려한다.

**6.34** 노회에서 인정하는 신학 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한 강도사만이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결실이 있는 선교를 위해 적절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노회가 판단하고 타당한 이유로 신학 대학원에서 정교과목을 마칠수 없다고 생각될 때이다. 이런 경우, 노회의 지도하에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 과정의 대체 신학 교육을 만족할만한 성과로 수료할 때에 안수를 받을 수 있다.

**6.35** 안수의 집행은 정기 노회, 임시 노회, 소집 된 노회, 혹은 임시 회의에서 혹은 2인의 안수 받은 목회자를 포함하는 노회의 정족수로 구성되는 위임위원회에서 주어진다.

**6.36** 강도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노회가 인정될 때, 노회는 안수식의 일시와 장소를 고시하고 이를 준비한다. 미리 공시된 일시와 장소에서의 정규 예배에서 설교가 끝난 뒤, 강도사는 강단의 앞으로 나아가서 선다. 사회자는 이 집회의 목적과 안수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한 후에 강도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I. 귀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신앙과 실천의 규범으로 믿으십니까?

II. 귀하는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가르친 근본적 교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적용하시겠습니까?

III. 귀하는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를 인정하고 따를 것을 약속하십니까?

IV. 교회 치리의 목사로 참여할 때 결정 사항을 책임있는 방법으로 공유하고, 그 결정들을 따르며, 교회의 복지를 증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V. 당신이 아는 한, 성령에 의해 감화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는 진정한 열정 때문에 목회의 부름에 답하였습니까?

VI. 귀하는 어떤 반대에도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성결, 평화를 간절히, 그리고 충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VII. 귀하는 기독교인과 복음의 목회자로서, 당신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충실하고 근면하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상의 질문에 긍정의 답을 받으면, 강도사는 무릎을 꿇는다. 출석한 노회의 목회자, 협력자로 초빙된 자, 노회의 구성원인 모든 장로는 안수를 받을 사람의 주위에 모인다. 사회자 혹은 지명을 받은 자가 적절한 기도를 할 때 대의원들이 손을 얹음으로써 강도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엄숙히 안수한다.

그런 다음, 모든 대의원이 경건히 기립한 상태에서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써, 나는 이제 귀하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직을 안수 받아, 복음의 설교, 성례전의 집행, 교회의 통치의 권위를 위탁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사회 목회자는 신임 목회자의 손을 잡고 말한다 (사회자가 이야기가 끝난 후에 대의원들이 한 사람씩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참가하도록 귀하에게 친교의 손을 드린다. 대의원들이 그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 사회자 혹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지명을 받은 자가, 신임 목회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한다. 그런 후에, 신임 목회자에게 맡은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런 진행 상황들은 정식으로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며, 새 목회자의 이름이 노회 목회자 명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적을 두었던 교회는 그/그녀의 이름을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통보한다.

#### 6.40 안수의 인정(승인).

**6.41** 다른 교회 지체(교단)의 목회자가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노회의 목회위원회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목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조사한다.

- 가. 목회자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적절한 자격을 받았는지
- 나. 목회자가 신학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는지
- 다. 목회자가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역사, 신학, 정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 라. 목회자가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봉사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6.42** 목회 위원회에서, 6.41 항목에서 기술된 각각의 영역에 대해 만족하고, 안수 받을 때 강도사에게 했던 질문에 긍정의답을 했을 경우 목회자를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 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로 받아지도록 노회에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노회가 목회자를 심사 기회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6.43** 만약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신학 대학 및 대학원 학위가 없거나 또는 총회 인가의 대체 신학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그/그녀는 안수를 위한 신학 교육 과정을 충족하기 위해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학사 학위나 강도사에 필요한 대체 신학 교육(PAS, Program of Alternate Study)를 수료하지 않은 자는 목회 후보자(전도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학력 기준이 충족될 때 수련 과정은 완료되며,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경우는 강도사가 안수를 받을 때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에 긍정의 답을 하면 안수가 인정된다. 이상의 절차 때문에 노회가 목회자 심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6.50 목회자에 대한 치리권

**6.51**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의 이명 청원서는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특정 노회 혹은 타 교단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는 이명 통지서 서신을 받은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노회 혹은 다른 교단에 의해 정식으로 접수 통지가 올 때까지는 서신을 발행한 노회에 속한다.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는 어떤 경우라도 전 노회의 정식 이명 청원서 없이는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타 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

**6.52** 목회자가 적을 두기를 원하는 지역 외에 거주한다면, 소속하고자 하는 노회의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53** 고소 혹은 징계 집행 대상이 아닌 목회자가 하나님을 목회로 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거나 목회자로서 일할 능력이 없음이 뚜렷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 의해 그렇게 하고자 희망할 때, 목회자 자격의 취소와 해직을 요구할 수 있다. 목회 위원회는 선례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그 목회자와 즉시 면담하며, 노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요청한 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노회는 그 처리가 징계 규정의 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

**6.54** 본인의 요청으로 혹은 파면에 의해 안수가 취소된 자는 신앙의 재 확인에 의해 개교회의 일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6.55** 은퇴한 목회자는, 은퇴 하자마자, 소속된 노회와 대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이 후의 노회와 대회 출석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7.00**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와 교회간의 관계

**7.01** 개교회에 청빙되는 자는 목사, 협동/부목사/ 대리임무자 혹은 임시 목사 중 하나이다.

**7.02** 목사의 직은 안수 받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고, 개교회가 무기한으로 청빙한다. 노회는 그에게 당회 의장직을 포함하는 개교회의 영적 돌봄을 맡긴다.

**7.03** 협동 목사/부목사의 직은 안수 받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다. 그 직은 초빙한 교회가 정하고 노회가 승인한 다양한 목회적 사역을 하는 자로서, 개교회가 일정기간 혹은 무기한으로 청빙한다. 목사의 부재시, 협동 목사는 목사와 당회의 승인 하에, 당회 혹은 공동 의회 의장의 임무를 행한다.

**7.04** 노회에서 임명한 대리 임무자의 지위는 안수 목회자, 강도사 혹은 전도사에 의해 수행된다. 개교회는 임기를 정하지 않고 청빙한다. 그러나 임시 대리 직무인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청빙되며 전임 이하의 시간을 봉사한다. 안수 받은 목사가 대리 임무자 일 때는 당회 의장을 포함하여 개교회의 영적 돌봄에 관한 모든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다. 강도사나 전도사가 대리임무자로 봉사할 경우 당회 의장, 성례전 집행, 결혼식의 주례를 제외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다.

**7.05** 임시 목사의 직은 안수 목회자에 한하며,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의 당회에서 초청한다. 임시 목사는 12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며, 성례전을 집행하고, 목회자의 역할을 하며,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담임 목사를 찾는다. 임시 목사는 그가 임시로 봉사한 교회의 차기 담임목사, 협동 목사, 부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

**7.06** 개교회에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는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회는 선교국에게 아래의 권한을 주고 있다. 즉 노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에, 노회를 대신하여 청빙을 심사하여 개교회와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 간의 관계를 잠정 승인한다.

**7.07**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 개교회 간의 관계의 중지는, 양자의 요청시 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그것이 교회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될 때 노회에 의해서만 중지될 수 있다.

**7.10** 담임 목사 및 협동 목사, 부 목사의 취임

**7.11** 담임 목사 및 협동/부목사의 취임은 노회나 노회의 실행 위원회에 의해 취임한다. 취임식은 이에 적절한 설교,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에 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다음의 질문들을 포함한다.

목회자에게

I. 이 교회의 초빙에 응하여, 담임(협동/부)목사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맡기를 원하십니까?

II. 목사의 직무를 맡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복지의 증진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Ⅲ.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강함으로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또는 협동/부목사)의 책무를 신실히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 곤란에 빠진 자, 죽어가는 자와 가족을 잃고 남겨진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증인과 선교활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이 질문에 긍정의 답을 얻은 후에 다음의 질문을 합니다.

당회의 장로들에게:

I. 회중의 대표로서, 이 목회자를 담임(협동/부 목사)목사로 맞이하여 회중의 정치와 지도의 책임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II. 교회 헌법은 담임 목회자와 회중에 의해 선출된 장로를 개교회의 당회로 인정합니다. 구성된 당회는 회중에 대한 목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회자와 함께 회중에 대한 목회적인 감독의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Ⅲ. 당신은 이 목회자와 이 교회 목회의 모든 사역을 공개적이고 완전히 공유하며, 이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를 격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회중에게:

I.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청빙한 이 목회자를, 이 교회의 담임(협동/부) 목사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II. 당신들은 이 교회에서 이 목회자와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목회자를 돕고 격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Ⅲ. 당신들은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청지기 직분의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 물질 양면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질문에 긍정의 답을 얻은 후에, 사회를 진행하는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제, \_\_\_\_\_ 이/가 정기적으로 부름을 받고, 청빙을 받은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과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에 의하여, 이 교회의 담임(협동/부)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_\_\_\_\_ 은/는 주안에서 모든 지원과 격려 및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 목회자 혹은 지명된 자가, 담임(협동/부) 목사와 회중에 대해 양자간에 맺은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알맞은 격려의 말을 한다. 그 후 사회자는 기도로 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지키심이 있기를 기원한다.

## 8. 대회 (Synod)

**8.1** 대회는 지정된 지역에 있는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노회와 소속 노회내 대표 장로와 목회자로 구성된다.

**8.2** 대회는 소속 노회내 각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대표 장로와 300 명의 활동 회원마다 한 명의 장로로 구성하거나 노회 소속 내 1000 명의 활동 회원마다 한 명의 장로와 한 명의 목회자로 구성되는 노회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대표 장로들은 다른 교회 소속이어야 한다.

**8.3**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난 대회는 정족수인 6 명 (목회자와 당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다. 회의에는 적어도 한 명의 목회자와 한 명의 장로, 적어도 세 개의 노회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8.4** 항소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는 노회의 회원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8.5** 대회는 다음의 감독과 책임을 진다:

- 가. 노회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항소, 반대 또는 문의 사항의 검사와 결정
- 나. 노회의 기록 검토, 명령에 반해서 행해지는 문제의 재교정, 교회 조직을 지키고, 상위 치리회의 명령을 따르도록 효과적인 감독
- 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노회의 조직, 분리 해체.
- 라. 노회의 관할권 내 업무 담당자 임명
- 마. 예산 편성과 노회에 배분.
- 바. 전반적으로 교회 정치에 따라 교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관할 하의 노회, 당회, 교회에게 주의를 갖고 명령함.
- 사. 항소가 있을시 교회 자산과 그 사용에 관한 의견 차이를 중재.
- 아. 지역 범위 안에서 교회 번영과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
- 자. 대책을 강구한 방법이 전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할때 총회에 건의.

**8.6** 대회는 회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 검토를 위해 정해진 날짜에 총회에 제출과 관할구 내의 모든 중요한 변화와 종교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총회가 요구하는 다른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

**8.7** 대회는 폐회후 매 2년에 한번씩 연다. 휴회기간중 응급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 의장의 부재, 사망, 불능의 경우 서면 동의 또는 적어도 세 노회를 대표하는 세명의 목회자, 세명의 당회 회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서기가 회의를 주최한다.

회의 요청은 명부하의 개교회 모든 목회자와 당회에 특정 회의 사항을 기록한 공고를 적어도 제안된 회의 날짜 30일 전에 주어야 한다. 이 임시 대회에서는 소집된 항목 이외의 내용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8.8** 만약 어떤 이유로 대회가 휴정기간에 따라 만나지 못했을 경우, 의장 또는의장의 부재, 사망, 불능의 경우 서기 또는 서기의 부재의장의 부재, 사망, 불능의 경우, 정족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의제를 진행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 가능한 빨리 회의를 소집한다. 이때 회의 전 적어도 30일 전에 명부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당회에 공고가 나가야 한다.

## 9. 총회

**9.1** 총회는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최고의 치리회로, 모든 개발 교회가 한 지체임을 나타낸다.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 총회라고 명칭하며, 각 교회와 치리회 사이에 화합, 평화, 일치와 상호 신뢰로 결합이 구성되어 있다.

**9.2** 총회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매 2년마다 모임을 가진다. 다음과 같은 비율로 노회들에서 보낸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p>컴벌랜드 장로교회의 경우  가. 활동 회원이 1-1000 명인 노회의 경우(안수 받은 목회자 포함), 한 명의 사역자와 한 명의 장로를 보낸다.  나. 활동 회원이 1001-2000 명인 (안수받은 목회자 포함) 경우에는 두 명의 사역자와 두 명의 장로를</p>		<p>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경우  가. 활동 교인수가 1-200 명인 노회는 한 명의 사역자와 한 명의 장로를 보내야 한다.  나. 활동 교인수가 201-400 명인 노회는 두 명의 사역자와 두 명의 장로를 보내야 한다.</p>
---	--	---

<p>보낸다.</p> <p>다. 대표자의 숫자는 위에 언급된 비율에 따라 계속에서 늘어날 수 있다.</p>	<p>다. 활동 교인수가 401-1000 명인 노회는 세 명의 사역자와 세 명의 장로를 보내야 한다.</p> <p>라. 활동 교인수가 1001 명 이상인 노회는 4 명의 사역자와 4 명의 장로를 보내야 한다.</p>
---	--

장로가 총회의 위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참석 당시에 당회원으로 봉사하고 있어야 한다.

참석을 연기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모임이 필요한 응급 상황시, 의장 또는 의장의 부재, 사망,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문서로 된 동의서나 10 명의 사역자와 10 명의 장로로 구성된 20 명의 위원들의 문서화된 요구가 있어야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위원들은 적어도 5 개 노회를 대표해야 한다. 모임에 대한 소집은 계획된 모임보다 적어도 60 일 이전에 문서로, 모임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든 노회의 서기와 모든 위원들과 그들을 대신해서 오는 이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소집된 모임에서는 총회에서 다루기로 한 특정한 일외에는 처리해서는 안된다.

**9.3** 20 명 이상의 위원들은, 적어도 10 명은 사역자이고 10 명은 장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다, 약속된 장소와 날짜에 만나서 일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9.4** 총회는 다음과 같은 감독과 책임이 있다.

- 가. 총회는 낮은 치리회에서 총회가 있기 전에 받은 모든 호소와 보호, 추천을 받으며 결정한다.
- 나. 교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는 교리와 부도적인 실수에 대한 증언을 전한다.
- 다. 교리, 치리, 교회 특성 관점에서 모든 논쟁과 헌법 해석에 대한 결정을 한다.
- 라. 총회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관들을 세우고 감독한다.
- 마. 총회의 조언을 하며, 총회에 제출된 모든 사안들이 교회 조직과 일치하도록 지도한다.
- 바. 대회의 모든 기록물을 검토한다.
- 사. 하위 치리회들이 교회 조직 체계를 준수하도록 돌보며, 질서와 반대되는 것을 바로 잡는다.
- 아. 노회에 예산과 분담금을 지정한다.

- 자. 교회의 부흥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척도들을 만들고, 대회를 만들거나 나누거나 해체한다.
- 차. 총회 치리회 아래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사람들을 인명한다.
- 카. 교회 조직과 치리에 따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논란, 논쟁을 해결한다.
- 타. 관할권 아래에 있는 교회의 교리와 질서를 따르는 다른 교회의 기관을 받으며, 대회들과 노회들이 자신의 지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치리권의 기관에 적합하도록 지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각각 권한을 준다.
- 파. 전체 교회의 사역을 감독한다.
- 하. 다른 교회들과의 왕래한다.
- 까. 일반적으로, 총회 아래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랑과 진리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추천한다.

**9.5** 만약 총회가 모임을 가지고 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릴 수 없다면, 그것은 의장의 의무가 될 것이다. 또는 의장의 부재나 사망 또는 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서기는 가능한 빨리 지정되었던 장소에서 정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이런 목적의 알림은 노회의 서기에게 모임이 있기 60 일 전에 보내야한다. 의장이나 서기가 둘 다 없거나, 사망 또는 움직일 수 없으면, 그런 모임은 보통은 다섯 개의 노회에서 5 명의 위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 10. 교회들간의 관계

**10.1** 총회, 대회 또는 노회는 총회, 대회, 노회 또는 다른 교단의 비교될 수 있는 치리회와 협력해서 교회, 교회들 다른 교단 또는 교단들과 협력하기 위해 하나 또는 두 개의 조직 교회들이나 기관들에게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권한을 준다. 이것은 비공식적 배치 또는 법인체를 포함한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10.2** 컴벌랜드 교회의 규정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 헌법을 가진 다른 교단의 개교회가 노회에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할 때 다음과 같지 않으면 노회는 다른 교단의 개교회를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 가. 특정 교회가 노회 또는 치리회와 비교할 만한 치리회에 의해서 해산되었으며, 이런 해산 명령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 나. 노회의 접수와 해산은 다른 교단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최고 치리회의 적절한 충고를 받았을 때.



개교회가 적절하게 해산되었고 위의 규정 아래서 접수되었을 때, 접수된 노회의 재정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외적으로 만일 소유권이 처당이나 다른 부동산상의 채무가 없어졌다면, 접수하는 노회는 그런 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를 지불할 것을 동의했다고 가정해야 한다.

**10.3** 서로 다른 헌법조항을 가진 다른 교단의 개별 교회 또는 독립 회중이 컴벌랜드 교회의 노회에서 접수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 노회는 개교회가 다음과 같지 않다면 받아서는 안된다.

- 가. 개교회는 비교할 수 있는 치리회에 의해 해산되었거나 이 교회와 관계를 추구하는데 자유로워지는 회중 투표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체 결정이며, 회중에 대한 교회나 고소나 민원이 연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나. 노회는 회중이 컴벌랜드 장로교의 교리, 정치, 실행을 채택하려는 선의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노회는 조언을 하고, 성직자와 평신자에게 조언하며, 2년 이하 동안 준회원 기간(Provisional period)을 거쳐야 한다.

준회원 기간동안, 노회의 감독 하에 있는 회중은 모든 면에서 컴벌랜드 장로교회로 운영하며, 노회에 공식적인 대표를 보내야 한다. 회중의 회원은 치리회 이사로 섬길 수 있으며, 준회원 기간이 끝나면 총회 위원으로 섬길 수 있다. 만약 준회원 기간동안 노회 또는 회중이 컴벌랜드 장로 교회로 동화되는 과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관계는 노회 또는/와 회중의 공식적인 투표 후에 30일 안에 노회와 회중의 관계가 무효가 되었음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10.4** 노회는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조직 교회가 다른 교단 교회(들)과 연합 또는 단일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교단(들)의 상응하는 치리회와 함께 연합 또는 단일 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노회와 다른 교단(들)의 상응하는 치리회가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10.5**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의 노회 또는 대회,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노회 또는 대회는 경계선이 일치하면, 또는 일치하도록 만들어서 단일 노회 또는 대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두 개의 교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 11.0 수정안

**11.1**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헌법, 징계, 예배 지침서, 회의 순서에 대한 수정안들은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총회에서 안건이 채택이 되면, 모든 제안된 수정안은 각 총회의 치리회의 퍼머넌트 위원회(Permanent Committee)의 다섯 명으로 구성된 조인트 위원회(Joint Committee)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1.2**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헌법 또는 징계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안에 대한 조인트 위원회에 의해 각 교회의 총회에 제시되었을 때는 각 모임(assembly)의 권고안은 만약 모든 노회의 대표자 기준으로 전체 회원의 75% 이하가 모임에 출석하고 투표했다면  $\frac{3}{4}$  찬성을 받은 후에 각 노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11.3**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또는 징계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을 때는 각 총회의 노회의  $\frac{3}{4}$  찬성으로 승인이 되며, 각 총회가 수정안이 받아들여졌다고 선언한다. 노회의 투표는 다수결 투표로만 한다.

**11.4** 헌법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의 경우 채택이 된다.

- 가. 두 교회에서, 각 총회의  $\frac{3}{4}$  노회의 찬성으로 승인이 되어야 하고, 각 총회는 이를 선포해야 한다. 각 노회 투표는 다수결로 한다.
- 나. 각 노회의  $\frac{3}{4}$  이상이 찬성을 한 경우에 각 교회는 총회에 의해 수정안이 채택이 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각 노회는 다수결로 투표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안은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의 헌법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수정안이 적용된 원래 부분은 교회의 헌법에서 거절한 부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다. 노회들은 총회에서 추천한 개정안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 개정안이 전달된 후에 늦어도 다음 총회까지 투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1.5** 예배 지침서 또는 회의 규칙에 대한 개정안은, 만일 개정안이 신앙고백서 또는 헌법에 나타난 내용이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각 총회에 등록된 전체 위원회의  $\frac{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 교회 헌법 부록

### 부록 I.

#### 교인 이명 청원서

(전출 측 교회의 당회 서기가 전입 측 교회의 해당 기관에 보낸다. 부부의 전출서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_\_\_\_\_ 노회소속 \_\_\_\_\_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_\_\_\_\_가  
 \_\_\_\_\_ 교회(교단) \_\_\_\_\_ 교회로의 이명을 허락하고 증명합니다.  
 세례를 받은 어린이의 이름은 \_\_\_\_\_입니다.

상기 자는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의 장로 (     ), 집사 (     )입니다.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컴벌랜드 장로교회 \_\_\_\_\_ 교회의 당회의 지시에 의함.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_\_\_\_\_

의장 또는 당회 서기의 주소와 서명

주소: \_\_\_\_\_.

## 부록 2.

### 교인 전입 확인서

(전입측 교회의 목사는 이 서식을 완성한 후 잘라서, 전출 서신을 발행한 당회의 의장 혹은 서기에게 우송함)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 \_\_\_\_\_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_\_\_\_\_는 동 교회의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의  
 이명 청원서를 제출, \_\_\_\_\_교회(교단) \_\_\_\_\_교회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로 이명 청원서를 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서명 \_\_\_\_\_ (목사)

서기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한다.

### 당회 서기의 기록

회원명 \_\_\_\_\_ 주소 \_\_\_\_\_

전출 교회명 \_\_\_\_\_

전출 교단명 \_\_\_\_\_

이명 통지서를 보낸 곳:

이름 \_\_\_\_\_

주소 \_\_\_\_\_

보낸 일자 \_\_\_\_\_

접수 증명을 받은 날짜 \_\_\_\_\_

주의: 만약 6개월 이내에 접수 증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문의할 것.

### 부록 3.

#### 새교회 설립 청원서

새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교회의 당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에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고 가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_\_\_\_\_ 노회에게

아래에 서명한 모두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목사 \_\_\_\_\_  
(혹은 노회의 위임 위원회)에 의하여,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교회는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교회 정치 원리를 채택한 교회로서, \_\_\_\_\_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장로로 선출된 자는 다음과 같다. \_\_\_\_\_

집사로 선출된 자는 다음과 같다. \_\_\_\_\_

우리는 귀 노회의 관할에 가입하기를 원하며,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에  
의한 개교회와 직분에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당회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년월일자: \_\_\_\_\_

장로들 서명 \_\_\_\_\_

#### 부록 4.

##### 담임목사, 협동/부목사 청빙서

교회의 담임 목사 혹은 협동 목사/부목사를 초빙하고자 할 때는, 당회는 교인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정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선임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청빙 서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_\_\_\_\_ 교회는 목사로서의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교회의 다양한 필요를 수행할 수 있는 목회적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고 확신하기에, 우리 교회의 목사 (협동 목사/부목사)로 봉사하여 주시고, 전 공동체를 위한 목회의 일에 함께 해 주시도록, 임기를 정하지 않고 청빙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목회의 직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협력과 격려를 해 드릴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우리는 연봉 \$ \_\_\_\_\_ 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빙 서신에는 휴가, 병가, 목회 활동의 여행경비, 계약 종료를 규정하는 조항과 같은 것들을 고려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 초빙 관련 전체 내용은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록 5.

#####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의 이명 청원서

*(전출측의 노회 서기가 작성하여, 접수 측 노회의 서기 혹은 접수 측 교회 치리회에 보낸다.)*

컴벌랜드 장로 교회소속 \_\_\_\_\_ 노회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안수 받은 목사 (혹은, 강도사, 전도사)의 이명 청원을 승인하며, \_\_\_\_\_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노회 혹은 \_\_\_\_\_ 교회 치리회 로의 이명을 추천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노회의 지시에 의해 보냄.

서명 \_\_\_\_\_ (서기)

주소:

## 부록 6.

###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의 전입 접수서

(접수 측 교회 조직의 서기 혹은 해당 기관이 이 서식에 기입한 후, 잘라서 전출 측의 노회의 서기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안수 받은 목사, 강도사 또는 전도사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자로 \_\_\_\_\_ 노회로부터 이명 청원서를  
 제출하여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자로 컴벌랜드 장로 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의 \_\_\_\_\_ 노회 혹은 지정된 \_\_\_\_\_ 교회의 치리회에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서기 혹은 해당 임직자) \_\_\_\_\_  
 주소 \_\_\_\_\_

#### 이명 청원 관련 노회 서기의 기록

안수 받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 \_\_\_\_\_ (이름)은/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자로, (미국)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_\_\_\_\_ 노회로 이명되었습니다.

#### 접수의 기록

위 사람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자로 (미국)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노회  
 또는 지정된 \_\_\_\_\_ 교회의 치리회로 이명되었습니다.

날짜: 서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접수 등록 기록자 \_\_\_\_\_ (서기 혹은 다른 해당 임원)  
 주소: \_\_\_\_\_

## 치리에 관한 규칙

### 1.0 치리의 목적

**1.1** 교회 내에서의 치리는 사랑의 정신과 관심에 대한 긍정의 표현으로, 위반자와 교회 둘 다를 위한 것이다. 치리의 목적은 교회의 생명과 사역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개인 및 치리회의 연약함, 실수와 위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치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름받은 믿음과 실천에 반하는 행동들이 교회의 조직에 정부에 반하는 경우를 위해 필요하다.

**1.2** 교회 내에서의 치리는 실수와 위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해야 한다. 치리의 모든 행위는, 치리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 개인이나 치리회 둘 다를 위해 신중하게 경중을 따져야 한다.

**1.3** 치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담으로 시작해야 하며, 다음으로 보다 심각한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치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상담은 사람 또는 치리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치료하고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노력이다.
- 나. 징계는 사람이나 치리회의 약점, 실수, 위반 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할 것을 촉구하거나 명령하는 공식 행동이다.
- 다. 교회의 회원 정지는 공동 회의에서 투표할 권리를 임시로 제외시키는 것이며, 당회나 집사회에서 직무 수행에 대한 리더십의 직위를 없애는 것이다. 사역자의 경우는 사무실 직무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치리회는 임시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중지하고, 보다 상위 치리회에서 대표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지는 유기한 또는 무기한으로 실시될 수 있다.
- 라. 면직은 목사, 장로, 또는 집사의 안수를 취소하는 것과 그 직분을 없애는 것이다.

### 2.0 치리에 있어서의 권위



**2.1** 개교회의 치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당회에 있다. 교회 어린이에 대한 감독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우선권을 주며, 당회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회원에 대한 훈계나 회원 자격 중지는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만 취해야 하고, 상담을 통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회에서 장로를 제명하고, 재직회(집사회)에서 집사의 제명은 직의 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2.2** 목회자와 교회의 치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소속된 노회에 있다. 훈계, 중단 또는 면직과 같은 노회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심각한 위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담을 통한 모든 기회가 주어진 후에만 시행될 수 있다.

**2.3** 개교회의 행동이 개교회 회원의 영적 복지에 대해 해로울 때나, 보다 큰 교회와의 상호관계와 사역에 해악을 끼칠 경우, 노회의 선교부나 노회에서 지정한 특별 위원회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노회는 교회를 훈계하고 당회에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가르치며, 당회를 중지하고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며, 당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장로를 선출하거나 교회를 해산해서 다른 교회에 그 구성원들을 병합할 수 있다.

**2.4** 대회, 총회는 구성 치리회의 치리에 대해서 일반적 검토와 통제 또는 구성 치리회의 항소에 대답하는 차원에서 책임과 권력을 행사한다. 구성 치리회의 행동이 교회 정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교회의 생명과 사역에 해가 될 때, 특별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해결하고, 훈계, 중지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2.5** 각 노회는 '치리위원회'라 불리는 상설위임회를 설치한다. 당회 위에 있는 각 치리회는 '징계 위원회'라고 불리는 상설 위임회를 설치한다. 이 기관들이 '위원회'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각 상설 위임회는 법령 안에서 위임된 권력과 책임을 수행하고, 제시된 문제를 항상 법령에 따라 숙고하고 결론을 짓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치리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실행하고, 결론을 내리는 권한이 있던지 없던지, '치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다른 의무와 책임을 양도할 수 있다.

설명: 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할 수도 있고, 치리회의 기존 위원회나 위임회의 하위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기관들은 규칙에 정해진 것 외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가 '혼합' 형태를 띠어서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의 책임을 수행하고, 다른 경우에는 위임회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회는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치리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치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전통적인 역할과 권위를 행사하면서 노회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치리 위원회가 이러한 징계 법칙의 기능을 수행할때, 위임회의 역할을 받아서 청구된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를 숙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치리 위원회와 징계 위원회가 위원회로 활동하기 때문에(위임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 각 기관은 노회(상황에 따라 또는 대회)의 정족수에 만족시키는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 3.00 회원의 징계

#### 3.100 징계 청문회 없는 경우

**3.101** 회원(교인)이 자발적으로 당회에 자신의 잘못과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할 때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징계 조치는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도 된다.

**3.102** 회원 탈퇴 편지를 확보하거나 회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제명하기 원하거나, 다른 기독교 교회나 종교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당회의 행위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회원명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만약 그 회원에 대해 징계 조치가 있거나, 징계조치를 받은 중이라면 그 회원의 활동 상황은 교회와 요청하는 종교 단체에 보고 될 것이다. 만약 그 회원이 장로, 집사이면서 크리스찬 단체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에서 가입했을 경우 그 회원의 안수는 취소되고 임직에서 박탈한다.

*설명 : 제 3.102 항은 회원이 다른 교단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원이 다른 컴벌랜드 장로 교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보류 중이라는 사실이 이동한 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그 회원이 컴벌랜드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회원의 징계내용이 제공된다.*

**3.103** 목회자는 스스로 먼저 치리 위원회에 잘못이나 위반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목회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에 동의하면, 문제는 해결될수 있으며, 공식적인 징계 청문회없이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치리 위원회는 이 문제는 3.400 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된다.

**3.104** 목회자가 전출 확인서 없이 양호한 상태로 다른 기독교 교회 또는 종교 단체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회는 그의 불규칙성을 기록하고, 그의 이름을 회원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만약 그 목회자에 대한 고발 사항이 있거나, 징계 중일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요청시 그 교회나 종교 단체에 전달 되어진다. 만약 목회자가 기독교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 단체에 가입했을 경우, 그 목회자의 안수는 취소되고, 임직에서 파면된다.

*첨부: 3.104 항은 목회자가 다른 교단으로 전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목회자가 컴벌랜드 장로 교회의 다른 노회로 이동했을 경우, 고발 사항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은 다른 노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컴벌랜드 장로 교단을 떠날 경우, 그 목회자에게 계류된 고발사항은 전입 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된다.*

### **3.200 당회를 하기 전의 징계 청문회**

**3.201** 당회는 회원(피고인)에 가해진 어떤 고발사항에 대해 고발자(신고자)가 서명을 한 공식 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고발자는 고발 내용에 기초한 행위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고발 행위에 관한 신뢰할 만하고 설득력이 있는 정보를 가진 다른 회원이 될 수 있다. 고발 내용은 문서화 되었는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당회나 교인이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피고 교인을 돕고 격려하도록 상담할 수 있다.

*설명: 교회 회원과 목회자에 대한 징계 청문회는 별도로 섹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3.201 항은 위반 행위의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고발행위를 문서화하고, 싸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위반행위가 일어났다는 “믿을 만하고 설득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위반행위의 목격자나 피해자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예, 부모)이 문서로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고발을 문서화할 수 있다.) 또한 이 단락은 당회로 하여금 기독교 상담이 항상 적합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3.202** 실수나 위반 혐의가 있는지 2 년이 지난 경우는 고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범죄, 성추행의 경우는 10 년의 시간 제한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 성 추행이나 성 학대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이 없다.

**3.203** 관할 하의 사람의 기독교적 소양에 영향을 미치는 고발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당회는 피고인 (고발당한 사람) 과 상담하고, 고발 내용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만약 고발 내용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때, 당회는 청문회나

항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피고인의 지도자 지위가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 중지는 유죄의 추정이 아니라 교회 복지에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3.204** 만약 위원회가 조사 후고발 내용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낼 경우, 당회는 고발 내용을 기각한다. 만약 피고인이 고발 내용을 했다고 믿겨지는 근거가 있고, 피고인이 잘못 또는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위원회는 당회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추천한다. 피고인의 동의 하에 징계 조치는 공식적인 징계 청문회 없이 부과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면, 의장은 서기에게 피의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3.205** 위원회가 조사를 한 후에 피고인이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발견했지만, 피고인이 잘못,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제시한 징계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위반 사실,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 위원회가 찾은 사항, 권고되는 징계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당회는 유죄를 결정하거나 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 모두 청문회를 연다.

- 가. 만일 피고인, 고소인, 당회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날짜는 빨라도 열흘 이후의 날짜로 지정한다. 의장은 서기에게 피고인, 고소인, 활동 중인 당회원, 당회, 피고인, 고소인, 조사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증인들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공고를 통보하도록 지시한다. 이 공고에는 조사위원회가 틀을 짰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청문회를 하려고 한 결정이 피고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유죄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기재해야 한다.
- 나. 서면공고는 직접 손으로 배달되거나 공고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등기 우편(first class)으로 보내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서면 공고는 만약 실제로 배달이 되었을 경우에 유효하다.
- 다. 당회는 정당한 사유로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고소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문회가 자동적으로 연기 되는 것은 아니다.

**3.206** 청문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가. 청문회는 피고인, 고소인, 당회가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이 허가된 사람들이 다음과 같다. 당회원들, 피고인과 동반자 한 명; 고소인과 동반자 한 명; 당회가 요구하면 조사

위원회의 대표가 참석한다. 당회는 모든 증인들이 한 번에 청문회에 모두 다 참석할 지, 아니면 한 번에 한 명씩 증인으로 나올지 결정한다.

*설명 : 고발인이나 피고인을 동반하도록 허용된 동반자는 배우자, 부모, 가족, 친구 또는 상담원, 변호사와 같은 법률자문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반자 또한 증인이 아니라면, 지원과 충고르 해 주는 것 외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동반자는 소송절차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반자가 변호사일 경우, 동반자는 이 소송절차가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 나. 서기는 청문회의 모든 내용을 음성 녹음, 음성, 영상 녹음, 또는 서면으로 기록할 것이다.
- 다. 의장은 교인들과 다른 참석자들에게 섹션 1.1 에 명시된 징계의 목적을 기억하도록 요구한다.
- 라. 조사위원회가 준비한 고발 내용을 읽는다.
- 마. 증인 목록을 검토한다. 모든 증인은 증거 제공 능력이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회는 증인이 증거를 제공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 증거가 고발내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바. 피고인은 고발 내용에 대해 말한다.
- 사. 피고인을 고발하는 증인과 증거들을 먼저 받고 나서, 피고인을 옹호하는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발표된다. 증인은 하소연하고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징계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아. 의장은 피고인, 고발인, 또는 당회 회원들에게 각 증인들과 증거들을 심문한 기회를 제공한다. 의장은 질문이 경솔하고, 관련성이 없고, 부적절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의 결정을 당회에 항소할 수 있다.
- 자. 피고인 또는 고소인은 당회의 회원의 권리에, 사안에 있어서 부당한 개인적인 이익을 포함한 개인 편견에 바탕으로 한 투표나 발언에 대해 도전할 수 있다. 모든 문제 제기는 당회에 의해 결정된다.
- 차. 최종 발언은 마지막으로 말할 권리를 가진 고소인과 피고인에게 있다.

카. 당회의 회원만이 사건에 대한 심의에 참석하고 참여해야 한다. 모든 증거들은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타. 당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투표한다.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발 내용에 대한 유죄인가요 또는 무죄인가요? 피고인은 참석한 당회 회원들의 과반수가 유죄라고 투표하지 않는 한 무죄가 된다.

### 3.207 피고인이 무죄일 때:

가. 의장은 피고인과 고소인에 대한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의장은 징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화해의 친교로서의 교회의 본질, 참회와 용서의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나. 만일 당회가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선의로 고발 내용이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 3.208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가. 당회는 피고인의 고발내용에 맞는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내용이 결정되면, 의장은 결정과 징계내용을 피고인과 고소인에게 발표한다. 결정된 징계는 당회가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이 발효되어야 한다.

나. 의장은 징계를 받는 대상자에게 징계 내용의 결정을 기도와 자기 반성으로 응답하고, 위반 사항을 가능한 고치고자 노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다. 의장은 징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징계 회의의 중요성, 화해의 친교로서의 교회의 본질, 참회와 용서의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대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라.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이름, 유죄로 판명된 내용, 징계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희생자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3.209** 징계 청문회가 있고 난 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에는 징계 중인 사람이 당회에 추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결정하면 전에 제시되지 않았던 증거만 새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제시될 수 있다.

**3.210** 부과된 징계를 종료시킬만한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면, 당회는 이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징계는 다음과 같은 충분하고 믿음만한 증인 또는 다른 증거들이 제시될 경우 종료될 수 있다. (i) 당사자가 실수나 범칙 행위를 참회한 경우; (ii) 당사자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단계를 밟은 경우(iii) 당사자가 실수나 범칙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당회가 결정한 경우

*설명: 징계는 당사자가 오류 또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당회가 생각하지 않는 한 종료되어서는 안된다.*

**3.211** 특정한 징계하의 사람이 다른 교회로 전출을 할 경우 바람직하다고 여기면 징계청문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징계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징계를 수행할 전출 교회에 보낸다.

### **3.300** 장로들과 집사를위한 구체적인 절차들

**3.301** 어느 장로나 집사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조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직분이 주는 명성 때문에 사소한 고발이라 할지라도 조사를 피할 수 없으며, 어떤 작은 징계 또한 피할 수 없다.

**3.302** 항목 3.200 에 나온 조사나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참작할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할 지라도, 장로 또는 집사가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 장로, 집사는 직에서 보류되거나 파면될 수 있다.

**3.303** 장로나 집사가 보류되거나 파면됐을 경우 당회는 화해와 복귀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목회적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줘야 한다.

**3.304** 장로 또는 집사가 보류되거나 파면되었을 경우나 파면 보류가 중지되었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공고를 회중에게 알려줘야한다.

**3.305** 장로 또는 집사가 파면 되었을 때 징계를 명하는 행위를 통해서 안수를 다시 새롭게 하고 직위를 다시 복귀시킨다. 회중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출되어야 한다.

#### **3.400**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

**3.401** 목회자에 대한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또는 고소는 노회의 서기 또는 징계 위원회 회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불만/고소를 받은 사람은 즉시 징계위원회장과 서기와 의논해야 한다.

*설명: 이 규칙들은 불만/고소에 관한 중요한 철학적 원칙을 인정한다. 불만/고소가 접수되면 제기된 불만/고소는 불만/고소를 제기한 개인이 아닌, 해당 교단 (이 경우에는 노회 또는 그 부속 기관)이 관할한다. 만약 징계 위원회가 조사에 의해 불만/고소가 근거없다고 발견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징계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노회의 회원이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발자가 아닌 노회가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적절한 징계가 부과되도록 조치해야한다. 이 규칙들은 고발자가 아닌 징계 위원회와 치리위원회가 불만/고소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할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고발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발/고소를 적절한 권위 당국에게 전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3.402** 목사(피고인)에 대한 어떤 고발도 고발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가 있을 때만 징계위원회는 행동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발 내용에 기초한 행위에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고발 행위에 관한 믿을만하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발내용이 문서화 되든지, 아니든지 징계위원회 또는 노회의 다른 회원들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상담을 할 수 있다.

**3.403** 목회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장되는 잘못이나 범칙 행위는 2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성 범죄 또는 성추행의 경우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어린이 성학대 또는 성추행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3.404** 징계위원회가 노회 관할 하의 개인의 그리스도 소양에 영향을 미치는 고발 내용을 접수 받았을 경우,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피고 목회자와 상담한다. 만약 고발 내용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청문회와 항소가 끝날때까지 언제든지 목회자의 목사 직위를 보류하거나 권한에 대한



제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조치되는 행위는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수단임을 명시한다.

**3.405**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조사 후에 고발 내용이 증거가 없다고 밝혀지면, 고발 내용을 종료하고, 고발자, 피고인, 치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반 사항을 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했고, 피고인이 잘못 또는 범칙 행위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증거를 보인다면, 징계 위원회는 치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추천한다. 피고인의 동의와 함께 치리 위원회는 공식적인 징계 청문회 없이 징계 행위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기록해야 하고 목회 위원회 고발자에게 부과된 징계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3.406** 만약 징계위원회가 조사에 의해서 범칙 행위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믿음만한 근거를 찾았지만, 피고인이 잘못 또는 범칙을 인정하지 않고, 추천된 징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징계 위원회는 위원회 세 명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서 공식 청문회에서 치리 위원회에게 고발내용을 제출한다. 징계위원회는 즉시 치리위원회 의장에게 문서로 된 보고서를 제공한다. 보고서에는 위원회 대표들의 이름들, 위원회가 조사 후에 얻은 정보,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추천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407** 치리위원회는 유죄를 결정짓거나 징계를 부과하는 또는 둘 다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가.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청문회는 징계위원회가 보고서를 만들고 난 후를 기점으로 14 일 후, 30 일 이전에 열어야 한다. 치리위원회의 의장은 피고인, 고소인, 치리위원회 회원들, 징계위원회의 대표들, 피고인과 징계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증인들에게 청문회에 대한 공고를 문서로 통보한다. 공고에는 징계위원회가 주장하는 고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청문회의 목적이 피고인 위반 행위의 유죄를 추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나. 서면 공고는 직접 배달되어야 하고 또는 통지 받아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전달된 서면 공고는 실제 배달이 되었을때 유효하다.

다. 치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고소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것이 자동적으로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3.408** 청문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가. 청문회는 공고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 치리위원회는 모든 증인들이 청문회에 한번에 다 참석할지 아니면 한번에 한 명씩 증인으로 나올지에 관해 결정한다.

나. 사법 위원회는 청문회의 모든 내용을 오디오 녹음,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또는 서면으로 기록한다.

다. 청문회는 치리위원회의 의장이 진행한다. 의장이 부재시, 부의장 또는 치리위원회 다른 회원이 진행한다. 의장은 참석자 모두에게 1.1 섹션에 명기된 교회 징계목적에 상기시킨다.

라. 징계위원회가 제출한 고발 진술서를 검토한다.

마. 증인 목록을 검토합니다. 증인의 목록을 검토한다. 모든 증인은 증거를 제공한 능력이 있는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치리위원회는 증인이 증거를 제공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 증거가 고발내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바. 피고인은 고발 내용에 대해 성명을 낼 수 있다.

사. 피고인을 고발하는 증인과 증거들을 먼저 보여지고 나서, 피고인을 옹호하는 다른 증인, 증거가 발표된다. 증인은 억울하고, 복수의 마음이 아닌, 징계목적에 일치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아. 의장은 피고인, 고발인, 또는 징계 위원회 대표들 또는 치리위원회의 회원들에게 각 증인들과 증거들을 심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의장은 질문이 경솔하고, 관련이 없고, 부적절하면 심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의 결정에 대해 치리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자. 피고인 또는 징계위원회의 대표들은 발표 또는 투표에 대한 당회 회원의 권리를 고발내용에 대한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포함한 개인적 선입관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문제 제기는 치리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차. 마지막 성명은 징계위원회의 대표들 그리고/또는 고소인, 피고인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말할 권리를 가진다.

카. 치리위원회의 회원만이 사건의 심의에 참석하여 참여한다. 모든 증거들은 논의되고 평가된다.

타. 치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이다. “제시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고발내용에 대한 유죄 인가요? 또는 무죄인가요? 피고인은 참석한 치리위원회 회원들의 과반수가 유죄라고 투표하지 않는 한 무죄로 결정된다.

#### 3.409 피고인이 무죄로 판명된 경우 :

가. 의장은 피고인과 고소인, 징계위원회의 대표들에게 투표결과를 발표한다. 의장은 징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화해의 친교로서의 교회의 본질, 참회와 용서의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대해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나. 치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노회에 보고한다.: “치리위원회는 [피고인성명]에 부과된 고발을 숙고하였다. 조사와 청문회를 거치고, 위원회는 [피고인]이 무죄임을 판결한다.”

#### 3.410 피고인이 유죄로 판명된 경우 :

가. 치리위원회는 피고인의 고발내용에 맞는 징계를 결정한다. 참작할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 또는 범칙 행위가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위태롭게 됐을때, 피고인은 그 직에서 보류되거나 파면될 수 있다.

나. 징계의 내용이 결정되면, 의장은 결정과 징계내용을 피고인과 고소인, 징계위원회에게 알린다. 결정된 징계는 치리위원회가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한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다. 의장은 징계를 받는 목회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기도와 자기 반성으로 응답하고 실수나 위반 사항을 고치도록 노력하도록 촉구한다.

라. 의장은 징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징계 사건의 중요성, 화해의 친교로써의 교회의 본질, 참회와 용서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대해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마. 치리위원회는 위원회와 노회 회원들, 피고인, 고소인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노회에 보고한다. 이 회의에서 피고인, 고소인은 노회에 발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고서는 피고인의 이름, 유죄로 판명된 고발 내용, 부과된 징계 내역을 포함한다. 희생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노회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유죄 또는/그리고 부과된 징계를 검토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를 결의하지 않는 한 치리위원회의 행위는 확정된다. 만약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항소에 적용되는 법칙 하에서 치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한다.

*설명: 사법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노회가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노회는 치리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한 (섹션 8.35b의 회의규칙을 참고) 폐지 동의안과 같이 취급한다. 대부분 노회들은 여러가지 이유(시간문제, 희생자의 사생활 보호, 명예 훼손 또는 다른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노회 회의 특히 규모가 큰 회의가 청문회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노회에서 징계 문제를 다루는 것을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소는 노회의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상위 치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3.411** 징계 청문회가 있는 후에,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 중인 목회자는 치리위원회에 추가 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결정하면 전에 제시되지 않은 증거만 새로운 청문회에서 제시할 수 있다.

**3.412** 어떤 사역자도 직책 때문에 조사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직책이 주는 명성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피하거나 또는 징계 수준이 낮아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

**3.413** 사역자가 습관적으로 노회에서 승인한 어떤 형태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노회는 그러한 실패의 이유를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14** 사역자의 지위가 일시 중지되거나 파면이 될 때, 노회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목회적 돌봄으로 교회와의 관계가 유지 되도록 상의해야 한다.

**3.415** 목회 중지 또는 파면된 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복직될 수 있다. 목회자를 복귀시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될 때, 치리 위원회는 복직을 고려할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목회자는 만약 치리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충분하고 믿을 만한 증인 또는 다른 증거들을 찾을 경우 복귀될 수 있다. (i)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기간동안 잘못이나 범칙 행위에 대해 참회한 경우; (ii) 당사자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단계를 밟은 경우(iii) 당사자가 잘못이나 범칙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판결하는 경우 (iv) 당사자가 교회 사역에 알맞은 경우. 파면된 목회자가 복직할 때는 안수를 다시 받고 보직에 복귀한다.

**3.416** 목회자의 보직이 중지되었을 때, 그 중지된 기간동안 어느 교회에서 그 직의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당사자가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 교회는 중지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다. 중지의 보고를 받은 교회가 중지 기간동안 목회자에서 보직의 임무를 허락한다면 교회 또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417** 목회자의 보직이 중지되면, 노회는 신중을 기해서 그 목회자의 재량권에 있는 교회와의 목회적 사역을 중지시킬수 있다.

**3.418** 목회자가 파면이 되면, 그는 어떤 교회에서도 보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가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 보고될 것이며, 노회는 그 교회와의 목회적 관계를 중지시킨다. 파면을 알고 있는 교회가 그 목회자로 하여금 보직을 수행하게 허용한다면 교회 또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419** 목회자가 중지 또는 파면되었을 때, 서기는 그가 심각한 잘못 또는 범칙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명이 되어 파면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를 각 노회의 서기에 보낸다. 목회자가 복직이 되면, 서기는 그가 복직되었음을 알리는 공고를 또한 모든 다른 노회의 서기에 보낸다.

**3.500** 회원 징계에 관한 항소

**3.501**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는 다음 상부 치리회로 사건을 옮긴다. 하부 치리회의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는 적용되는 기관 즉 당회, 노회의 치리 위원회, 대회는 치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3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치리회의 조치에 대해 시간 안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하부 치리회의 조치가 확정된다.

*설명: 징계조치가 노회 또는 대회에 보고되기 훨씬 전에 항소를 올릴 수 있다. 만약에 노회 또는 대회가 징계 조치를 다시 숙고하도록 투표했을 경우, 하부 치리회가 마지막 결정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항소는 기각된다. 상부 치리회가 항소를 받아들이면, 하부 치리회가 결정을 다시 숙고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이다.*

**3.502** 하부 치리회 조치가 항소되고, 결정을 다시 숙고하도록 투표를 하면 항소는 기각이 되고, 사건은 하부 치리회로 돌려보내진다. 하부 치리회의 숙고를 끝내고, 사건의 마지막 조치를 취하면, 그 조치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503** 항소 제기에 적절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부 치리회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데 실패한 경우. 하부 치리회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 잘못이나 불공정한 경우. 하부 치리회가 헌법 또는 교회의 다른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이다.

**3.504**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의 항소는 고소인 또는 잘못이 인정된 범칙 행위에 유죄로 판명된 피고인에 의해 할 수 있다. 노회의 치리 위원회의 징계 사항은 노회의 징계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3.505** 항소는 직속 상위 치리회의 서기에게 항소에 대한 공고를 보냄으로 시작된다. 항소의 공고는 항소하는 사람, 항소를 결정한 기관, 항소의 근거, 징계 결과 중에 항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506** 서기는 항소의 사본을 치리회의 상설 치리위원회 의장에게 즉시 전달한다. 공인 서기와 치리위원회 의장은 항소가 항소로써의 적절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소를 진행한다. 만약 항소가 기각이 되면, 공인 서기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항소가 기각된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써야 한다. 만약 항소가 진행하도록 승인이 되면, 치리 위원회의 의장은 항소와 관련된 기관, 즉, 당회 또는 치리 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 기록을 입수한다.

**3.507**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a. 당회의 조치에 대한 항소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 b. 다른 항소의 경우 피고인, 고소인과 노회의 징계 위임회.
- c.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항소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응답자로 간주된다.

**3.508** 항소는 상위 치리회의 치리위원회가 다루며, 항소를 접수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항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 가. 항소 청문회의 공고는 피고인, 고소인, 노회의 징계 위임회, 항소를 심의하는 치리위원회의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공고는 항소 청문회의 다음의 내용과 함께 날짜, 시간,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명, 청문회의 주제가 되는 고발 성명; 사건을 심의한 각 하부 치리회의 결정, 항소하는 자의 성명, 항소의 근거; 징계 결과 중 항소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서면 공고는 직접 전달되거나 통지 받아야 하는 사람의 알려진 마지막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전달된 서면 공고는 실제 전달이 되었을 때만 유효하다.
- 다. 치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자동으로 청문회가 연기되지 않는다.

**3.509**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 항소청문회.

- 가. 치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청문회 중 또는 청문회 직전에 하거나, 아래 방법으로 청문회의 기록을 검토한다.
- 나. 치리 위원회는 먼저 하부 치리회의 조치 중에서 결함이나 잘못된 이유가 있는지를 항소인에게 듣는다. 그리고 나서 치리 위원회는 응답자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항소인이 마지막 성명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 다. 항소 청문회는 치리 위원회가 추가 증거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항소청문회는 추가 정보나 증거가 확보되는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다.
- 라. 치리위원회의 회원만이 항소 심사에 참석하여 참여할 수 있다.

**3.510** 치리위원회는 항소인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보여주지 않는 한 항소를 기각한다.

가. 하위 치리회가 적절한 단계를 따르지 않음; 결정을 내리는 데 잘못 또는 불공정한 경우, 또는 교회의 헌법 또는 다른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나. 하위 치리회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가 이 사건의 최종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3.511** 만약 치리위원회가 항소를 기각한 경우, 하위치리회의 결정이 유지된다. 상부 치리회가 있다면 항소인은 상부 치리회에 항소할 자격이 있다.

**3.512** 만약 치리위원회가 항소를 받아들인다면, 항소를 한 결정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뒤집을 수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록을 수정하도록 사건을 하부 치리회에 다시 보내거나 또는 하부 치리회로 하여금 항소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513** 치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서 치리회에 직접 보고한다. 항소의 성립, 항소 당사자 (희생자의 이름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항소의 근거, 치리회가 3분의 2의 투표로 항소를 검토할 새로운 위원회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항소의 처분과 항소에 대한 치리위원회의 조치는 최종 결정이 된다. 만약 새로운 위원회가 임명되면, 항소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하부치리회의 결정을 검토한다.

설명: 치리위원회의 조치는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므로, 조치에 대한 보고는 치리회에 직접 해야 하면 치리 위원회에 전달해서는 안된다.

#### **4.100** 일반 검토와 통제

**4.101** 당회 위의 모든 치리회는 하부 치리회의 조사과정을 (미리 기술된 명시된 간격만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어느 치리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상부 치리회에 기록을 보내지 못했다면, 지정한 날짜에 즉시 기록을 보내도록 명령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102** 하위 치리회의 기록을 검토하는데 있어 다음 상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 가. 정확히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 나. 절차가 현명하고 공평하고, 교회의 교화를 위한 것이었는지
- 다. 절차가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 라. 상부 치리회의 지시를 따랐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4.103** 일반적으로 상위 치리회는 승인된 것, 확인된 어떤 잘못 또는 부정에 관하여 적절히 취해진 조치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검토 중인 기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록해야 한다.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상위 치리회는 잘못 또는 부정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기술했으므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치리회 서기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 기록을 검토할 때, 정상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한, 하위치리회의 조치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4.104** 치리회가 의무를 태만해서, 거짓 교리 또는 부도덕이 발생하거나 범죄자가 징계를 받지 않거나 기타 큰 부정을 일으켰거나 또한 그 내용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위 치리회가 알게 되었을 때, 기록되었던 것처럼, 조사하고,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검토와 통제로 문제 전체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4.105** 치리회가 구성 치리회의 기록, 결의, 다른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소송과정에서 심각한 태만, 잘못 또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권고될 때, 하위치리회에게 문제의 사항을 조치했을 때 행했거나 하지 못한 일을 소명하도록 대표를 보내거나 또는 서문을 보내야 한다.

#### **4.200 항소**

**4.201** 다음 규칙은 치리회가 구성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모든 비징계조치에 대한 항소에 적용된다. 상소는 하위치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을 상위치리회로 옮겨 간다.

**4.202** 항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위 치리회가 적절한 단계를 따르지 않았을 때, 결정을 내리는 데 잘못 또는 불공정했을 때, 또는 교회의 헌법 또는 다른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이다.

**4.203** 항소는 상위 치리회의 서기에게 항소를 서문으로 보냄으로 시작이 된다. 항소 공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야 한다. 항소하는 사람 또는 치리회, 항소를 하는 조치, 항소하는 조치를 내린 치리회, 항소의 근거, 조치에서 항소하는 부분. 개인이

제기하는 항소 공고는 조치가 내려진 후 10 일 안에 해야 한다. 치리회가 제기하는 항소는 항소하는 조치를 내린 날짜에서 60 일 안에 해야 한다.

**4.203** 구성 치리회에 대한 치리회의 징계조치에 대한 항소는 상위치리회의 어떤 회원라도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징계조치가 내려졌을 때 참석한자의 3 분의 2 가 찬성하고 서명했을 때, 또는 징계를 담당하는 치리회의 조치로 승인되었을 때, 항소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징계조치는 중지된다.

**4.204** 만약 참석자의 1/3 이 서명하고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투표를 하거나, 징계와 관련된 치리회의 조치에 의해 승인이 된다면, 치리회의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는 치리회 중 상위 기관의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항소는 항소가 최종 결정될 때 까지 징계 조치를 중지 시킨다.

**4.205** 치리회의 다른 모든 비징계조치에 대한 항소는 컴벌랜드교회/미국 컴벌랜드교회의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가 최종 결정될때까지 조치가 중지되지 않는다. 조치가 취해졌을 때 참석한 치리회의 회원이 3 분의 2 가 항소에 서명 했을 경우에만 조치가 중지된다.

가. 목사의안수:

나. 개교회를 합병, 분할, 해산하려는 노회의 조치

다. 노회들을 합병, 분할, 해산하려는 대회의 조치

**4.206** 항소 할 수 있는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항소를 제기한 사람(들) 또는 치리회가 항소인이 된다.

나. 잘못 또는 범칙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치리회가 응답자가 된다.

**4.207** 만약 항소가 적절하고 시간을 맞게 제기되었다면 항소청문회는 항소를 받고 최대한 빨리 열린다. 항소 청문회는 상위치리회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임명된 위원회에 의해서 진행된다.

가. 항소 청문회의 서면공고는 항소인, 만약 항소인이 치리회인 경우에는 그 치리회의 공인 서기, 응답자의 공인 서기, 항소를 주재하는 치리회 또는 위임회의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 나. 서면 공고는 직접 전달되거나 통지 받아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전달된 서면 공고는 실제로 전달이 되었을 때만 유효하다.
- 다. 치리회 또는 위원회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청문회가 자동으로 연기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4.208** 항소 청문회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 가. 항소청문회를 주재하는 치리회 또는 위원회는 항소가 적절하고 시간을 잘 지켜서 제기됐는지 검토한다.
- 나. 항소를 제기한 조치의 기록을 검토한다.
- 다. 항소 (또는 항소하는 자가 한명이상이거나 치리회일 경우에는 항소인 대표) 하위치리회의 잘못 또는 범칙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불러진다. 응답자는 하위 치리회의 행동을 변호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나서, 항소인은 간단하게 마지막 발표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
- 라. 청문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항소 청문회는 추가 정보 또는 증거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될 수 있다.
- 마. 항소를 듣는 치리회 또는 위임회의 회원들만이 항소 심사에 참석하여 참여할 수 있다.

**4.209** 항소는 항소인이 하위 치리회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잘못되었거나 또는 불공정할 때, 헌법 또는 교회의 다른 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기각된다.

**4.210** 만약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하위 치리회의 결정 내용이 유지된다. 항소인은 상위 치리회가 있다면 상위 치리회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즉시 갖는다.

**4.211** 만약 항소를 주관하는 치리회 또는 위임회가 항소를 받아들이는 경우, 항소한 내용을 전체 또는 부분을 뒤집을 수 있거나 부정확하고, 결함이 있는 기록을 고치기 위해 하위 치리회에게 사건을 재송구 하거나 하위 치리회로 하여금 이의가 제기된 행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하위 치리회의 행위가 시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하위 치리회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다.

**4.300** 반대와 항의

**4.301** 반대는 치리회의 한명 이상의 소수가 이유없이 특정한 문제에 관해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선언이다. 만약 감정적인 언어로 발표가 되면, 반대자의 이름과 함께 반대의 의견은 치리회의 기록에 적힌다.

**4.302** 항의는 치리회의 한명 이상의 소수가 어떤 이유로 특정한 문제에 관해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만약 감정적인 언어로 발표가 되면, 항의의 이유와 항의자의 이름과 함께 치리회의 기록에 적힌다.

**4.303** 항의가 치리회 회원에 의해 제소되면, 치리회는 항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4.304** 상위 치리회는 검토중인 기록에 나타난 모든 항의들을 인지해야 한다. 상부치리회는 항의에 관해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조치를 취해도 된다.

## 예배 지침서

### 서문

예배는 기독교 교회 사명의 근본이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이며, 그 중심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창조하심 모두 다 예배의 목적과 주제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하면서도 순전히 복음을 재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구속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예배한다. 기독교 예배의 주된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다.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경배의 완전한 표현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며, 모든 기독교인의 예배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의해 형성되고, 반영하는 것을 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의 존재와 영혼만으로 모든 기독교 예배를 유효하게 한다.

우리 인간은 필요에 의해 예배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창조자를 경배하고 만남을 통해서 완전함과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 예배의 시작부터, 공동 예배를 위해 따로 하루를 지정해 왔으며, 그 날이 주일이다. 주일은 주간의 첫 번째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 예배를 위해 적당한 날이다. 주간의 첫 날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예배로 지정한 날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즉, 매주 일요일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 예배가 된다. 매주 공동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진다.

주일은 또한 창조의 첫날을 기념한다. 주간의 첫 날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마찬가지로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날은 모든 선한 것의 기본이 된다고 여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선하다고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고, 선함을 다시 회복했다고 선포하셨다. 주일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선하다고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결단력있는 조치로 모든 것을 새롭게 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하루를 주일로 지정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은 모든 날들과 모든 창조에 대해 무엇이 참된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다.

### 1.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예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개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속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믿음 공동체의 일부로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개인 예배는 공동체의 믿음과 경배로부터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인 예배가 적절한 본질과 형태를 갖추기에 공동예배가 필요한 것처럼, 개인 또는 사적인 예배는 공동예배가 깊은 의미와 완전한 성실함을 찾기에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의 공동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해 방향과 초점과 모양을 제시해 준다. 가정 예배는 공동 예배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그들의 예배가 공동 예배의 구성원 자격으로 드러지는 예배라는 것을 인지한다. 실제로 가정 예배를 강력하게 권장하면 좋다. 성경과 기도와 찬양과 개인 간증 모두가 가정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 가. 공동 예배의 순서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 순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예배가 단순히 공동체가 책임있는 행동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동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행동, 성육신, 십자가, 부활 및 승천과 같은 특정한 형식을 선택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기독교 운동의 역사를 통해 예배 순서와 형식은 공동 예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공동 예배의 기본 형식과 형태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서 기독교인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기본 형식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찬양과 기도, 하나님 말씀 선포, 성찬식 기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이 중심 부분은 예배에 특정 순서와 표현 형태의 뼈대가 되며, 예배의 전체 목표와 각 부분과 연계한 다양한 부분과 행동을 포함한 특정 종교 예식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예배에 완벽하거나 옳은 방법은 하나도 없다. 대신 예배의 형식은 예배 공동체의 특정한 요구를 바탕으로 교회 예배의 목적과 의도와 그 공동체가 속한 종교 단체의 예배 전통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공동예배는 언제나 사람들의 봉사로 이루어진다. 예배자들은 단지 몇 사람들만의 행동을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라,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과의 상호 만남에 참여하는 참가자이다. 예배의 인도자들은 자신도 또한 예배자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참여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임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예배의 순서는 공동예배가 즉흥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대신 즉흥성을 기대하면서 적절하게 예배를 기획하는 것이 좋다. 예배자들에게 의미를 주는 다양한 반응을 예배에 포함할 수 있으며 찬양과 신앙 고백을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컴벌랜드 장로교회/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는 공식적인 예배 순서를 정한 적이 없다.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 예배의식을 기획하는 책임은 치리회에 있다. 지역 회중 일 경우, 공동 예배 형식의 기획은 목사의 지도하에 당회에 책임이 있다. 다른 치리회의 회원들은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한 기독교인 공동체들의 공동 예배 순서를 정하는 책임이 있다.

설교하는 목회자는 공동 예배의 순서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 예배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 예배를 디자인하고 인도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지도와 조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 나. 공동예배의 보통(일반) 행위

공동예배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독인들이 역사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행위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1.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들어간다.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약속하셨는지를 찬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찬양한다.
2. 죄의 고백.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구원 공동체의 일부로 예배하는 동안에도, 죄는 여전히 우리 삶의 일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음을 인정하고, 공동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
3. 선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에 중점을 둔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심판, 화해, 용서, 자비와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듣는다.
4. 믿음의 확신. 신앙 공동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일반적인 행위이다. 믿음은 예배자의 삶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인 희망과 기대를 표현한다.
5. 봉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예배는 봉헌의 행위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새로이 드리내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예배 참석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변화하도록 자신을 내어 드린다. 그리고, 예배 참석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고,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6. 헌신과 상급. 공동 예배는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는다. 공동 예배에서 예배자들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진행되고 있는 구원 사업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예배에서 예배자들은 속죄와 신앙으로 응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 중에 헌신과 위임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맞다.



7. 성례식.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림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의적 행위의 표시이다.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성례식은 그리스도 예배에 특별한 형태를 구성하고 은혜의 언약의 중요한 표시이다.

공동 예배에는 위에서 언급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만, 예배를 적합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 모든 행위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당한 시간 동안 위에서 언급된 모든 행위들이 표현되어야 하며, 예배 순서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공동 예배에 언급된 모든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공동예배의 기초 자료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참고 자료는 예배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이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다. 모든 공동 예배에서 적어도 한 구절 이상의 성경이 읽어져야 한다.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예배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 봉독은 예배 중 적당한 시간에 전체에게 읽혀지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예배 중에 성경봉독과 더불어 성경은 예배의 시작 또는 예배로의 초대, 성찬식으로의 초대, 용서의 확신, 축도, 기도, 선포의 기본이 되는 참고 자료이다. 따라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다.

2. 기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기도로 동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필수 요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조물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1)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권능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 (2)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3)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에 초대하기 위함이다.

공동예배에서 드러지는 모든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주님의 기도를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을 장려하고 이 기도의 본질과 특징이 모든 기도의 지침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역사를 공동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교회의 역사를 통해 물려 받은 기도가 있다. 예배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기도들. 우리를 둘러싸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며, 모든 성도, 살아 있거나 죽은 자들이 공동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기도 전통에 기초하여 공동예배에서 새로운 기도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새로운 기도가 만들기 위해 아니면 오래된 기도가 새롭게 낭독되어지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 기도 전통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가 적혀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준비가 되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가 드러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중점중에서 기도는 다음 부분이 포함된다. 하나님 경배와 찬양, 죄의 고백, 감사의 제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고, 간구와 항복, 자신과 예물을 봉헌이 포함된다.

3. 음악. 크리스찬 공동체의 오래된 기록을 보면 음악은 예배자들에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찬양과 기도로 노래하는 것은 관습적이고 의미 깊은 행위이다. 음악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좀 더 완벽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꼭 필요하다.

음악은 음악의 성질이 그리스도 예배과 특정 예배자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선정되어야 한다.

4. **찬송가와 복음 성가.**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신앙을 노래했다. 찬송가, 복음성가들은 그 내용과 중심이 다양하고 찬송, 죄의 고백, 선포, 헌신, 신앙의 확신과 같은 예배의 많은 다른 행위의 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설교.** 공동예배에서 설교는 말씀 선포의 중심이다. 설교의 목적은 예배 참석자들에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교는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에 의해 형태를 갖춘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의 모든 면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성경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를 바탕으로 성경구절은 순서있게 성경에서 선택하기를 권장한다. 설교는 알려진 대화 기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6. **신경.** 신경은 믿음공동체가 무엇을 믿는지를 표현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성경은 다양한 예배 모임의 믿음을 요약하는 많은 강령을 기록한다. 신명기 6 장 4 절, 5 절, 신명기 26 장 5 절-9 절, 고린도 전서 15 장 3 절-7 절, 빌립보서 2 장 6 절-11 절은 공동예배에 쓰일수 있는 신경이다.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고대 신경과 니센 신경(Nicene Creed) 은 아직도 예배에 사용된다. 그리고, 그외의 신경들이 예배에서 개인과 공동의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증거들과 일치하는 한 예배를 위해 새로운 신경을 작성하는 것도 적절하다.

#### 라. 공동예배의 추천 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공동예배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예배를 알리는 예배를 성립하는 전통적인 형태가 있다.

##### 1. 성찬을 포함한 공동예배

서문

공동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시작된다. 서곡으로 선정한 음악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배자들은 서곡이 분위기를 만들거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예배의 서곡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배 시작을 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서곡이 시작되기 전에 종을 치거나 예배 인도자가 서곡이 나오기 전에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를 보는 목사는 간단하게 '하나님께 예배 합시다.' 라고 말하고 서곡을 시작한다.

#### 예배 시작을 알리는 말

예배의 시작은 전통적으로 항상 하나님 존재와 그 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성경구절로 시작한다. 장로교 예배의 전통적인 모델은 시편 124 장 8 절이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124:8).

성경의 많은 다른 구절들이 예배 시작을 알리거나, 회중이 응답할 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구절을 사용하든 예배 참석자들에게 왜 모이는데 대한 모임의 의미에 강조해야 한다. 성경 이외의 다른 자료를 쓸 때는 내용과 의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한다.

#### 찬송가

그리스도 예배의 주된 목적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한 사람들의 기쁨의 찬양이다. 따라서 시작을 알리는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찬송가는 가사와 음율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해야 한다.

#### 경배의 기도

일반적으로 경배 찬양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찬양과 경배를 주제로 계속되어야 한다. 경배의 하나로 기도가 드러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배 중 드러지는 다른 기도들은 다른 적절한 기도 제목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 죄의 고백과 용서 선포, 확인의 말씀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예배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죄 고백과 용서의 확신은 경배의 행위 다음이나 성찬을 하기 전에 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예배자들이 죄를 고백한 것이 적절하다. 죄 고백 기도는 모두 같이 하는 것이 의미가 가장 깊다. 만약 한 사람이 대표기도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 예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계획하고 사려 깊은 기도를 해야 한다.

죄의 고백을 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용서의 선포나 강한 확신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서도 성경은 이런 확신을 선포하는 행위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자료가 된다. 예로 요한일서 1 장 9 절이 자주 이용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찬양에 대한 답변

찬양의 응답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찬양 응답은 몇 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시편과 찬송가(시편 외의 성경에 있는 찬송가)가 많이 이용되어 왔다. 시편 구절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Glory Be to the Father)과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찬양 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것은 예배 순서에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설교와 성경봉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 여기서 말씀 선포가 중심이 되며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 읽기는 말씀 선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을 누가 읽든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읽혀질 성경 구절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주제들이 예배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려깊게 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강조를 뒤야 한다.

공동 예배를 위한 성구집(lectionary) 사용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성구집은 성경의 다양한 주제를 읽혀지고, 선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구집은 기독교 달력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각 주일에 특정하게 읽어야 할 내용들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예배를 구상하는 사람들이 성구집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관례적으로 성경봉독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계시를 위한 기도가 있기 전에 한다.

성경 봉독 시간은 찬송가, 시편, 또는 노래로 나누어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설교는 마지막 성경 봉독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 보통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성경구절을 바탕으로 설교한다. 설교는 예배의 완전/진실을 위반하지 않고, 성경의 증거를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기도 혹은 찬양의 말로 설교를 끝낸다.

#### *신앙의 확신 또는 신경*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운동의 초창기부터 공동 예배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 역사적으로 사도 신경 또는 신앙의 개인적 신앙 확인 암송은 예배자들이 성만찬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의 예배에서 성찬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도 신경과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대담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또한 예배자의 믿음 또는 신앙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알맞다.

#### *회중의 기도들*

사람들의 신앙 확신 후에 사람들의 기도가 뒤따르는게 적절하다. 이 기도는 목사나 평신도가 올릴 수 있으며, 기도 후에 참석한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

회중 기도는 감사, 애원, 중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주님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감사 기도는 참석한 모든 이에게 공통된 감사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교회에 대한 감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간구는 예배자들의 개인 또는 공동 필요에 집중한다. 도고는 예배에 참석한 자들의 필요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필요, 특히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들의 필요를 포함한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이해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이 기도 할 수 있게 한다.

#### 헌금 또는 예물 봉헌

역사적으로 봉헌은 공동 예배에서 성찬때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건네 줬을때 한다. 다음 순서에 쓰일 성찬의 요소 (빵, 포도주) 가 이미 테이블로 마련되어도, 성찬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게 적절하다. 예배에서 성찬식을 할 때 헌금과 다른 예물을 앞으로 가져온다. 헌금은 예배의 한 행위로 여겨지며,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 사업에 개인적인 헌신과 공동체로 우리를 위탁하는 것을 상징한다. 공동 예배의 특정 예식의 한 부분으로 헌금이 봉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들의 예물이 봉헌되고 난 후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으며, 봉헌기도로 순서를 마칠 수 있다.

#### 성찬 기념

성찬의 기념 예식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다. 이 종교 행위는 말씀의 가시적 상징과 성찬 기념과 선포를 합친 것이다. 설교와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함께 증거하는 것이다. 공동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성례전을 포함되는 것은 항상 적절하다.

성례전을 기념하는데 있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공동 예배의 필요한 부분에 맞는 행위를 참고해야 한다. 이 행위들은 다른 이름으로 지칭될 수도 있고, 다른 타이틀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이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 가. 성찬 식탁으로의 초대. 성찬 기념 예식에 회중을 이끄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찬 예식 자리에 초대한다.
- 나. 성찬을 위한 말씀. 성찬 기념을 알리는 성경 봉독은 성찬 식탁을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읽어야 한다. 적당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 장 23-26 절, 마태복음 26 장 26-30 절까지, 마가복음 14 장 19-26 절까지, 누가복음

22 장 19,20 절이다. 다른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 하신 후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신 내용이라면 성찬식에서 사용될 수 있다.

- 다. **감사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대부분 표현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성찬 빵과 포도주에 성령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표현되어야 한다.
- 라. **빵을 나누고 포도주 붓기.** 예배 예식 중에서 이 단계의 행위가 가장 의미가 깊다.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다치고, 피 흘리심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위는 사려깊게 행해져야 하면 참성한 모든 이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양의 빵 한 덩어리와 성배와 포도주가 담긴 커다란 병이 필요하다. 포도주를 붓고 나서 성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높이 들려져야 한다. 만약에 포도주 붓는 과정이 생략 될지라도 성배는 높이 들려져야 한다.
- 마. **성찬식 참여.** 성찬을 나누는 방법들은 교회의 형편과 생활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 회중들은 전통적으로 좌석에 앉아있는 예배자들을 섬기는 방법을 택해 왔다. 이 방법을 통해 목사가 성찬식에 먼저 참여하고, 장로들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회중에게 성찬을 배분다. 또 다른 방법은 목사와 장로들이 회중에게 먼저 성찬을 베풀고 나서 서로 성찬을 나눈다. 또 다른 방법은 회중의 회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사역자와 장로가 성찬을 베푸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해서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 성찬식을 베풀 수 있다. 사용되어지는 각 방법에서, 예배자들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빵 한덩어리, 한 컵(전통적으로 '공용컵'으로 불려짐)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회중들은 목사와 장로들만 이 공용컵을 사용한다.
- 바. **성찬식 기도 후.** 성찬식을 끝내고 찬양, 헌신, 중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 후에는 교회 성가나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적절하다.
- 사. **해산/책임/축도.** 공동 예배는 예배의 종료를 알리는 해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감을 촉구하는 전진, 또는 사람들에게 축도, 또는 이 세가지들



병합함으로써 끝낸다. 지도자들은 이 행위에 맞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 좋다.

#### 후주곡

전주곡과 마찬가지로 후주곡 또한 공동 예배를 염두하고 곡을 골라야 한다. 만약 예배의 한 부분으로 후주곡을 사용할 경우, 모든 참석자들이 곡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경청하면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후주곡은 짧은 곡을 고른다. 만약 후주곡이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닐 경우 예배 순서에서 삭제되고 예배는 해산 또는 축도로 마친다.

#### 광 고

공동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광고를 어떻게 공동예배와 연관 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교회들은 주보에 필요한 광고를 써서, 예배 중에 광고를 발표하지 않고, 예배자들이 주보에 쓰여진 광고 내용을 읽게 하기를 원한다. 다른 교회들은 공동 예배 시작 전에 광고를 하기도 한다. 다른 방법은 공동 예배 후에 광고 시간을 가진다.

만약 예배의 한 부분으로 광고 시간을 가지지 않는 교회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의 기도 바로 전에 하거나 광고에 나오는 고민들을 기도 제목 안에 같이 넣는 방법이 있다. 공동 예배의 한 부분으로 광고를 할 때는 교회의 진행되는 미션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예배 공동체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관련이 있는 광고 내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 2. 성찬이 없는 공동예배의 순서

전주  
 시작의 말  
 찬송가  
 죄의 고백  
 죄사함의 선포  
 시편 봉독  
 주의 영광 송 (Gloria Patri)  
 계시를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찬양  
 사도신경  
 헌금  
 헌금송(성가대)  
 헌신 기도  
 찬양  
 축도

## 3. 성찬 없는 공동 예배의 두번째 예

전주곡  
 시작의 말 또는 예배로의 초대  
 경배의 기도와 찬송  
 죄사함의 확신  
 교독문  
 주의 영광 송  
 봉헌으로의 초대  
 봉헌  
 찬가  
 헌신의 기도  
 계시를 위한 기도  
 성경봉독  
 대표기도

설교  
 축성의 찬양 (Hymn of Consecration).  
 축도  
 침묵 기도  
 후주곡

#### 4. 성찬식 없는 공동예배 세 번 째 예.

전주곡  
 시작의 말 또는 예배로의 초대  
 행진 찬송가 (Processional Hymn)  
 기도: 경배 (회중의 입석)  
 죄의 고백 (회중의 착석)  
 죄사함의 확신  
 시편  
 주의 영광송  
 성경봉독  
 성가대 찬양  
 설교  
 사도신경  
 헌금  
 대표 기도  
 주의 기도  
 퇴장성가  
 해산 그리고/또는 축도  
 후주곡

#### 마. 행사가 있을 때 예배의 순서

주일 이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 예배가 권장되며, 다른 회합이나 프로그램들에는 예배가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하고, 주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의 순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사용해도 좋다.

#### 순서 1

전주곡  
 성경 말씀  
 찬양  
 교육문  
 주의 영광송  
 성경 봉독  
 기도  
 찬양  
 축도  
 후주곡

### 순서 2

성경 구절  
 찬양 시  
 죄고백  
 죄용서  
 찬가  
 성경 봉독  
 특송  
 기도  
 찬양  
 묵도  
**결단과 파송**

### 순서 3

전주  
 예배로의 초대  
 찬양  
 성경 봉독  
 성경에 나오는 묵상, 성경에 대한 간단한 해석  
 기도  
 찬양

마침 기도

#### **순서 4**

찬양

성경 봉독

성경의 간단한 해석

묵도

주의 기도

파송 및 축도

#### **바. 공동 예배의 리더십**

##### *일반 지침*

공동 예배에서는 사려 깊고, 책임감 있으며, 상상력이 풍부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이 약하고, 부주의하고 영성하면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리더십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되게 하며, 종교적 드라마(liturgical drama)를 연출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에 순종적으로 답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서 언행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상황과 사람 또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 크게 의존한다. 리더십의 일반적인 규칙은 예배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지를 확실히 하도록 필요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고, 필요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배 지도자들의 추가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다.

- 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소개한다.
- 나. 리더로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예배 중에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 언행을 삼간다.
- 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직선적이고 단호하게 한다.
- 라. 모든 말과 리더십 행동들은 주의깊게 계획한다.
- 마. 모든 지시 사항들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

- 바. 무언의 소통 방법을 배운다.
- 사. 지시할 때는 전통적인 종교 언어를 사용한다.

안수 받은 목사가 공예배를 이끄는 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성직자에게만 예배자들의 리더십이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예배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성가대와 악기를 다루는 구성원들이 예배에서 음악 관련 부분을 이끌 수 있으며, 다른 교회 평신도들이 리더십의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 인도자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깊게 준비를 해야 한다.

#### *상징과 제의 (Symbols and Vestments)*

수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를 돕기 위한 상징과 제의를 사용해 왔다.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상징들을 선택하거나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상징을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상징의 의미와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배 인도자들이 입는 가운은 공예배를 풍부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가대나 다른 음악가들이 입는 가운, 목사 제의, 제의복, 후드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이해가 될 경우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적절히 상징할 수 있고, 지도자가 개인이 아닌 예배자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

#### **사. 성가대, 음악가와 공예배**

예배 중 불러지는 모든 찬양의 주된 성가대는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다. 종교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성가대원은 하나님께 자신의 특별한 은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항상 이해해야 한다. 안수 받은 사역자가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처럼 성가대가 교독문이나 성가를 부를 때는 성가대가 회중을 대표한다.

성가대 지도자들과 다른 음악가들은 공동예배를 계획하고 지휘하는데 가치가 있는 음악에 대한 지식에 정통해야 한다. 그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성직자와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 성직자들과 음악가들은 특별히 창조적으로 서로와 일해야 한다.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 아. 기독교 연례와 공동 예배

1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 형태를 갖출 때, 복음 전체와 모든 기독교 진리의 전체 영역이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순서를 정했다. 이 순서는 교회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부활이며,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권능을 받는 것이다. 다양한 시즌 (정해진 날과 주간)이 정해져 있으며 복음의 다양한 측면에 적절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예배자들은 가능한 많이 예배에 복음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기와 교회력을 따를 것을 권장 받는다.

## II.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전으로, 공예배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표시로 이해되어야 하며, 크리스찬의 정기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두 성례전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물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내어주신 실체이다. 예배의 모든 부분들처럼 이 성례전은 심오한 의미에서 공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베푸는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항상 향하고 있다. 특히 성례전은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재연하는 것이다.

성례전의 권능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육신이 되신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성례전의 권능과 의미는 선포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며, 육신이 되시고 선포된 말씀과 분리할 수 없으며, 연결되어 있다. 성례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이는 말씀이다. 말씀과 성례전은 함께 모든 기독교 예배의 근본이다.

### 가. 세례의 성례식과 공예배

세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며, 우리에게 확장된 그리스도 은혜의 표시이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며, 특히 은혜의 약속을 상속한 자이며, 그의 것임을 표시하신 것이다. 세례는 죄 사함,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우리 삶에 성령이 오심을, 죽음과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의미한다. 세례는 선포이자 확신이다. 세례는 사람이 구하기 전에 먼저 다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이다. 세례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자신을 참여자로 주장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장점으로 세례에서 선포되고 수여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다. 세례 받은 신앙인이거나 신앙인의 자식이든지 세례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세례는 전 교회의 예배 행위이다. 따라서 세례는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 치뤄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드러지는 예배 이외에서 세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다면, 회중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며, 회중의 성경봉독, 선포, 기도, 신앙의 확신이 예배 행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이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만 절대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 내에서의 자신의 멤버십을 재확인하려는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다.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케 해주시는 죄사함을 의존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례의 혜택이 돌아간다.

세례의 성격과 특징은 각 개인에게 오직 한번만 실행될 수 있다고 지시한다. 한번 새겨진 표시와 확인은 우리의 삶 전 생애 동안 유지되는 것이다.

세례는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성례전은 안수 받은 목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 나. 세례 축하

세례를 축하하기 전에 세례 받는 사람 또는 세례 받는 자녀를 둔 부모는 목사와 당회로부터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교육이 있은 후에 세례 예식을 행할 날짜를 정한다. 날짜는 회중의 정기 예배가 있는 날이어야 한다. 성례식은 공동 예배에서 신앙 확신의 맥락 중에 행해지고, 말씀의 설교 전 또는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에서 성례식을 하기로 예정된 시간이 되면 목회자는 세례를 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거나 세례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도록 부탁함으로써 세례식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도우는 다른 사람과 함께 목회자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는 세례반으로 간다. 이때 사람들은 세례와 관련된 주제의 찬송가를 불러도 좋다.

세례반에서 참가자들이 적절한 장소에 서 있게 되면 목회자는 성경에 있는 세례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는 성경구절을 읽거나 암송한다. 다른 성경구절도 많지만, 세례시 적절한



성경말씀은 이사야 40 장 11 절, 사도행전 2 장 39 절, 마태복음 28 장 18,19 절, 시편 103 장 17, 18 절 마가복음 10 장 15 절, 16 절이다.

이 후에 목회자는 세례의 의미, 은혜의 언약의 개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성령이 우리 삶에 부어주심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 다음으로, 세례받는 자의 부모 또는 세례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할 것이며,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께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의지를 선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받는다. 세례받는 아이들의 부모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양육하며 복음에 순종적인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도록 질문을 받는다.

다음 질문과 대답은 위에 언급된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1. 누가 당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2. 당신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3.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 두 질문은 세례를 받는 부모들에게만 한다.

4. 당신의 아이가 세례 받기를 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례는 나의 구원과 내 아이의 구원에 의미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5. 당신의 아이에게 개인의 삶에서 세례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 훈련에 대해 가르칠 건가요?

*네. 성령과 신앙 공동체에 많이 의지하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 후, 회중의 구성원은 세례받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증거하고, 도와줄지, 그들을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뒤에 나오는 질문은 예배자들에게 던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은 새로운 회원과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기도와 친교와 지도를 통해,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감싸주며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나요?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회중의 대답을 받으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회중을 이끈다. 세례와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을 사용함으로 기도를 풍성하게 한다. 더우기 이것은 물의 축복과 성령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속에 오실 것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가 끝나면, 목회자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세례명을 물어보아야 한다. 회중은 세례식을 위해 일어난다.

목회자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물을 끼얹거나 물을 뿌리면서 말한다.

내가 \_\_\_\_\_ (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식을 하고 나서 목회자는 회중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한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회중의 구성원 중에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또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도 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당회는 그 사람들을 세례식 전이나 후 또는 그 후에 열리는 당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기도는 축하와 감사 및 도고의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는 함께 또는 침묵으로 또는 형식적인 작별의 말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축도 또는 평안이 선포될 수 있다.

#### **다. 성찬과 공동예배**

성찬 예식은 공동 예배에서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기독교 예배의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찬은 기독교 예배에서 독특한 형태이며, 성찬이 공동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 수 있도록 자주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만찬의 만찬 식탁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과 성장은 성만찬 예식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 이상이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 제정된 도구로써, 부활하신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권능과 현실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의미가 성만찬의 중심인 한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빵과 포도주를 통해 만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을 축하하는 시간과 장소는 성례전을 축하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관장하는 교회 치리에 의해 결정된다. 성찬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만찬 식탁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와 모든 인류와 화해하고 겸손과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되어 진다.

### 성찬 예식

성찬 예식은 공동 예배의 핵심 부분으로 행해진다. 일상적으로 예식은 말씀 봉독과 선포 뒤에 이루어진다.

성찬 예식은 목회자 또는 성례전을 집행하도록 노회에서 권한을 받은 장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를 말하는 성경구절을 읽거나 암송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성경구절도 많지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1 장 28-30 절, 마태복음 5 장 6 절, 누가복음 14 장 29 절, 요한복음 6 장 35 절, 48-51 절. 요한복음 10 장 10,11 절. 요한 계시록 3 장 20 절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찬송을 부른 다음, 목회자는 성찬식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거나 암송한다. 그리스도의 성찬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다: 고린도전서 11:23-26, 누가복음 22:4-19, 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5 이다.

성찬식 관련 말씀을 전한 후에, 목회자는 예배자들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한다. 감사 기도와 감사에 대한 강조는 성찬 예식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유카리스트(Eucharist)”를 성찬이라고도 종종 부른다.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의미이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도는 성령이 오셔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 기도 후에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목회자는 회중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하면서 빵과 잔을 나눈다.

목회자와 그를 돕는 사람이 먼저 성찬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예배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 준다. 빵과 포도주를 나눌때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도해도 된다. 목회자가 다른 예배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목회자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받아 다 마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는 자마다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모든 예배자들이 성찬을 했을때 목회자는 다음의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키거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바랄 수 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또는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들은 시편을 노래하거나 읽으면서 또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송가를 부른 후에는 찬양과 감사의 짧은 기도를 하면 좋고, 찬송을 하는 것이 좋다. 찬송 다음에 예배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한다. “평안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선한 용기를 가져라; 모든 선한 것을 행하라.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말라. 마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라.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모든 사람을 존중함과 긍휼함으로 대하라. 성령의 힘을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고 봉사하라.” 라고 말한다.

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식은 축도로 적절하게 끝을 맺는다. 축도 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 III. 종교의식과 특별 예배

#### 가. 신앙의 공적 고백

공동예배가 개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축하할 이유가 된다.

그런 신앙 고백은 설교 후나 회중의 신앙 고백 전 또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예배 중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신앙고백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중에 개인의 신앙 고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초대와 연계해서 복음의 설교가 뒤 따라야 하며, 그 때에 개인들은 공개적으로 개인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또는 지시를 받은 개인 그룹은 목회자나 장로에 의해 회중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소개를 받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예배의 목적과 중심을 존경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결코 안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소개를 받은 후에는,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종종 이 단계는 종종 질문을 하는 교회의 고대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회중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개인 신앙을 선언할 기회를 줘도 된다.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인이 되기 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교회 언약의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1.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와 당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2.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여졌으며, 신앙과 인내의 권위의 원천이라고 것을 믿고,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지침서로 읽겠습니까?

*믿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이 교회의 신실한 구성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증거와 봉사의 선교에 함께 하며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컴벌랜드 장로교회의 정치를 지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합니다.*

4.당신은 믿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당신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함으로, 유혹과 약함을 이겨내고, 지식과 은혜를 키우며 모든 관계에서 사랑 실천을 노력할 것입니까?  
*노력할 것입니다.*

5.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삶, 재능,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재능들을 교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다른 형태의 교회 언약이 사용될 수도 있다.

1.당신의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2.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3.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실 것  
입니까?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당신은 지역 회중의 구성원으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당신의 시간과 삶, 재력을  
기부하는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컴벌랜드 장로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신실한 구성원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또는 간증을 한 후에,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각자마다 말해줘야 한다.

“ \_\_\_\_\_,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동역자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

선언 후에 파송 또는 위임의 말이 뒤따를 수 있다. 실제로 목회자는 각 행사에 맞는  
파송과 위임에 관한 말을 준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말을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나 또한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졌던 것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모든 낮아짐과 온유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 인내하면서, 평화의 지체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걸어가세요.”

이런 격려의 말 후에, 교회 당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회중의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는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또는 당회는 신앙 고백 후에 회의에서 그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거행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  
모두가 전통적인 또는 현대적인 신경을 이용해 공동으로 신앙을 함께 말한다.

### 회원의 전출 또는 신앙의 재확인

만약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명 또는 신앙의 재확인으로 다른 교단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이 때에 이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당회에서 이미 받아들였을 경우, 단순히 소개와 인지가 이루어지면 된다. 만약 당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전이라면, 이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발언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고, 회원으로서 환영받을 수 있다. 적절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예수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 구세주로 믿음을 재확인하고 당신의 회원권을 이명하고 이 회중(교회)에 충성하겠습니까?

*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기뻐합니다.*

모든 이들이 신앙고백과 목적을 선언하고 당회는 신앙고백을 한 모든 이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나서 참석자 모두가 교회의 전통 또는 현대 신경 중 하나를 이용해서 신앙에 대한 확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이 회중이 봉사하는 공동체의 예수그리스도 사역으로 환영한 후에, 경우에 맞는 적절한 기도가 뒤 따라야 한다.

### 나.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가 사랑할 것을 맹세하고, 서로에게 충실하며,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겠다는 언약을 약속한 관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 이 관계를 정하셨다고 믿는다.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거나, 실제로 모두 결혼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결혼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 관계를 축복하셨고, 혼인 관계는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 내에서 영화로운 것이었으며, , 모두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수행되어 왔다.

결혼은 교회와 국가가 정의하고 인정한 관계이다. 국가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사이의 민사계약으로, 그 계약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과되는 특정한 법적 의무의 상태로 이해한다. 그리고, 국가는 나이, 건강, 정신의 온전함에 관한 다양한 의무사항들을 요구한다.



교회는 결혼을 법적 계약 이상으로 본다. 결혼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르는 양식으로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 결혼은 서로를 위한 자기 희생, 사심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적인 보살핌 아래에서 함께 삶을 공유한다는 심오한 의미를 포함한다.

목회자가 결혼하려는 남자와 여자를 상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담 내용은 결혼의 성경적 의미,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 국가 의무와 결혼식 계획, 결혼 당사자들의 종교 의무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예비 부부와의 상담을 기초로 해서, 각 목회자들은 이들이 혼인이 가능한 부부인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비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의무, 그들의 결혼에 대한 감정적, 인격적, 재정적 안정성과 결혼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의무이다. 목회자들은 예비 부부의 혼인을 공식화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때때로 다른 목회자들 또는 다른 평신도에게 조언을 요청해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캠벌랜드 장로교회/미국 캠벌랜드 장로교회는 그리스도 혼인 예식을 공동예배로 이해한다. 그래서 공동예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결혼식에 적용된다. 결혼식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야 한다. 모든 참석자들은 결혼식에 참여해야 한다. 실제로 정규 공동 예배의 일부분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뿐 아니라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는 회중의 예정된 공동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후에 해산 또는 축도하기 전에, 결혼식을 위해 앞으로 나온다. 또한 해산 과/또는 축도 후에 회중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혼식을 하는 것도 용인된다.

결혼식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성경과 주체에 특별한 강조를 둔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한 짧은 설명 (2)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예비 부부를 위한 기도 (3) 남자와 여자의 기독교적인 결혼 의미에 맞는 서약의 교환 및 원할 경우 반지 교환 (4) 성경 봉독 (5) 부부에게 전달되는 책임 (6) 하나님과 국가의 법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공개적인 선언 (7) 부부를 위한 축도.

목회자는 음악에 관해서 예비 부부에게 조언을 주어야 한다. 기독교 결혼 예식의 한 부분인 모든 음악은 결혼을 인가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어져 있어야 한다. 회중이

부르는 찬송가의 사용을 장려한다. 만약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격있고 능력있는 음악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꽃, 장식, 다른 용구들이 결혼식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허례와 과소비, 또한 필요 이상 결혼식이 화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때때로 민사상으로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목회자는 상담을 하고, 만약 그들이 기독교적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 결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구한다면 일상 혼인 예식과 비슷한 적당한 예식을 정기적인 공동 예배 또는 별개의 예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 다. 기독교 장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복음은 죽음의 실체와 경험을 강력하게 다룬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것을 확신하며,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을 분리해 낼 수 없다고 선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믿음이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죽음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사람이 불멸의 형태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죽음의 권세보다 더 커서 우리가 죽고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은 확신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주의 첫 번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유족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가 있다. 임종을 맞는 사람을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서는 안되며,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설득해서도 안된다. 대신 임종을 맞이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 받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한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즉시 목회자에게 알려야 한다. 회중의 다른 구성원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그 유가족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을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며, 누구를, 무엇을 대표하는지가 중요하다. 목회자는 유가족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목회자는 첫 만남에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만약 회중의 목회자가 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치리 장로 중 한 명 이상이 교회를 대표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장례식이 종교 행사일 뿐 아니라 문화 행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죽음과 장례의 절차에 관한 각 특정 공동체의 특징적인 관습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그런 관습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다양한 장례 절차에서 목회자의 적절한 역할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장례 감독관과 창조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으며, 목회자의 신앙적 이해와 실천에 관하여 장례 감독관의 비공식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독교 장례 예식은 예배 예식의 하나로 이해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장례식 계획을 세울때 심사숙고해야 하며, 참석자들은 공동 예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찬송가 합창, 성경 봉독, 복음 설교, 죄고백, 신앙확신, 성찬 모두가 그리스도 장례 예식에 적합하다. 이 예식을 기획할 때는 유가족과 상담을 하고, 장례식의 형태와 디자인에 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독교 장례식은 교회에서 행해지길 강력히 추천된다. 관은 예배 중에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장례식에 망자의 시신이 있을 필요는 없다. 시신이 없는 상태의 예배 또한 적절하며, 관이 있을 때의 예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시신이 없는 예배의 경우는, 만일 시신을 매장했다면, 매장 전후에 계획될 수 있다.

매장 예식은 검소하고 품위있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예식은 간단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기독교인의 희망을 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망자의 매장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허례, 과비용, 화장에 대한 집착은 피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꽃을 대신하거나 꽃 이외의 기념이 될 만한 선물에 관해서 유가족이 희망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권면 한다. 교회에서는 장례 휘장(관을 덮는 휘장)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기독교인은 망자의 시신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의무가 있다. 개인들은 죽음이 가까워지기 훨씬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사망시 자신의 신체의 처리에 관해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를 받는다. 만약 죽기 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면 된다. 기독교에서는 매장, 화장, 의학 목적을 위한 신체 기부 모두가 신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 라. 개인 및 가정 예배

개인과 가정은 정기적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 명상, 자기 성찰에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의 삶에 질서가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특히 교회의 안수 받은 목회자에게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성격,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예배는 정기적으로 할 것을 권면한다. 가족 예배를 기획하는데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예배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형태와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개인과 가족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가족인 교회 예배의 한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예배도 개인적인 예배가 될 수 없으며,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보편적인 교회의 예배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배한다.

## 회의 순서

### 1.0 의 장

**1.1** 의장(또는 사회자)은 교회의 규칙과 규율에 따라 심의회의 업무 방향을 지시하고, 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2** 사역의 책임은 당회장에게 있다. 다른 심의회의 의장은 임기를 정해서 선출해야 하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해야 한다.

**1.3** 의장은 의회 절차와 심의회의 규칙에 밝아야 한다. 동시에 의장은 규칙을 상식으로 바꾸면 안된다.

**1.4** 의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의장은 심의회 시작 전에 나온 그 날의 의제 및 프로그램 또는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선언한다.
- 나. 회원에게 발언권을 준다.
- 다. 치리회에 합법적으로 나온 모든 의제에 대한 동의 안을 요청하거나, 회의 진행 과정 중에 이들 의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 (다만 의장과 관련 있는 내용들은 제외된다). 의장은 각 투표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 만일 동의 안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라. 경솔하거나 느린 동의로 부터 치리회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의 인지를 거부할 수 있다.
- 마. 치리회 내의 논쟁, 질서, 예의와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 바. 회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히 일을 진행한다.
- 사. 모든 의제의 순서를 결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의심이 들면 그런 의제들은 치리회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 아. 회의 진행과 관련된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치리회와 관련된 일에 대한 사실 정보만을 답변한다.
- 자. 필요한 경우 치리회의 모든 회의 진행 및 순서와 서명을 인증한다.
- 차. 치리회 모임의 연기는 프로그램에서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투표로 하거나,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급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언한다.

- 카. 치리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위원회를 임명한다.
- 타. 부의장 (또는 다른 회원)을 의장으로 호출해서, 회의를 임시로 진행하게 하거나, 논쟁에 참여하기 전에 (순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장 직책을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1.5** 각 회의 모임에서 의장은 모임에서 처리할 일에 필요한 문서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 가. 치리회의 표준 규칙 사본.
- 나.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 회의 순서에 대한 사본.
- 다. 최신판 로버트(Robert) 회의 순서에 대한 사본.
- 라. 일의 전체 순서에 대한 의사록.

**1.6** 치리회는 의장을 모든 이사와 기관(투권을 가진) 전의장(ex-officio) 회원으로 부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의장은 그런 이사와 기관의 자문(투표권이 없음) 회원이다.

**1.7** 만약 당회장이 없거나, 의장 또는 당회원이 없는 당회라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서기가 임시로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목사가 없는 회중의 경우 당회원 중 한 명이 또는 노회의 안수 받은 사역자가 임시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1.8** 당회 위에 있는 상위 치리회에서 의장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만약 부-의장이 부재 중인 경우 (또는 치리회가 부의장직이 없다면), 서기가 의장 대리가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한다. 언급된 모든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치리회 회원 중 한 명을 선출해서 의장 대리가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만일 의장직의 부재가 의장 임기 중에 끝 부분에 발생한 일이라면, 치리회에서 선출된 회원이 의장 대리가 의장이 되어야 한다.

**1.9** 치리회가 다루는 안건에서 의장에 언급하는 것으로 다른 회원들과 공유해서는 안될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의장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이슈의 경우는 부의장이나 적절한 사람이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2.0 부의장

**2.1** 당회 보다 상위 치리회는 부의장 선출에 대한 정관이 있을 경우 부의장을 둘 수 있다.

**2.2** 부의장은 의장이 없거나 의장이 회의 진행 능력이 없을 때, 의장의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때로 치리회의 부의장직은 다른 임무를 하도록 지정될 수 있다.

### 3.0 서기

**3.1** 각 치리회는 정관에 따라 서기를 선출한다. 서기는 모든 회의록과 문서 및 서기에게 제출된 문서를 보관하고, 치리회의 규칙과 규제에 따라 다음의 보다 높은 상위 치리회에 이들 기록들을 제출해야 한다.

**3.2** 서기의 임기는 정해서 (일반적으로 삼년) 선출되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가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

**3.3** 모든 기록과 문서들은 치리회의 재산이며, 헌법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서기는 서기직을 그만 둘 때, 모든 기록물과 문서들을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3.4** 서기의 임무는 모든 보고서를 영구적인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합당한 요구가 있을 때 모든 보고서의 여유분을 제공해야 한다. 치리회에서 따라 정하지 않을 경우, 서기는 치리회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기직을 수행한다. 서기의 다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을 정리하고 보관한다.
- 나. 치리회 회원 명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다. 치리회의 회의록 복사본을 만들어야 하며, 치리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 정기 회의 전에 회원들에게 복사본을 나눠줘야 한다.
- 라. 위원회 직과 회원과 그들의 선출되거나 임명된 대표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하고, 각 회의에서 위원회와 회원 명단을 전달해야 한다.
- 마. 대표 및 위임자들을 인증한다.
- 바. 모든 회의 의사록에 서명한다.
- 사. 치리회에서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의 진행에서 있었던 모든 문서를 읽는다.
- 아. 치리회의 투표나 권력의 분할에 따르는 다수결 이상을 요구하는 어떤 투표든지 기록한다.

3.5 치리회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서기는 채택된 동의안 만을 기록해야 한다.

3.6 서기는 치리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니어도 된다.

## 4.0 회계

4.1 회계는 선출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봉사한다. (일반적으로 삼년 동안 봉사).

4.2 회계는 치리회의 재정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4.3 회계는 회계년도에 자세한 연간 보고서와 치리회가 요구하면 보조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4.4 회계는 치리회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나 연간 리뷰와 감사를 위해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5 회계는 치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어떤 자금도 출납해서는 안된다.

4.6 회계는 치리회의 구성원이거나 아닐 수 있다.

## 5.0 치리회 모임의 개폐

5.1 의장은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의장은 회의 순서를 말해주고, 정족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이후에 치리회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한다.

5.2 지정된 시간에 정족수가 있지 않을 때는, 회원 중에 두 명의 회원이 때때로 정족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5.3 출석 확인을 한 후에는 기존에 승인되지 않은 회의록을 읽고, 수정하고, 이를 치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교회 당회의 회의록은 회의 마지막에 또는 다음 정기 모임의 시작에 수정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교회 당회 이상의 모든 치리회의 회의록은 특정 회의의 폐회 전에 수정, 승인되어야 한다. 만일 회의록 자료가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견된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몇 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회의록은 기존에 채택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동의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4 당회 이상의 모든 치리회의 의장은 회의의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거나 폐회기도 또는 축도로 마친다.



## 6.0 정족수

- 6.1 교인들이 당회의 정족수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당회의 다수가 정족수가 된다.
- 6.2 노회에서의 정족수는 4 명으로 구성된다. 적어도 한 명의 사역자와 한 명의 장로가 참석해야 한다.
- 6.3 대회의 정족수는 적어도 세 개의 노회에서 참석한 6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사역자와 한 명의 장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 6.4 스무명 이상의 위임회에서는 적어도 10 명의 사역자와 10 명의 장로로 이루어져야 하며, 총회의 위한 정족수가 된다.

## 7.0 프로그램 채택: 의사 일정

- 7.1 프로그램이나 안건은 다수결로 채택되며 항상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안건이 채택된 후에는 2/3 이상이 찬성해야 수정할 수 있다.
- 7.2 의사 일정은 특별한 주제와 의제 또는 업무의 항목을 다룬다. 이들은 정해진 당회, 회의 날, 모임 또는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야 되며,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 7.3 의사 일정은 일반 순서와 특별 순서로 분류된다. 프로그램에 특정 주제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의논한다고 지정되어 있으면 주제는 특별 순서가 된다.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주제라면 일반 순서가 된다.
- 7.4 특정한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의사 일정이 2/3 의 찬성에 의해 규칙이 중지되지 않는 한, 그 시간 전에는 심의할 수 없다.
- 7.5 다른 일이 계류 중이거나, 우선순위를 가진 일반 순서가 심의되지 않았다면, 일반 순서는 심의될 수 없다. 특별 순서는 특정한 우선 순위를 가지는 의제를 제외하고 모든 일을 중단시킬 수 있다 (로버트의 회의 순서를 참조).
- 7.6 회의의 일반 순서.
  - 가. 회의록 낭독 및 승인 (당회만).
  - 나. 낭독 및 치리회에서 언급된 대화를 참조 (또는 실행된 것).

- 다.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낭독.
- 라. 직무자, 이사, 상임 위원회와 위원.
- 마. 선택된 위원회의 보고서.
- 바. 끝나지 않은 일들.
- 사. 새로운 일

## 8.00 동의안

### 8.10 처리회 전에 있었던 동의안

**8.11** 처리회에 동의안을 내 놓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1) 회원들이 동의안을 내야 하며, (2) 다른 회원은 그 동의안에 재청하고, (3) 의장은 동의안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를 묻는다.

**8.12** 동의안을 내는 회원은 반드시 일어나서 의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의장에 의해 인지가 된 후에, 동의 안에 대해 말해야 한다.

**8.13** 재청을 받는 이유는 처리회로 모인 회원 중에서 한 명 이상의 회원이 특정한 이슈를 다루기 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재청을 얻기 위해서 회원이 발언권을 얻을 필요는 없다. 처리회 위원회의 지시로 이루어진 동의 안은 재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 8.20 동의 안의 고려.

**8.21** 동의가 심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 가. 회원들간 동의 안에 대한 논쟁한다 (만약 논쟁할 것이 있다면).
- 나. 의장이 의제가 있는지 묻고 투표한다.
- 다. 의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 8.30 동의안 형태

#### 8.31 주요 동의

목적: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회 앞으로 가져 오기 위해.

특성: 재청이 있어야 하며, 논쟁 할 수 있어야 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결 투표만 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은 로버트의 순서의 규칙을 따른다. 재심의 될 수 있다.

### 8.32 보조 동의 (Subsidiary Motions)

목적: 치리회가 주요 동의 안을 처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보조 동의의 진행 순서는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열한다.

#### 가. 무기한 연기

목적: 당회가 있는동안 주요 동의 안을 죽이고, 의제에 대한 직접 투표를 피하기 위함.  
특징들: 재청 요구, 공방 가능, 다수결 투표, 재심의 투표 재심의, 부정 재확인 투표 다시 심의됨, 부정 투표는 할 수 없음. .

#### 나. 수정 (Amend).

목적: 표현을 다르게 바꾸기 위한 것. 특정한 제약을 받음. (로버트의 토의 절차, 12 항목을 참조). 연기된 동의의 의미를 수정하기 위함.  
특징들: 재청 요구, 공방 가능, 일반적으로 수정가능, 다수결 투표, 재심의 될 수 있음. .

#### 다. 위임 혹은 회부 (Commit or Refer).

목적: 조심스럽게 의제를 조사하고 치리회에서 심의 될 수 있는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에 보류된 의제를 보내기 위함.  
특징들: 재청 요구, 공방 가능, 수정 가능, 다수결 투표, 만일 의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될 수 있음.

#### 라. 특정한 시간 (또는 명확히)으로 연기.

목적: 제약 내에서 연기된 의제에 대한 행동 보류 (로버트의 회의 절차, 14 항목 참조) 날짜, 모임, 시간, 또는 특정 이벤트 이후까지를 지정하기 위함.  
특징들: 재청 요구, 공방 가능, 수정 가능, 다수결 투표 요구, 재심의할 수 있음.

#### 마. 논쟁의 한계 확대 또는 제한.

목적: 논쟁에 대한 특정한 통제를 행사함.  
특징들: 재청 요구, 공방의 여지가 없음, 수정 가능하지만, 개정할 수 없음, 2/3 이상 찬성 필요, 순서 제약 또는 공방 연장이 소진되기 전에 어느 때든지 공방 없이 재심의 될 수 있음.

사. 이전 의제

목적: 하나 이상의 보류 중인 의제에 대한 치리회가 즉시 투표를 하기 위함.

특징들: 재청 요구, 공방 불가, 수정 불가 (예외: 다른 회원은 더 많거나 적은 연기된 의제들에 대한 이 더 많거나 적은 보류 중인 질문에 대한 기존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음).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 재심의 될 수 있음 (찬반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아. 보류 동의안 (Lay on the table).

목적: 치리회는 연기된 의제를 임시로 보류할 수 있게 함.

특징들: 재청 요구, 공방할 수 없음, 수정할 수 없음, 다수결 투표, 재심의 될 수 없음.

### 8.33 특권 동의안

목적: 치리회가 공방 없이, 보류된 일과 상관없이 즉시 또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특별 사항들을 다룰 수 있게 함.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까지. 특권 동의안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토의를 하는 날의 순서 요구.

목적: 치리회가 채택된 프로그램과 의사 일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기 위함.

특징: 재청이 요구되지 않음. 공방할 수 없음, 투표할 필요 없지만 2/3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될 수 있음, 재심의 없음.

나. 특권에 대한 의제를 내놓다.

목적: 치리회의 권리와 특권과 관련된 요청되거나 치리회 회원 중 누구든지 일이 연기되었을 때 즉시 심의할 것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

특징: 재청이 필요없음, 공방할 수 없음, 수정할 수 있음, 청이 요구되지 않으며, 논쟁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으며, 의장에 의해 결정, 재심의 하지 않음.

다. 휴식기

목적: 치리회의 소송 절차 중에 짧은 휴식을 허용하지만 회의는 종료되지 않는다.

처리해야 할 일은 중단되었던 시점에서 시작된다.

특징들: 재청 요구, 논쟁될 수 없음, 시간의 길이는 수정될 수 있지만 개정안 수정될 수 없음, 다수결 투표, 재심의 할 수 없음.

라. 연기

목적: 휴정을 정해둘 시간이 없거나 미래 회의 준비가 있을 때 현재 회의를 마감하기 위한.

특징: 재청 요구, 논쟁할 수 없음, 수정할 수 없음, 다수결 투표로 결정, 재심의 될 수 없다.

마. 연기하도록 시간을 고정함.

목적: 시간과 때로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본 회의를 휴정했을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당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회의를 위해.

특징: 재청을 요구함. 논쟁할 수 없음. 날짜, 시간, 또는 장소를 수정할 수 있지만, 이런 수정은 논쟁할 수 없음. 다수결로 결정함. 재심의 할 있음.

### 8.34 우발적인 동의 안들

목적: 우발적인 의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진행에 대한 질문들). 우발적인 의제들은 일반적으로 일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우발적인 동의안에 대한 목록

#### 가. 토의의 시점

목적: 순서의 규칙을 판결하거나 시행을 위해 의장을 호출하기 위해.

특징: 재청이 필요없음, 논쟁할 수 없음, 수정할 수 없음. 의장에 의해 지배함 (만약 의장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장의 판결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투표하지 않음). 심의되지 않음.

#### 나. 호소

목적: 최종 결정에 대해 의장의 판결을 위해 치리회에 회부.

특징: 재청이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논쟁할 수 없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로버트의 회의 절차를 참조). 수정할 수 없음. 다수결이나 타이 투표는 의장이 결정이 유지됨. 재심의 할 수 있음.

#### 다. 규칙의 일시 중단(Suspend the Rules)

목적: 치리회가 정해진 규칙을 하나 이상 어기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이를 허용하기 위함.

특징: 재청 요구, 논쟁할 수 없음, 수정할 수 없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재심의 할 수 없음.

#### 라. 의제의 배려에 대한 이의 제기

목적: 치리회가 특정한 주요 동의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치리회 앞에서조차도 상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믿어질 때 한다.

특징: 재청 요구를 하지 않음, 논쟁할 수 없음, 수정할 수 없음, 배려에 2/3 이상이 반대하면 이의 제기를 유지할 것을 요구, 이의 제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배려는 2/3 이상이 반대해야 함, 하지만, 이의제기를 유지하는 투표는 재고될 수 있음, 하지만, 이의 제기를 유지하지 않는 투표는 할 수 없음.

#### 바. 의제의 분할

목적: 의제를 부분으로 분리하도록 허용함.

과정: 분할을 위한 동의는 의제가 분리되어지는 방식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동의는 다른 부분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각 부분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나눌 수 없다. 만약 비독립적인 질문이 하나의 동으로 제공되는 경우, 의제는 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고려를 받아야 하며, 질문의 분할에 대한 동의는 사용되지 않는다 (로버트의 토의 절차, 단원 27 을 참조).

특징: 재청 요구, 논쟁 불가, 수정 가능, 다수결 투표만 할 수 있음, 재심의 할 수 없음.

#### 사. 단락 또는 순차로 고려함.

목적: 별도의 토론과 수정을 위해 서로 다른 부분을 공개해 일련의 결의안, 단락, 기사 또는 섹션으로 구성된 보고서와 긴 동의안을 허용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 각 하위 부분을 제안자가 읽고 설명해 줘야 하고, 논쟁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한다. 하지만 하위 부문에 대해서는 최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모든 부분을 심의한 후에, 전체 문서가 수정이 되는 것으로 공개한다. 이 후에, 수정을 위해 전체 문서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다.

특징: 재청 요구, 논쟁 불가, 수정 가능, 다수결 표결만 요구, 재심의 없음.

#### 아. 치리회의 구분

목적: 회원 중에 음성 또는 거수 투표 또는 회원 중에서 몇 명이 한 결과라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기립 투표를 한다.

특징: 재청을 요구하지 않음, 논쟁 불가, 수정 불가, 한 명의 회원이 구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투표는 요구되지 않음, 재심의 할 수 없음.

### **8.35 치리회로 다시 의제를 가져오는 동의안들**

목적: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치리회 전에 의제를 가져올 수 있게 함.

치리회 전에 다시 의제를 할 수 있는 동의안 리스트.

#### 가. 상정

목적: 심의 보류 중인 동의 안 또는 동의안을 치리회 앞으로 가져온다.

특징: 재청 요구, 논쟁 불가, 수정 불가, 다수결 표결로 함, 재고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처리될 때마다 갱신될 수 있다.

#### 나. 철회: 이전에 채택된 것을 수정함 (하나의 동의로 두 가지 형태가 있음).

목적: 이전 조치 또는 주문을 취소 또는 반론할 수 있다. 철회의 형태는 목적이 삭제될 때 사용한다. 기존에 채택되었던 어떤 것을 수정하는 형태는 목적이 텍스트의 부분이나 전체가 바뀔 때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징: 재청 요구, 논쟁 할 수 있음, 수정 가능, 2/3 이상의 찬성 요구, 부정적인 투표는 재심의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할 수 없다. 이들 동의 안들은 순서에 있지 않으며, 주요 동의에 대한 투표를 재심의하도록 예전에 이동한 것이며, 의제들은 재심의할 수 있도록 동의가 될 수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시간 제한은 없으며, 회원이 원안에 대해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문제들은 어느 회원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영구 삭제: 기록에서 어떤 문제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위해서는 참석한 회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

#### 다. 위원회 퇴출

목적: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가 위원회의 손 안에 있는 한, 치리회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제를 포함하는 다른 동의를 심의할 수 없다.

특징: 재청 요구, 논쟁할 수 있음, 수정 가능, 2/3 이상 찬성, 부정적인 투표는 재고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투표는 할 수 없다.

#### 라. 재심의

목적: 치리회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알리지 않고 이미 투표에 붙여진 동의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특징: 재청 요구, 원안이 논쟁 거리가 되면 토의 할 수 있다.

이 논쟁이 될 때는 논쟁할 수 있다. 수정 불가, 비록 고려되어야 할 동의안이 채택될 필요가 있는 투표와는 상관없이 다수결로 해야 한다. 재고 되지 않음.

이 동의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들.

- 지배적으로 우세한 측면으로 표결한 회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하루 이상의 회의에서, 재고에 대한 동의안은 본 투표가 실시되었던 같은 날이나 다음 날에만 진행할 수 있다.

#### **8.40 동의에 관한 기타 규칙들.**



가. 의장이 의제를 언급할 때까지, 의제를 낸 사람 동의안을 수정하거나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의장에 의해 의제가 언급된 후에는, 모션은 치리회의 소유가 되며, 치리회의 동의가 없이는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 동의안을 낸 사람은 의제가 언급될 때까지 수정한다면, 동의안을 재청한 사람은 재청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 9.00 수정 조항 (개정)

### 9.10 형태를 위한 분류

9.11 단어와 문단을 삽입 또는 첨가하기 위해서.

9.12 단어와 문단을 삭제하기 위해서

9.13 단어들에 첨삭 (단어들) 또는 대체 (하나 이상의 문단들).

### 9.20 대체에 의한 수정을 위해서.

9.21 하나 이상의 문단을 삭제하도록 수정하는 동의. 또는 하나 이상의 새로운 문장을 첨가해서 대체를 위한 동의 안이라고 불림. 대체를 위한 동의의 경우에는, 보류 중인 질문은 2차 수정안에 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열린다. 그래야 제안된 대체 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로 보류된 질문과 대체안은 대체를 해야 하는지 말지를 투표하기 전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놓이게 될 것이다. 만약 대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대체 물질은 수정하지 않은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 9.30 처음과 두 번째 수정항.

9.31 초기 수정은 원 동의안을 수정한다. 두 번째 개정은 첫번째 개정안을 수정한다 (때때로 개정안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개정안은 주요 동의를 수정한다. 두 번째 수정안은 의사 절차(parliamentary procedure)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수정할 수 없다.

### 9.40 부적절한 개정안들

9.41 다음은 부적절한 개정안들이다.

가.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이 개정된 것

나. 개정하려는 동의안이 거절된 것과 동등한 개정하려는 의제를 단순히 채택한 것.

- 다. 개정안의 한 가지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한 것.  
 라. 하나의 의사 동의를 다른 것으로 바꿀 때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 10.00 발언권의 지정 및 논의

- 10.01** 회원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립해서 의장에서 발언 의사가 있음을 표현해야 하며, 의장에 의해 그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 10.02** 두 명 이상의 회원이 같은 시간대에 발언권을 얻고자 할 경우, 의장으로 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회원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
- 10.03** 특정한 행동을 제안하는 동의안으로 처리회 앞에 어떤 안건이 나오기전까지는, 토론을 할 수 없다.
- 10.04** 토론에 참여할 목적으로 발언권을 얻은 회원은 처리회의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10 분 이상 발언할 수 없다. 허락은 만장일치나 2/3 이상 찬성이 요구되는 토론의 한계를 늘리는 동의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토론할 수 없다.
- 10.05** 어떤 회원도 처리회의 허락(consent) 없이 같은 날, 같은 의제로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의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토론의 발언으로 세지 않는다.
- 10.06** 토론은 예전 의제를 동의함으로 중지할 수 있다. 예전의 의제는 연기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수정할 수 있는 동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동의안에 전체 시리즈나, 그런 시리즈의 연속적인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다.
- 10.07** 토론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시간의 일부를 양보할 수 없으며, 다음을 위해 남겨둘 수 없다. 단 만장일치나 연기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인 경우는 예외이다.
- 10.08** 토론에서 회원들의 발언은 처리회 앞에 의제로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두번째 개정은 연기된 의제일 때, 회원은 그 개정안에 대해서만 토론할 수 있으며, 처음 개정이나 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

**10.09** 의제가 계류 중일 때, 그 법안을 강력하게 비난할 수 있지만, 인격을 논쟁으로 가져오면 안되며, 다른 구성원의 동기를 의심하거나 공격해서는 안된다.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

**10.10** 치리회의 회원들은 직접적 서로 대면해서는 안되며, 사회자를 통해서 모든 발언을 다루어야 한다.

**10.11** 토론 중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회원의 이름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

## 11.0 후보 추천과 선거

**11.1** 후보 추천은 일반적으로 추천 위원회나 발언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추천 위원회는 발언권을 얻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11.2** 후보 추천 위원회는 치리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정식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말이다.

**11.3** 가능하면 회원의 이름이 지명되기 전에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4** 후보 추천에 대한 동의를 거의 만들어지고, 재청이 된 후에는, 두 번의 투표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후보 추천 마감이고, 두 번째는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것이다.

**11.5** 직위에 대한 선거는 만일 후보가 있고,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또는 만약 후보가 부재 중이지만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즉시 최종이 된다. 만약 회원이 부재 중이고, 사전 동의를 없었고, 회원들이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회원에게 주어진 선거 통보가 마지막이 된다.

**11.6** 더 높은 상위 치리회에서 이를 대표하는 회원 중 한명이 선출된 후에 치리회는 회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 투표하는 방법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항상 순서에 맞다.

## 12.0 투표

**12.1** 투표는 일반적으로 음성, 기립, 거수, 투표 용지로 한다.

**12.2** 같은 직책에 한 명 이상의 후보가 등재 되었을 때는, 투표 용지를 사용해 투표해야 한다.

**12.3** 투표권을 가진 모든 회원들은 치리회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해야 한다. 면제가 된 회원은 특정 질문과 관련된 후속 절차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다.

**12.4** 의장은 의장의 투표가 동점을 만들거나 깨 수 있고, 2/3 다수결 달성을 방해하거나 이를 수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해야 한다.

**12.5** 회원 중에서 치리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인적이거나 금전상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회원도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회원들이 지위과 다른 직책을 위해서 스스로 투표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버트 회의 순서, 단원 44 를 참조).

**12.6** 특정한 숫자나 시간을 공석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동의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은 가장 높은 숫자와 가장 긴 시간에 한다.

**12.7** 의장은 투표를 시작할 때는 실수를 수정하는 일 이외에는 더 이상의 논쟁이나 언급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2.8** 어떤 의제에 대한 무기명 투표는 참석한 회원의 1/5 이 적어도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12.9 모든 선거에서 다수결 투표가 선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 **13.00 이사, 위원회와 위임**

**13.01** 이사회는 치리회의 권한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된 선출된 사람들의 행정 기관이다.

**13.02** 이사회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지만, 이사회는 이사회 지도 또는 특별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 감독 하에서 일하는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는 있다. 이런 소위원회는 항상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3.03** 위원회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 심의, 조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또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치리회에서 선출하거나 지정한 사람들이다.

**13.04** 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 상임 위원회 (계속해서 존속하는 위원회)과 특별 위원회(특성화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존속하는 위원회)로, 때로 특별 위원회는 선택된 위원회 또는 애드혹(ad hoc) 위원회라고 부른다.

**13.05** 위원회에 등재된 첫 번째 사람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의무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다. 만일 어떤 이유든지 위원장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부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06** 의장은 통상적인 상임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지만, 아무런 지침없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다.

**13.07**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회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13.08** 위원회는 이사회 보다 치리회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 치리회가 평소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그룹을 필요로 할 때, 위원회가 선출되어야 한다. 이 때 선출된 위임회(commissions)는 일반적인 위원회(committee)와 다른데, 이는 위원회가 단순히 조사, 심의,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위임회는 제출된 사업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를 지정한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다.

**13.09** 선택된 위임회에 의해 검토된 이사회 보고서는 치리회에 의해 수정될 수 없다. 만약 출판이 되었다면 이사회에서 제출한대로 출판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의 보고서가 치리회에서 검토와 조치를 위해 안건을 직접 냈을 때는, 위원회 보고서처럼 간주되면 수정 대상이 되지만, 치리회는 그런 이사회 보고서(위원회 또는 위임 보고서)가 실제로 보고된 문구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로, 출판된 보고서에는 괄호, 밑줄, 기울임꼴,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치리 기관에게 모든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13.10** 치리회는 보고서에 동의하고 권고 사항을 채택하거나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수용함으로써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

**13.11** 보고서가 치리회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만을 담고 있는 보고서면 보고서 제출 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13.12** 소수 보고서는 치리회의 동의 또는 과반수 득표로 말할 수 있어야 하다. 소수 보고서가 제시될 때는, 정보만 보여주고, 위원회의 보고서 대체에 대한 동의안에 의해 제외되도록 조치되어서는 안된다.

**13.13** 이사 및 위원회 직권 회원(Ex-officio members)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으로 회원이 되었다. 직권 회원 또는 지정 또는 선출된 회원 사이의 차이는 없다. 직권 회원이 이사회와 위원에 회원권을 부여한 직위 유지가 정지되었을 때는, 회원권이 자동으로 을 멈출 때는, 회원권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13.14** 자문 회원은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이사회와 위원회에 권고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13.15** 치리회 회원이 아닌 치리회 이사와 위원회의 회원들은 이사 및 위원회 회의에서는 투표할 수 있지만 치리회 모임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13.16** 모든 치리회는 전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원들은 통상의 절차에서 필요한 절차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의장은 위원장으로 말을 회원을 지명해야 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의할 수 없다면, 위원회가 일어나도록 동의를 발휘되고, 이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 의장이 위원장이 남아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슨 일이 되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산되도록 요구되며, 이것이 허용되면, 그 사안은 삭제되어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만들어진 보고서에 동의하거나,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채 같은 것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위원회는 일어나서 이룬 것을 보고할 것이면, 만약 조사가 요구되고, 다시 앓을 것이 요구되면 전체 위원회가 해산될 것이다. 치리회에 의해 고려되었던 의제는 일반적인 일 처리 순서가 될 것이다.

## 14.0 회의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14.1** 회의 순서에 대한 규칙들은 로버트 의사 규칙(Robert's Rules of Order)를 따른다.  
교회 회의 또는 교회 조직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례는 로버트의 의사 규칙을 따른다.